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 제1기** 2017년 7월 17일(월) ~ 7월19일(수)
- 제2기** 2017년 7월 20일(목) ~ 7월22일(토)
- 제3기** 2017년 8월 7일(월) ~ 8월9일(수)
- 시 간** 09:40 ~16:10
- 장 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 제1기 2017년 7월 17일(월) ~ 7월19일(수)
- 제2기 2017년 7월 20일(목) ~ 7월22일(토)
- 제3기 2017년 8월 7일(월) ~ 8월9일(수)
- 시 간 09:40 ~16:10
- 장 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2017년도 역사교원 역량강화 독도 교원연수

▣ 독도 집합연수 개요

- 연수 대상(인원) : 전국 초·중등 교원 150명
- 연수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연수 기간
 - 1기 : '17. 7. 17(월) ~ '17. 7. 19(수) (3일, 15시간, 50명)
 - 2기 : '17. 7. 20(목) ~ '17. 7. 22(토) (3일, 15시간, 50명)
 - 3기 : '17. 8. 7(월) ~ '17. 8. 9(수) (3일, 15시간, 50명)
- 연수 내용 :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근거·논리 확보, 독도수호의지 강화 효과를 학교 현장으로 전파
- 이수 기준 : 연수 시간(독도 집합 및 탐방연수)의 80% 이상 출석
- 강의 일정표

1기 : 【 7월 17일 ~ 7월 19일 】

시간 일자	1교시		중식	2교시	3교시	
	09:40 ~ 11:30		11:30 ~ 13:00	13:00 ~ 14:30	14:40 ~ 16:10	
2017년 7월 17일 (제1일차)	09:40 ~ 10:00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동향과 우리의 대응	중 식	사료로 본 고종시대의 울릉도 개척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독도 발견	
	개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7월 18일 (제2일차)	극동에서의 Map Trade와 독도의 발견		중 식	동북아 영토갈등과 일본	독도와 한일관계 : 전후를 중심으로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7월 19일 (제3일차)	한일협정의 경과와 독도이슈		중 식	UN 국제해양법 협약과 독도	동해표기의 역사적 경과와 현황	16:00~ 16:10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유의상 (국제표기명칭대사)	종강

2기 : 【 7월 20일 ~ 7월 22일 】

시간 일자	1교시		중식	2교시	3교시	
	09:40 ~ 11:30		11:30 ~ 13:00	13:00 ~ 14:30	14:40 ~ 16:10	
2017년 7월 20일 (제1일차)	09:40 ~ 10:00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동향과 우리의 대응	중 식	사료로 본 고종시대의 울릉도 개척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 · 독도 발견	
	개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7월 21일 (제2일차)	극동에서의 Map Trade와 독도의 발견		중 식	동북아 영토갈등과 일본	독도와 한일관계 : 전후를 중심으로	
	이상균(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7월 22일 (제3일차)	한일협정의 경과와 독도이슈		중 식	UN 국제해양법 협약과 독도	동해표기의 역사적 경과와 현황	16:00 ~ 16:10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유의상 (국제표기명칭대사)	종강

3기 : 【 8월 7일 ~ 8월 9일 】

시간 일자	1교시		중식	2교시	3교시	
	09:40 ~ 11:30		11:30 ~ 13:00	13:00 ~ 14:30	14:40 ~ 16:10	
2017년 8월 7일 (제1일차)	09:40 ~ 10:00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동향과 우리의 대응	중 식	사료로 본 고종시대의 울릉도 개척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 · 독도 발견	
	개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8월 8일 (제2일차)	극동에서의 Map Trade와 독도의 발견		중 식	동북아 영토갈등과 일본	독도와 한일관계 : 전후를 중심으로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8월 9일 (제3일차)	한일협정의 경과와 독도이슈		중 식	UN 국제해양법 협약과 독도	동해표기의 역사적 경과와 현황	16:00 ~ 16:10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유의상 (국제표기명칭대사)	종강

※ 교과목과 강사, 교육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독도 탐방연수 개요

- 연수 대상 : 2017년도 독도 집합연수를 이수한 전국 초·중등 교원 150명
- 연수 기간
 - 1기 : '17. 9. 13(수) ~ '17. 9. 15(금) (3일, 18시간, 50명)
 - 2기 : '17. 9. 20(수) ~ '17. 9. 22(금) (3일, 18시간, 50명)
 - 3기 : '17. 9. 27(수) ~ '17. 9. 29(금) (3일, 18시간, 50명)
- 연수 내용 : 독도 전문가 강연과 해설, 울릉도 독도 탐방 등
- 이수 기준 : 연수 시간(독도 집합 및 탐방연수)의 80% 이상 출석
- 독도 탐방일정

시간 일자	독도 탐방연수
제1일차	재단 - 출발항(목호/포항) - 울릉도(현포 수도사 비석, 울릉도 망루터, 나리분지 등 독도 관련 유적지)
제2일차	울릉도 - 독도(동도 도착, 경비대 방문 등) - 울릉도(독도특강)
제3일차	울릉도(독도박물관 견학 등) - 도착항(목호/포항) - 재단(해산)

※ 기상 및 울릉도 독도 현지 상황 (숙박 및 선박) 조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동향과 우리의 대응	11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사료로 본 고종시대의 울릉도 개척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독도 발견	35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극동에서의 Map Trade와 독도의 발견	57
이상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북아 영토갈등과 일본	73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독도와 한일관계 : 전후를 중심으로	83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협정의 경과와 독도이슈	97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UN국제해양법 협약과 독도	109
유하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해표기의 역사적 경과와 현황	125
유의상 (국제표기명칭대사)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동향과 우리의 대응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동향과 우리의 대응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2012년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은 한국 측에 독도에 관한 공세를 강화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독도문제’¹⁾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일본의 2012년 ICJ 회부 제의는 1954년, 1962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2012년 8월 21일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를 ‘조용하고 공평하며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체결을 통해 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1965년에 체결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기초하여 조정(conciliation)을 통해 해결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8월 30일 한국 정부는 구술서(note verbale)를 통해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당일 즉시 일본 정부는 ICJ를 통한 해결이 적절하다는 것을 재차 언급하고, ICJ 일방 제소를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포하였다. 일본은 그러한 일련의 조치 내용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일일이 게시하였다.²⁾ 일본은 그 이후 일방 제소가 임박하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하다가, 2013년 1월 8일 일본 외무장관이 일방 제소와 관련하여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 후 일본 언론을 통해 ‘당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독도문제’의 ICJ 일방적 제소는 국제법상 성립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일방 제소를 감행할 경우, 국제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비우호적 행위를 했다는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도 일본 정부가 일방 제소를 유보하는데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 우리 정부는 독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글은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 바, 일본의 독도 도발 등 독도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전반적인 문제를 ‘독도문제’라고 일컫고자 한다.

2)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독도 사이트):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index.html>

2. 2013년 일본 내각 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설치

일본의 ICJ 일방 제소 신청이 한창 회자되던 2012년 11월 일본은 ‘독도문제’ 대책기구로서 이른바 ‘죽도(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준비팀’을 만들었다. 전임 직원 3명에 모두 9명 체제였다. 일본의 집권당이 2012년 12월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바뀌었고, 한국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기였다. 한일 양국간 우호 근린 외교를 새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강화했다.

2013년 2월 5일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를 총괄 조정하는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이하 ‘영토대책실’)이라는 부서를 내각 관방 내에 설치했다. ‘영토대책실’은 위의 ‘죽도문제 대책 준비팀’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15명 체제로 되어 있다. 전임 직원이 11명이고, 4명은 내각부 산하에 있는 ‘북방대책본부’의 업무를 겸하는 것으로 조직되었다.

‘영토대책실’에서는 독도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角) 제도(중국어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도 함께 다룬다. 주된 활동은 이들 영토가 자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다. 즉 이들 영토에 관한 국민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을 기획, 입안하고, 국제사회에 자국의 주장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영토대책실’은 정부 내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종합 조정과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해외 홍보활동을 하는 외무성, 교과서 독도 기술과 관련된 문부과학성, 독도 해상을 순시하는 해상보안청 등과도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지방정부인 시마네현, 그리고 외무성 산하의 연구소인 국제문제연구소와도 협의, 연계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2월 ‘영토대책실’을 설치한 후 독도 관련 활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기획, 추진해나가고 있다. 2013년 4월 2일 일본 정부는 영토담당대신 산하에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영토 홍보전문가 간담회’)를 설치하였다. 간담회는 국제법, 역사 등 10명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그 실무를 ‘영토대책실’에서 담당하였다. ‘영토 홍보전문가 간담회’는 2013년 4월 23일 아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시되었고, 6월 25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독도뿐만 아니라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데, 독도에 관해서는 제3차 회의 때 집중 논의되었다. 그 결과보고서가 2013년 7월 2일 일본 정부에 제출되었는데, 그 보고서는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국내외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즉 독도와 관련된 홍보의 기본 방향으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정당하고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제를 정비·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홍보 전략으로는 ‘영어홍보 강화,’ ‘주장의 일관성 유지,’ ‘간단명료한 내용,’ ‘교육현장과 연계한 홍보,’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부각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1950년대 한국이 무력에 의해 독도를 탈취·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일본은 정의에 반하는 힘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ICJ 제

소를 포함한 국제법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토 홍보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획된 내용은 그해 8월 독도에 관한 일본 국민 여론조사 실시와 10월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유포를 통해 그대로 나타났다.³⁾ 특히 10월 16일 제작되어 유튜브(youtube)를 통해 유포된 일본 외무성의 독도 동영상은 ‘영토 홍보전문가 간담회’의 결과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길이가 1분 27초인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주장을 압축, 정리하고, 동시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와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들을 부각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토대책실’에서는 독도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자국의 입장을 홍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표 1〉 2012.8월 이후 일본의 독도 관련 주요 동향

일자	내용	비고
'12.8월	ICJ, 제소 제의	
'12.11월	내각 관방, 독도문제대책준비팀 설치	
'13.2월	내각 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설치	
'13.4~7월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7.2)	
'13.8월	일본 국민 대상 독도관련 여론조사 실시	
'13.10월	독도 동영상 유포	11월 영어판, 12월 한국어판 등 6개 외국어
'14.1월	중·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 독도 영유권 기술	
'15.1월	독도교육 동영상 유포(강치가 있던 섬)	
'15.4월	독도주장 영문논문(번역문) 게재(국제문제연구소)	
'16.5월	영토대책실, 독도자료 게재(영어 번역 공개)	
'16.6월	일본 오키섬, 죽도역사관 개관	
'17.2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발표: 독도 영유권 기술	확정 발표(3.31)
'17.5월	영토대책실, 독도자료 게재	
'17.5월	독도주장 영문논문(번역문) 게재(국제문제연구소)	
'17.6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독도 영유권 기술	

3)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동영상: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3. 매년 ‘죽도의 날’ 개최

2013년 2월 22일 ‘죽도의 날’을 계기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즉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은 2005년 조례 제정과 2006년 1회 ‘죽도의 날’ 행사를 가진 이래, 지난(2017년) 2월 22일 11회째 ‘죽도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일본 중앙정부는 2013년 ‘죽도의 날’ 행사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2013년 2월 내각부의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정무관’(차관급)(시마지리 아이코, 島尻安伊子)이라는 중앙 정부의 고위인사가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하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정부는 물론 현지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후 차관급 고위인사의 ‘죽도의 날’ 행사 참가는 계속되었고, 국회의원들도 집권 자민당과 민주당 의원 등 초당적으로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는 이미 2006년부터 총무과에 독도 담당을 두고, ‘죽도문제연구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축적된 자료를 ‘죽도자료실’을 통해 홍보하고 또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 발굴하고 있다. 2016년에는 오키섬에 죽도역사관을 개설하여 자료 전시, 수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는 중앙정부의 ‘영토대책실’ 설치에 맞추어 시마네현 총무과의 독도 담당이 ‘죽도대책실’로 변모하였다. 인원이 기존 1명에서 1명이 더 추가되어 2명이 독도 관련 업무를 맡아보게 되었다. 시마네현은 내각 관방의 ‘영토대책실’과 일본 도쿄(東京)에 있는 ‘해양정책연구재단’ 등과 연계, 활동하고 있다.

4.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동향

최근 일본이 독도 도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독도 교육이다. 2005년 후쇼사 교과서를 시작으로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 상 독도 영유권 기술을 통해 독도 교육 강화를 본격화하였다. 그후 2009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영토교육 강화, 2010년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2011년 중학교 교과서과 2012년과 2013년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확산을 통해 독도에 관한 학교 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4년 1월에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여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을 노골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5년 중학교 사회과(지리, 역사, 공민), 2016년과 2017년 고등학교 사회과(지리, 일본사, 현대사회, 정치경제)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었다. 일본은 더 나아가 2017년 3월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초·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여 교과서 집필진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7년 3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21일 학습지도요령 해설도 개정하였는데, 독도에 관한 내용을 역시 대폭 기술하였다.

〈표 2〉 최근 일본 초·중·고 교과서 관련 독도 기술 동향

일자	내용	비고
'14.1.28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 독도 기술	※ '08.7월, 중학교 해설에 독도 최초 명기 - 09.12월 고교 해설 개정 (중학교 학습을 토대로)
'14.4.4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기술	
'15.4.6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16.3.18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17.3.24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17.3.31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2월 개정안 발표 후 의견 수렴
'17.6.21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개정	

〈표 3〉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학교별 (검정통과 연도)	교과서			
	과목	종수	독도기술(지도 포함)	
초등학교 (2014년)	3,4학년	(4)	3	
	사회(5학년)	4	4	
	사회(6학년)	4	4	
	소 계	12	12	
중학교 (2015년)	지 리	4	4	
	역 사	8	8	
	공 민	6	6	
	소 계	18	18	
고등학교 (2016·17년)	지 리	A	6	6
		B	3	3
	일본사	A	7	7
		B	7	7
	세계사	A	9	2
		B	7	1
	정치경제		9	9
	현대사회		11	11
	소 계		59	46

5. 우리의 대응 방향: 실천적 과제

1965년 이후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현실적으로는 ‘독도가 일본의 시정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 이후 ‘죽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일본의 연례적인 ‘독도 이벤트’와 2013년 2월 내각 관방에 ‘영토대책실’ 설치하는 ‘독도문제’의 연중 상시화와 전장(戰場)의 국제적 확대가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급 학교의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에 독도 명기는 미래세대에 까지 독도로 인한 갈등을 가져가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한 뜻이 담겨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독도문제’를 한국 국민 대 일본 국민간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 가면서, 그 전장(戰場)을 국제사회로 확대하여 ‘국제법’과 ‘평화’를 소재로 한 ‘노이즈(noise)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여론 확산’ 내지 ‘노이즈 홍보’를 전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이용 개발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분쟁의 존재’를 인정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교육부, 외교부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동북아역사재단 등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독도 도발 대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실천적 과제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문제’의 특수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독도문제’가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일반적인 국제분쟁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세련된 홍보 방안과 설득력 있는 내용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독도의 영역적 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도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이즈 홍보’에 의한 독도의 분쟁화 전략에 말려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물리적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나 울릉도·독도의 연계 강화 사업도 독도의 영역적 안정의 한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독도의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05년 독도 입도가 개방된 이후 최근에는 매년 10~20만명의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단순히 ‘독도의 땅’만 딛고 오는 관광이 아니라, 독도의 가치를 새롭게 부각시킨 이미지 설정과 그 가치를 활용한 관광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다투었던 시파단(Sipadan) 섬이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로 각광받게 된 것처럼 말이다.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사료로 본 고종시대의 울릉도
개척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 원 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사료로 본 고종시대의 울릉도 개척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 원 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의 움직임

- ※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 ※ 일본의 영토확장책의 연장선에서 개화기 울릉도와 독도를 알아봅시다.
- ※ 다음에 제시된 사료에서 논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토론했다.

1)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¹⁾

1.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始末)

이 건은 마쓰시마(松島)는 다케시마(竹島)의 이웃 섬으로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게재된 서류(書留)도 없다. 다케시마(竹島)에 대해서는 겐로쿠(元祿: 1688~1703) 년간 주고받은 왕복서한 및 경위가 필사한 그대로입니다. 겐로쿠(元祿) 년도 이후 얼마 동안 조선에서 거류(居留)를 위해 사람을 보내었던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전과 같이 사람이 없으며,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굵은 갈대가 자라고, 인삼(人蔘) 등이 자연적으로 자란다. 그 밖에 어산(漁産)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

- 1869년 12월에 외무성 관리 사다 하쿠모(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3인은 대마도를 거쳐 부산 초량에서 조선 사정을 정탐, 이들은 다음해에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외무성에 제출. 보고서의 마지막 항목에 이 문건이 있음.
- 제목과 밑줄친 부분의 의미를 토론했다.

1) 재단의 미간행 자료에서 인용함. 이하 실록 및 신문 등의 자료는 인터넷 공개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별도로 인용처를 표시하지 않음.

2) 『竹島考證』 및 『竹島版圖所屬考』²⁾

(이상 생략) 그 후 44년을 경과하여 명치 10년에 이르러 島根縣 土族 戶田敬義라는 자가 竹島渡海의 願書를 東京府에 제출하였다. 6월 府廳으로부터 어렵다는 지령이 있었다. 그 일은 중지되었고, 그 이래 다시는 竹島의 일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竹島書類雜纂』에 의거함)

이보다 앞서 陸奥 사람 武藤平學과 下總 사람 齋藤七郎兵衛 등이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 왕래하다가 竹島 외에 별도로 松島라는 것이 있다고 주창하면서 무역사무관 瀨脇壽人에게 渡海의 일을 요청하였다. 이에 竹島와 松島가 一島二名인가 또는 두 섬이 각각 별개 섬인가 설이 분분하여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松島 巡視의 의론이 일어났으나 그 일을 중지하고 수행하지 않았다.(『松島關係書類浦湖斯德公信』에 의거함)

또한 해군 수로국의 수로잡지에 의하면, 명치 11년 6월 해군소좌 松村安種이 天城艦으로서 朝鮮海에 回航할 때에 그 승무원 해군대위 山澄直清, 해군소위 補小林春, 동 福地邦鼎 등과 松島에 갔다. 吉田 중위는 정오에 本艦의 소재를 실측하니, 북위 37도 48분을 얻었다. 또 오전 7시 58분에 태양 고도를 측정하여 본함 소재가 동경 130도 32분을 얻었다. 이로부터 침로를 남동으로 바꾸어 水程儀를 갖고 측정하여 항해하기 20리, 松島를 去하기 2리의 곳에 이르러 松島의 中部를 정남으로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 군함이 松島를 측량한 것의 시작이다. 그 후 명치 13년 天城艦이 다시 松島에 항해함에 이르러 해군소위 三浦重郷 등이 친히 그 땅에 가서 실지측량함에 미쳐서 그 섬 東岸에 임시 정박의 땅을 발견하였다. 또 松島는 고대 한국인이 鬱陵島라 칭한 곳으로서, 달리 竹島라 칭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부근의 小島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사정은 더욱 명료해졌다. 이로써 보면 오늘의 松島는 즉 元祿 12년에 칭한 바의 竹島로서 옛날부터 우리 版圖 밖의 땅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竹島의 고금의 연혁의 대략이다. 이제 우리나라 記傳과 삼한 및 중국의 여러 서적들을 들어 그 요지를 이와 같이 서술한 것이다. 만일 그 상세한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면 앞서 제출한 바의 『竹島考證』 3권이 있으니 이를 읽어 보면 될 것이다.

명치 14년 8월 20일 調査

北澤正誠

- 외무성 서기관 기타자와 쇼오세이(北澤正誠)는 1881년(메이지 14년)에 『竹島考證』(전3권)을 저술, 이것의 요약본 『竹島版圖所屬考』를 1881년 8월 20일 외무성에 제출
- 19세기 중후반 일본에서의 죽도와 송도 명칭 혼란에 대해 조사하고 토론해 봅시다.

2) 인용하, 『독도영유권 자료의 탐구』3, 178-179쪽에서 번역문을 인용함.

3) 죽도 외 1도의 지적편찬 건에 관한 태정관 지령

3월 29일

일본해 내에 있는 다케시마(죽도)와 그 외 한 섬을 판도의(版圖外)로 정한다.

내무성 질의

죽도 관할 문제에 대하여 시마네 현(島根縣)으로부터 별지 질의서로 문의가 있어서 조사한 바, 해당 섬은 겐로쿠 5년(1692) 조선인이 섬으로 건너온 이래, 별지 서류에 기록한 바와 같이

겐로쿠 9년(1696) 정월 제1호 구 정부가 평의한 취지에 따라,

제2호 역관에게 보내는 서한,

제3호 해당국에서 온 서한(來柬),

제4호 본국 회답 및 구상서 등,

겐로쿠 12년에 이르러 각 서한의 왕래가 끝났고,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판도(版圖)의 취사선택은 중대한 일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다짐삼아 이 문제를 문의합니다.

메이지 10년(1877) 3월 17일 내무

문의한 취지의 죽도 외 1도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할 것.

메이지 10년(1877) 3월 29일

시마네현 질의 내무성 앞 (이하 생략)

※출처: 『태정유전(太政類典)』 제2편 제96권

동 27일 수신

메이지(明治) 10년(1877) 3월 20일

대신(大臣)

본국(本局)

참의(參議)

경보(卿輔)

별지로 내무성이 질의한 일본해 내 죽도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건

이상은 겐로쿠(元祿) 5년(1692) 조선인이 섬에 들어온 이래 구(舊) 정부가 해당국[조선]과 교섭한 결과, 결국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다고 [내무성이] 보고한 이상, [내무성이] 질의한 취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령을 작성해도 되겠는지, 이에 문의합니다.

지령안(指令案)

질 의 한 취 지 의 죽 도 [울 릉 도] 외 1 도 [독 도] 문 제 는 우 리 나 라 와 관 계 가 없 다 는 점 을 명 심 할 것.

메이지 10년 3월 29일

일본해 내 죽도 외 1도 지적 편찬 방법에 관한 문의(이하 생략)

※ 출처: 『공문록(公文錄)』 내무성지부(內務省之部) 1

-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 지적(地籍) 조사사업을 시작, 이 때 시마네 현은 죽도와 송도를 시마네 현의 지적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함. 내무성은 다시 태정관에 품의하고, 태정관은 “죽도 외 1도는 본방과 관계가 없다”고 지령을 내림.
- 위의 태정관 지령 사료가 언제, 어떻게 발굴되었으며, 독도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토론했다.

2. 고종시대의 울릉도 개척

- ※ 안용복의 활동과 ‘울릉도 쟁계’에 대해 미리 조사해 봅시다.
- ※ 울릉도 쟁계 후의 울릉도 搜討制에 대하여 조사해 봅시다.
- ※ 19세기 전반기의 울릉도 수토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 봅시다.
- ※ 울릉도 대한 정책이 수토에서 개척으로 바뀐 까닭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 울릉도와 부속 섬들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조사하고 토론해 봅시다.

1) 임한수의 보고서와 통리기무아문의 대책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監司) 임한수(林翰洙)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 수토관(鬱陵島搜討官)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간심(看審)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어 해안에 쌓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일본 사람인데 나무를 찍어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에 빈번하여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봉산(封山)은 원래 중요한 곳이니 수토(搜討)하는 것도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암암리에 나무를 찍어서 남몰래 실어가는 것은 변금(邊禁)에 관계되므로 엄격하게 막지 않고 말아서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서계(書契)로 작성하여 동래부(東萊府) 왜관(倭館)에 내려 보내어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이 섬은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으니 그대로 텅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허술한 일입니다. 그 형세가 요해지(要害地)로서 어떠한지 방수(防守)를 빈틈없이 하는 것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두루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에 빨리 가서 철저히 헤아려보고 의견을 갖추어 수계(修啓)하여 아뢰고 복계(覆啓)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1881) 5월 22일 계미

2)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召見)하였다. 사폐(辭陛)를 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울릉도(鬱陵島)에는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가려 차임(差任)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라. 그리고 앞으로 읍(邑)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別單)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이며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의 우산국의 국도(國都) 이름입니다.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30리(里)쯤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은 단향(檀香)과 간죽(簡竹)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 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 그 형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라.

울릉도는 본래 삼척 영장(三陟營將)과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돌러가면서 수검(搜檢)하던 곳인데

거의 다 소홀히 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저 외부만 살펴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었다. 그대는 반드시 상세히 살펴보라.”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삼가 깊이 들어가서 검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송죽도 밖에 따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혹시 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있는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으나 대체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였다.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1882) 4월 7일 임술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

“서계(書契)와 별단(別單)은 이미 열람했고 지도(地圖)도 보았다. 산 위에 있는 나리동(羅里洞)이 넓기는 넓은데 단지 물이 없는 것이 흠이다. 그 속에 나무들이 하늘이 안 보이게 짙 들어서 있던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나리동 산 위에 따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이른바 천부(天府)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기슭에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크고 작은 냇물들이 모두 복류(伏流)인 것이 하나의 큰 흠이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짙 들어서서 종일 걸어도 햇빛이 새들어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만일 고을을 설치한다면 서너 곳 중에서도 나리동이 적당할 만하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진(鎭)이나 읍(邑)을 설치하자면 나리동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 골짜기 안에 300호(戶) 가량 들어앉을 곳이 왕왕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골짜기 안에 100~200호 가량 들어앉을 만한 곳은 6, 7곳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후 여러 골짜기에 바다를 막을 곳이 없는 것이 결함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모시풀이 심지 않았는데도 자생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모시밭은 무성하여 수십 이랑이나 되었으며 뽕나무·산뽕나무·닥나무 등속이 간간이 숲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옛날 백성들이 살 적에 심어놓은 듯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곳을 만약 개척하면 백성들이 즐거이 따라가겠는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뱃놈과 약재 상인들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니, 대부분 즐거이 따라갈 뜻이 있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들어가 약재도 캐고 배도 만들던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호남인(湖南人)이 제일 많은데 전부 조선(造船)을 하거나 미역과 전복을 따며 그 밖의 타도 사람은 모두 약재 캐는 일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본인(日本人)이 푯말을 박아놓고 송도(松島)라 한다는데,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그들이 세워놓은 푯말에는 송도라고 하였습니다. 송도라 한 데 대해서는 이전부터 서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차로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에게 공문(公文)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 내용을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시임(時任) 재상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어라. 지금 보니 한시라도 등한히 내버려둘 수 없고 한 조각의 땅이라도 버릴 수 없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이 전교를 일일이 총리대신(總理大臣)과 시임 대신(時任大臣)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설사 한 치의 땅이라도 그것은 바로 조종(祖宗)의 강토인데 어떻게 등한히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교하기를,

“비단 저들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일도 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개척에 있어서는 빨리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백성이 들어가 사는 것을 허락하여 모여드는 것을 본 연후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배를 뭍 부두는 변통할 길이 없던가?”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온 섬에 둘러있는 여러 포구가 돌과 자갈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착수하는 것이 실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6월 5일 기미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 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일본인(日本人)들이 한쪽 구석에 막을 치고는 송도(松島)라 칭하면서 나무 꺾말을 세웠으니 공문을 띄워 힐책하기를 계청(啓請)한 일에 대하여,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는 교지(教旨)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섬에 들이닥쳐 이 섬의 나무를 찍는 것을 그 나라에서 금지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찰사가 직접 가보고 그전과 다름없음을 목격하였다고 하니 부득이 저번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칙하여 이 폐단을 영영 막아야 하겠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서계(書契)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6월 16일 경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 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의 서계(書啓)에 대해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침범하여 이 섬의 나무를 베는 것은 그 나라에서 금지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미 서계(書契)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찰사가 가서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종전의 내용을 다시 신칙하여 이 폐단을 영원히 막아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서계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7월 10일 갑오

3)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

조경호(趙慶鎬)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삼고, 김옥균(金玉均)을 동남제도개척사(東南開拓使)로 삼아 포경(捕鯨) 등의 일을 겸하게 하였으며, 하직인사는 그만두고 편리한 대로 갔다 오게 하였다.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1883) 3월 16일 병신

전교하기를,

“개척사(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은 고래잡이하는 일을 개척하는 외에 해안의 각 고을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살펴보고 무릇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이로운 것과 그 폐단을 수습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일들을 수시로 장문(狀聞)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4월 20일 경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남 제도 개척사(東南諸道開拓使) 김옥균(金玉均)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鬱陵島)의 목재를 일본 사람들이 몰래 많이 찍어 실어간다고 하여 목재를 실어가는 배들을 잡아두고 사유를 따졌더니, 이 섬 도장(島長)의 표빙(票憑)을 가지고 돈과 쌀을 교환하기 위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섬은 통상하는 항구가 아닌 만큼 국경을 넘어와 몰래 나무를 베는 것은 공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해당 도장(島長) 전석규(全錫圭)로 말하면, 금지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한 만큼 응당 중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섬의 재목을 침범하여 베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계(書契)를 주고받은 것이 있으며, 도장(島長)을 설치할 것도 이런 일을 검열하고 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도리어 물건과 바꾸어 몰래 실어가게 한 것은 나라의 금령에 관계된 것으로서 그지없이 악한 짓입니다. 전석규(全錫圭)를 형조(刑曹)에 압송하여 올려 보내서 법조문에 근거하여 감처(勘處)하게 할 것이며, 그 후임을 부지런하고 일에 해박한 사람으로 즉시 선발하여 보내는 일을 도신(道臣)에게 분부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1884) 1월 11일 정해

전교하기를,

“해방 총관(海防總管) 이규원(李奎遠)을 동남 개척사(東南開拓使)로 차하(差下)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21권, 고종 21년(1884) 12월 17일 정해

4)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

蔚珍之東海에 一島가 有호니 曰 鬱陵이라 其附屬한 小六島中에 最著者는 于山島 竹島 | 니 大韓地誌에 曰 鬱陵島는 古于山國이라 地方이 百里오 三峰이 律兀한디 所產은 柴胡, 藁本, 石楠, 藤草, 香木, 槻木, 蘆竹이오 土性은 宜麥호고 古에 牛形無角한 水獸가 有호니 名曰 可之오 海鳥가 有호니 名曰 霍鳥 | 러라 島中에 人烟이 稀少호야 國家에서 公稅를 免徵호고 每式年에 附近地方官으로 差使員을 定送호야 島中情形도 查察호고 香木과 蘆竹을 載還호야 御貢할 畚이러니 癸未年에 朝廷에서 金玉均으로 東南諸島開拓使兼捕鯨使를 任호고 白春培로 從事官을 任호야 該島開拓事務를 辦理케 호얏더니 翌年甲申의 變을 因호야 奉効치 못호얏고 其後 戊子年에 島民 徐敬秀로 越松萬戶를 差定호야 該島人民을 繁殖호고 外國人의 樹木侵伐호는 弊를 防禁케 호얏더니 翌年에 徐敬秀가 身死未遂

하였고 開國五百四年에 内部에서 本島民 裴季周로 島監을 任하여 島務를 管理케 하였더
 니 本年春에 裴季周가 内部에 來報되 近者에 日本人이 夥數流入하여 樹木을 斫伐하고
 居民을 侵擾하니 政府에서 設法防護하기를 請함의 内部에서 海關總稅務司 柏卓安에게
 委托하여 西人 一員을 派送하여 該島情形을 查報케 하였더니 其報告의 概況이 如左하니
 ↓鬱陵島는 距陸二百餘里오 面積은 約計 七十五方里니 遍嶋中에 耕植하는 地는 不多하고
 樹木이 海濱으로 從하여 山巔까지 鬱密하였는디 山高는 計有四千英尺이오 距岸三里內의
 水深은 自六千 至九千六百英尺이라↓居民은 男女 約三百口니 數十年來로 漸次 船匠 商
 客과 漁人 耕夫가 相隨而至하여 居生하는디 海水가 太深하여 魚產은 未盛하고 다만 海
 菜의 運出이 每年에 二千擔에 多至하고 土質은 膏沃하여 糞漑를 要치 아니하고 樹叢燼
 灰로 覆耕하여 一年兩熟을 得하니 春季에는 大小麥이오 秋季에는 薯와 豆인디 上年所穫
 이 薯 二萬包, 大麥 二萬包, 黃豆 一萬包, 小麥 五千包이오 地勢가 太斜하여 禾穀은 耕作
 지 못하고 材木은 老年巨杉과 各種 貴重實木이 亦多하고 楓木 香木 柏子木 甘湯木이 產
 有하더라↓大陸과 通商이 極少한디 往往히 商旅의 輸入하는 物貨는 食物 烟草 布疋 等
 數包뿐이오 其載出하는 物品은 海菜가 居多하고 板木도 間或 裝運하더라↓嶋邊海狗峯石
 壁亂叢中에 一小灣이 有하니 約濶一百英尺이라 該灣으로 日本船商의 輸入品은 米鹽 瓷
 器 日本酒 洋布 木綿 火油 火柴 雨傘 等 件인디 土民으로 더부러 交易하는 法은 物로
 物을 易하고 其輸出品은 豆麥外에 滿山材木을 亂斫鋸削하여 船隻에 載往하는 者니 其值
 가 不資하고 本嶋中에 築室旅居하는 日本人이 二百餘名인디 土民을 侵凌하여 相關하는
 弊가 有하더라 農民 商民의 公稅는 原定함이 無하고 但 嶋監이 海菜에는 十分의 一을
 徵하고 木料에는 每船 一隻에 葉一百兩을 徵하며 日本人은 賣貨時口文(百抽二)外에는 納
 稅함이 無하더라↓本年九月에 内部에서 右項報告을 等因하여 外部에 照會하였더니 外部
 에서 駐京日本公使에게 照會하여 該嶋에 潛越한 日本人을 訂期刷還하고 不通商口岸에
 密行買賣함을 禁戢케 하라 하였더라

※ 皇城新聞 鬱陵島事況

大韓光武3年 大韓光武三年(1899) 九月 廿三日 土曜

5)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사료 생략)

-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의 벌목 등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 숙종 때의 ‘울릉도 쟁계’와 대한제국 시기의 울릉도 상황을 비교해서 토론해 봅시다.
-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연관지어보면, 칙령 41호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

3.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 울릉도구역의 지방제도 침입에 관한 청의서

鬱陵島區域을 地方制度中添入에 關한 請議書

鬱陵島가 東溟에 孤立하여 海陸隔絶이 固天所限이기로 形便에 如何와 居民의 幾許를 猶或未詳이옵기 粵在開國五百四年八月十三日에 該島島監擇差호므로 請議호와 同月十六日에 上奏裁可호시를 經호옵기 同年九月二十日에 該島人裴季周로 島監差定호고 該島監은 判任官待遇호므로 官報에 掲載호고 本島管理를 專任하여 形便과 戶口를 從實調査後報來케 호온바 該員의 報來成冊을 接準호온즉 居民의 戶數가 二百七十七이오 男女人口 合一千一百三十七이오 田土起墾이 四千七百七十四斗落이다은 此를 竊查호온즉 該島의 人戶數와 土地起墾이 如期호은 境遇에는 不容不地方制度中添入호오미 妥當호옵기 此段勅令案을 會議에 提呈事.

勅令第 號

地方制度中改正添入호는 事

開國五百五年度 勅令第三十六號 第六條之次에 第七條를 添入호되 第七條는 鬱陵島에 島監一人을 眞호되 本土人을 擇差호며 判任官으로 待遇호고 應行規則은 内部大臣이 參量호야 定호 四十九字를 添入호고 附則下第七條에 七字는 八字로 改正호는 事.

議政府參政内部大臣 朴定陽

議政府參政 朴定陽 閣下 查照

光武二年五月 日

奏八十八

※ 各部請議書存案 光武2年(1898)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안서

右는 該島가 東溟에 特立하여 大陸이 遠隔호온바 開國五百四年에 島監을 設置호야 島民을 保護호고 事務를 管掌케 호시 該島監 裴季周의 報牒과 本部視察官 禹用鼎과 東萊稅務司의 視察錄을 參互節查호온즉 該地方이 縱可八十里오 橫爲五十里라 四圍峭壁에 中有 巨山호야 自北止南호고 間有大川호야 深廣이 幾容舟楫호고 其土가 沃腴호고 其民이 質野호야 自數十年來로 民蓄이 蕃殖호야 戶數가 爲四百餘家오 墾田이 爲萬餘斗落이라 居民의 一年農作擔包數갓가 諸爲二萬餘包오 大麥이 爲二萬餘包오 黃豆爲一萬餘包오 小麥이 爲五千包라 호오니 大率戶數와 田數와 穀數를 陸處호 山郡에 較計호오면 數或不及이오나 不甚相左뿐더러 挽近外國人이 往來交易호야 交際上도 亦有호온지라 島監이라 稱號

호오미 行政上에 果有妨碍기로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오미 妥當호읍기 此段勅令案을 會議에 提呈事.

勅令 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는 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호야 江原道에 附屬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야 官制中에 編入호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 事.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호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호는 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를 刪去호고 開國五百五年勅令第三十六號第五條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호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를 添入호는 事.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호되 現今問인즉 吏額이 未備호고 庶事草創호기로 該島 收稅中으로 姑先磨鍊호는 事.

第五條 未盡호는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호야 次第磨鍊호는 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호는 事.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議政府議政 尹容善 閣下 查照 光武四年十月二十二日

※ 各司謄錄 近代編 卷17, 鬱陵島

3)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勅令第四十一號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는 件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호야 江原道에 附屬호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호야 官制中에 編入호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 事

第二條 郡廳 位寘는 台霞洞으로 定호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호는 事

第三條 開國 五百四年 八月 十六日 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 以下 十九字를 刪去호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 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 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호고 安峽郡下에 鬱島郡 三字를 添入호는 事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호되 現今問인 즉 吏額이 未備호고 庶事 草創호기로 該島 收稅中으로 姑先 磨鍊호는 事

第五條 未盡호는 諸條는 本島 開拓을 隨호야 次第 磨鍊호는 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호는 事

光武 四年 十月 二十五日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 贊政 內部大臣 李乾夏

※官報 第1716號(1900년 10월 27일)

- 라포르트의 울릉도 조사를 보도한 황성신문 기사의 ‘죽도·우산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죽도·석도’를 연관지어 토론해 봅시다.
- 칙령41호 이전에 ‘석도’ 혹은 ‘독섬’이라고 명기된 사료를 조사해 보고, 또 ‘석도’ 또는 ‘독섬’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전거가 되는 자료를 찾아보고 토론해 봅시다.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 · 독도 발견

김 영 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근대 러시아의 해양탐사와 울릉도 · 독도 발견

김 영 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곤차로프의 『전함 팔라다호』는 19세기 중엽 세계 여행기라는 측면에서 문학적으로 주목받았다. 팔라다호는 젊은 시절 안톤 체홉(А.П. Чехов)을 비롯한 여행을 동경하는 당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였다. 팔라다호는 영국, 일본 등의 식탁을 소개해주는 ‘식유기(食遊記)’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¹⁾

곤차로프(И.А. Гончаров)는 1812년 6월 6일(러시아력) 심비르스크(Симбирск)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곤차로프는 1820년 사제 트로이츠키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입학하여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배웠다. 곤차로프는 1822년 모스크바 상업학교에 입학했고, 1831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하였다. 당시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는 게르첸, 레르몬토프, 푸르게네프 등이 다녔고, 곤차로프는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뿌쉬킨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곤차로프는 1834년 대학을 졸업하고 심비르스크 현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곤차로프는 1847년 장편소설 『평범한 이야기』를 발표하였다. 1849년 잡지 『현대인』에 「오블로모프의 꿈」을 발표하였다. 곤차로프는 제독 뿌자핀(Е.В. Путятин)의 비서(секретарь)로 전함 팔라다호를 탔고, 1852년 10월 7일 러시아를 출발해서 1855년 2월 13일 삐제르부르크로 돌아왔다.

곤차로프는 항해 중 일지를 작성하고 편지를 보냈다. 여행기는 1855-57년 사이 『전함 팔라다호』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1858년 2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곤차로프는 1855년 12월 검열관이 되었지만 1860년 2월 사직하였다. 곤차로프는 1859년 10년 전부터 준비한 『오블로모프』를 완성하였다. 곤차로프는 1862년 7월 신문 『북방우편』의 편집장을, 1863-67년 사이 출판과 관련된 위원직을 맡았다.

곤차로프는 1869년 소설 『절벽(단애)』을 20년 만에 완성하였다. 곤차로프는 1870-80년대 「안하는 것 보다는 늦는 것이 낫다」, 「백만의 고통」, 「벨린스키라는 인물에 대한 단상」 등의 몇몇 비평만 썼다. 곤차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주요저서는 명성황후 최후의 날(2014, 말글빛냄) 등이 있다.

1) Лотман Ю. и Погосян Е. Великосветские обеды. СПб. 1996. С.37 ; 석영중, 「오블로모프의 맛있는 음식」, 『러시아문학연구논집』 35, 2010, 65쪽.

로프는 1891년 말년에 쓴 모든 작품, 편지, 단상을 소각했고, 1891년 9월 15일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²⁾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는 일찍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사의 연구자가 주목하였다.

박보리스(Б.Д. Пак)는 팔라다호의 주요 인물과 함대 구성, 조선 항해 이유, 조선 동해안 조사 일정등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박보리스는 팔라다호가 거문도에서 만난 김유의 해상기문 정보, 1854년 5월 8일 뿌짜핀이 조선정부에 보낸 문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박보리스의 연구는 팔라다호의 조선 관련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박보리스에 따르면 1854년 2월 크림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팔라다호는 안전한 장소로 거문도를 선택하였다.³⁾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1854년 10월 러시아 크림반도 세바스타폴을 공격했고, 1855년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인 세바스타폴을 함락하였다.

박태근은 팔라다호의 출발배경, 청국과 일본과의 교섭 과정, 거문도와 동해안 탐사의 구체적인 일정과 지명에 대해서 러시아와 한국 사료를 교차하며 조사하였다. 박태근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청국 5개항의 통상권 교섭, 러시아와 일본의 수교를 위해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청국 양광총독(兩廣總督) 엽명침(葉名琛)은 1853년 6월 18일 팔라다호의 5개항 무역 교섭을 거절하였다. 팔라다호는 1853년 8월 10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지만 일본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

박태근은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탐사 일정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박태근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강원도 초산만(울산만)부터 함경도 두만강까지 실측하였다. 1854년 4월 21일 북위 36도 양일만 상륙, 4월 24일 강원도 초진 통과, 4월 26일 강원도 금란진 정박, 4월 27일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 송전만(라자레프항)에 정박하였다.⁴⁾

박보리스와 박태근의 연구는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조사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팔라다호의 조선 동해안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선만 주목했기 때문에 팔라다호의 전체적인 항해과정과 기록자인 곤차로프의 시선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2000년 이후 곤차로프의 팔라다호는 조선에 관한 러시아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 조선과 러시아 관계사라는 측면에서 팔라다호가 주목 받았다면 이번에는 팔라다호에 비친 조선의 모습과 사람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영은은 러시아의 조선 탐사와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곤차로프의 팔라다호를 살펴보았다. 이영은은 조선 관련 곤차로프의 개인적인 설명과 관찰에 관한 조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⁵⁾

이희수에 따르면 곤차로프는 ‘대식가에 게으르며 거친 성격’, ‘침묵하며 척박한 환경과 궁핍한 생활에 순응하는 모습’등으로 한국인을 묘사하였다. 이희수는 곤차로프의 팔라다호에 관한 텍스트 분석도 소개하였다. 예를 들면 곤차로프가 일부러 항해과정의 탐사활동과 외교협상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또

2) Русские писатели. 1800—1917: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1. М. 1989. С.628 ; 최윤락, 「곤차로프와 그의 장편소설 오블로모프」, 『오블로모프』, 2권, 문학과 지성사, 2002, 351-356쪽

3) 박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124-144쪽

4)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100년사』, 1984, 34-37쪽

5) 이영은, 「근대전환기 러시아인의 조선인식」, 성균관대학교박사논문, 2011

한 곤차로프가 구조적 완결성을 위해 탐사과정의 일부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⁶⁾

선행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팔라다호 소속 장교의 인명, 팔라다호의 출발과 도착의 항해과정, 곤차로프의 출발 이유 등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상황이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가 대체로 조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팔라다호 제독 뿌썬의 항해 관련 공식적인 정부의 기록을 토대로, 뿌썬의 비서로 참여한 곤차로프의 항해 관련 개인적인 여행기를 상호 보완하여, 팔라다호 함대의 전체적인 항해와 탐사 과정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개인의 목표에 대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팔라다호 함대의 독도 발견 이후 러시아가 어떻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한국 영토로써 인식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19세기 후반 러시아 함대의 독도와 울릉도 관련 기록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갈등인 독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팔라다호의 구성과 운영 및 곤차로프의 항해 이유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썬(Е.В. Путятин)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뿌썬은 1852년 8월 스쿠너범선(보스톡호)을 구매하기 위해서 민간 증기선을 타고 영국으로 출발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하여, 영국에서 구입한 스쿠너 범선 ‘보스톡’(Восток) 호와 함께 극동으로 항해하였다.⁷⁾ 이들은 1851년 극동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Олибуца)호 및 수송선 ‘공작 멘쉬코프’(Князь меншков)호와 합류하여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다.⁸⁾

제독 뿌썬(Е.В. Путятин)은 1852년 함대를 구성하였다.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 캄차카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корвет Олибуца),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шкунуны Восток), 수송선 공작 멘쉬코프호(транспорт Князь Меньшиков) 등이다. 제독은 소령 꼬르사코프(Корсаков)를 추천하여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함장 소령 운콥스키(Унковский)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보스톡호에 승선할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르 넵스끼 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 아바꿈(Аввакум) 신부는 중국어통역

6) Тюнькин. К. Примечание//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И.А. Гончарова в 6 Томах. М. 1956. Т. 3. С. 371; Знгельгардт Б.М.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СПб. 1995. СС. 225-269 ; 이희수, 「교류 초기 러시아인의 한국인식」, 『대동문화연구』 61집, 2008, 20-21쪽

7)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IV. No.10. СПб. 1856. СС.1-2.

8)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IV. No.10. СПб. 1856. С.20

을 맡았다.⁹⁾

전함 팔라다호(Палада)에 승선한 인원은 다음과 같았다.

소령(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운콥스끼(И.С. Унковский)는 함장으로 전함 팔라다호(Палада)를 지휘하였다. 소령 뽀시예트(К.Н. Посьет)는 제독 뿌짜핀의 전속 부관이었다.

대위 꼬르사코프(В.А.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부따코프(И.И. Бутаков), 찌흐멘예프(П.А. Тихменев), 크리드네르(Н. Криднер), 티르코프(С. Тырков), 사비치(Н.Н. Савич), 쉬바르츠(С.П. Шварц), 벨라브네츠(И. Белавнец), 쉘리벤바흐(А.Е. Шлипенбах) 등이 승선하였다. 또한 소위 안주(П. Анжу), 볼핀(А.А. Болтин), 콜로콜리체프(А.А. Колокольников), 질료늬이(П. Зеленый) 등이 참가하였다. 포병 대위 로세프(К.И. Лосев)와 하레조프(А.А. Халезов), 중위 뽀뽀프(Л. Попов)와 이스토크민(Я. Истомин), 소위 모이세예프(И. Моисеев), 의사 아레피예프(А. Арефьев)와 베이리흐(Вейрих), 통역관 고쉬게비치(О.А. Гошкевич) 등이 승선하였다. 또한 4명의 해군소위 후보생(Гардемарины), 1명의 육군 사관학교 생도(юнкер), 32명의 하사관(унтер-офицеры), 365명의 수병(рядовые), 30명의 비전투 장병(нестроевые), 26명의 악사(музыканты) 등이 승선하였다.¹⁰⁾

팔라다호에 승선한 장교와 수병은 러시아정교에 따라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수행하였다. 뿌짜핀에 따르면 장교와 수병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일요일과 명절에는 예배를 가졌다.

팔라다호의 장교는 탐험과 항해 관련 서적을 보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승선한 장교를 통해서 과목을 이수하면서, 영국에서 구입한 육각기를 이용하여 천문을 관측하였다. 러시아정부는 천문관찰 도구와 다양한 교과서 등을 해군사관학교 생도에게 제공하였다.¹¹⁾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대포와 무기를 이용한 훈련을 매일 실시하였다. 팔라다호는 장교를 위한 공동 도서실이 준비되었고, 모든 수병은 각자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팔라다호는 장거리 항해를 위한 식량을 준비하였다. 러시아 해군부는 소금에 절인 돼지비계, 건빵 등 빨리 상하지 않는 식품을 제공하였다. 나머지 식품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보충되었다. 대부분의 식품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통조림이었다.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육지에서 먹던 음식을 바다에서도 먹을 수 있어서 괴혈병을 피할 수 있었다.¹²⁾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 항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독 뿌짜핀(Е.В. Путятин)의 비서(секретарь)로 전함 팔라다호를 타고 출발하였다.¹³⁾ 곤차로프는 공식적으로 항해 기록을 위한 비서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비공식적인 목표도 있었다.

곤차로프는 “자신이 아주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자신의 편안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그

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 //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 XXIV. No.10. СПб. 1856. С.2

1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627

11)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 //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 XXIV. No.10. СПб. 1856. С.6.

1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 //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 XXIV. No.10. СПб. 1856. С.7.

13)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 //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 Т. XXIV. No.10. СПб. 1856. СС.1-2.

런데 곤차로프는 도시 생활과 습관을 버리고 ‘출렁이는 대양의 수면으로 돌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곤차로프는 항상 여행을 꿈꿔왔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적도와 극지방, 열대지방을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는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이 슬기운처럼 내 머리를 흐리게 만들었다”고 표현하였다.

곤차로프는 자신의 삶은 둘로 나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제복을 입은 평범한 관리였다.

“나는 상관의 시선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감기 걸리는 걸 두려워하고, 수십 명의 제복들과 함께 사방의 벽에 갇혔다. 보고서와 통보서, 명령서 등을 손질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지의 탐험에 나선 모험 여행가였다.

“나는 밀집으로 된 모자에 하얀 외투를 걸치고 입에는 껌을 씹으면서 그루지야의 심연을 따라 금빛 양털을 찾으러 간다. 매달 기후와 하늘과 바다와 나라를 바꾸어 가며 여행한다. 항해를 노래한다.”

곤차로프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 자신의 고민도 토로하였다.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른 세계의 시민이 될까?”

몰입하면 할수록 위협적인 환영까지 그에게 나타났다.

“과연 나 같은 식견을 지닌 여행자가 나의 동포들과 사회에 지게 될 의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

“지금 나에게 부과된 일은 세계 일주를 하고, 그것을 지루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게 이야기를 경청하게끔 말해주는 것이다.”¹⁴⁾

제독 뿌짜핀이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450명이 넘는 인원을 조직하고 함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이에, 작가 곤차로프는 지식인으로 사회적 의무와 작가적 능력을 고민하면서 팔라다호에 승선하였다. 곤차로프는 모든 장소들에 애정을 확장하는 강인한 사람을 꿈꾸었다.

3. 발트해-보닌제도 및 나가사키-시베리아 항해 과정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 전함 팔라다호가 러시아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였다.

“나는 출발과 함께 매 순간의 움직임과 걸음들, 인상들이 이전과 다르게 시작되었다.”

곤차로프는 스웨덴 동쪽의 발트해에 위치한 고틀란드(Gotland)를 통과하면서 기록하였다.

“거기서 나는 바다의 미신 하나를 들었다. 이 섬을 통과하는 때는 이 섬을 지키는 영혼에게 폭풍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 동전을 던진다.”

14)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11-35.1.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하지만 팔라다호는 덴마크에 도착하기도 전에 콜레라가 발생했고 3명의 장례식을 치렀다.

팔라다호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젤란드 섬 사이에 있는 순드(Sund) 해협, 덴마크 남쪽 카테가트(Kattegat) 해협, 노르웨이 남쪽 스카게라크(Skagerrak) 해협을 향해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20일경 영국 남부 포츠머스(Portsmouth)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맞바람이 부는 바람에 열흘 동안이나 영국 해협(English Channel)으로 들어 설 수가 없었다.

팔라다호는 영국 동남부 항구도시 도버(Dover)를 지났고, 곤차로프는 ‘흐릿한 회청색을 띤, 울퉁불퉁하고 가파른’프랑스의 해안을 보았다. 팔라다호는 화이트 섬(Isle of Wight)과 포츠머스 요새 사이에 있는 스피트헤드(Spithead) 정박지에 닻을 내렸다.¹⁵⁾ 제독 뿌짜핀은 전함 팔라다호의 정비,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 건조, 그리고 강력하고 거친 바람 때문에 1853년 1월 6일까지 영국에서 머물렀다고 기록하였다.¹⁶⁾

1852년 11월 20일 곤차로프는 장기간 체류한 영국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자선이 사회적 의무의 수준으로 승화되었다. 이 도덕적인 국민은 일요일마다 딱딱한 빵을 먹는다. 당신이 포르테피아노를 방에서 연주하거나 거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현명하고 실무적이고 종교적이며 도덕적이고 자유로운 영국의 평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길!”¹⁷⁾

곤차로프는 ‘동물을 사랑한다’는 영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총과 화약을 수출한다’며 영국의 이중성을 비판하였다.

“총과 화약이 아프리카에 없다면 영국인은 한 번의 전쟁으로 아프리카의 약탈을 멈출 수 있다. 영국인은 자국을 위해 화약을 아프리카에 실어 날랐다. 정말 끔찍이도 나쁜 상업적 민족이다.”¹⁸⁾

팔라다호는 1853년 1월 6일 아바꿈 수도원장이 진행한 예배를 마친 후 포츠머스를 출항하였다. 영국 해협에서 폭풍우를 만나 1월 11일 겨우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었다.¹⁹⁾ 팔라다호는 1853년 1월 12일과 13일 향해 도중 거친 바람을 만났다. 팔라다호는 스페인 북서부 해안 비스케이 만(Bay of Biscay)을 통과했고, 스페인 서쪽 끝에 위치한 피니스테레(Finisterre) 곳에 도달하였다. 1853년 1월 18일, 영국을 출발한지 8일째 되는 날, 아침 9시 대서양 북쪽 포르투갈령 마데이라(Madeira) 섬을 지나갔다.²⁰⁾ 1853년 1월 22일 팔라다호는 북회귀선을 지났다.

곤차로프는 1853년 2월 3일 적도를 통과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였다.

“우리 모두는 갑판위로 쏟아져 나와서 의심스럽다는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마치 지구의 허리를 둘

1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1-35.1.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1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лб. 1856. С.4.

1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1-35. I. От Конштадта до мыса Лизарда

18)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X. Шанхай

1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лб. 1856. С.4.

2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35-47. II. Атлантический океан и остров Мадера

영국에서 마데이라까지 거센 북풍이 불어서 7일이 걸렸다. 뿌짜핀은 보스톡호에게 식량을 확보할 것을 명령하였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лб. 1856. С.4.)

러싼 적도라는 이름의 나무 테두리를 보기라도 할 듯 말이다.”²¹⁾

팔라다호는 1853년 3월 9일 남아프리카 희망봉 동쪽 폴스 만(False Bay)을 지나갔다. 팔라다호의 일부 승무원은 케이프타운인 카프스타드(Kaapstad)로 떠났다. 하지만 곤차로프는 배에서 머무르며 갑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책을 읽으려 하였으나, 읽지 못했고, 뭘 쓰고 싶었으나 쓸 수가 없었다. 사흘, 나흘 그렇게 날들이 지나갔고, 타성은 계속되었다.”²²⁾

제독 뿌짜핀은 희망봉에서 홍콩으로 출발할 것을 보스톡호에게 지시하였다. 뿌짜핀에 따르면 홍콩은 필요한 모든 시설과 보급품을 갖추어 정박지로 편리하며, 동인도와 홍해를 통하여 유럽과 연락할 수 있었다.

뿌짜핀은 희망봉에서 영국의 우편선으로부터 뻬제르부르크에서 보낸 지시서를 받았다. 지시서는 러시아 외무부에서 전령 2명을 미국을 경유하여 파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뿌짜핀은 새로운 임무를 전달할 전령과의 만남 장소를 일본 인근에 위치하는 보닌 제도를 지정하였다. 그와 동시에 뿌짜핀은 올리부차호와 공작 멘쉬코프호에게 보닌 제도로 입항할 것을 통보하였다.²³⁾

곤차로프는 1853년 4월 12일 남아프리카 폴스 만을 출발한 이후 항해의 어려움을 기록하였다.

“인도양은 대서양보다도 더 나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대서양에서는 바람이 거셴지만 그래도 순풍이었는데, 여기는 바람도 거세고 또 역풍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폭풍으로 변하였다.”

팔라다호는 1853년 5월 17일 자카르타의 인근 마을 안예르(Anyer)의 정박장에 도착하였다. 곤차로프는 정박 직후 마닐라로 병력을 실어 나르는 스페인 수송선을 목격하였다.²⁴⁾

뿌짜핀은 팔라다호가 인도양 항해를 통해서 장거리 항해에 취약하고 불안정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뿌짜핀에 따르면 팔라다호의 갑판 위로 물이 올라왔고, 팔라다호 상부의 고정장치에서 흔들림이 발견되었다. 뿌짜핀은 팔라다호 대신에 아르한겔스크(Архангельск)에서 새로 건조한 프리깃함 디아나(Диана)호로 교체해 줄 것을 해군부에게 요청하였다.²⁵⁾

팔라다호는 유럽과 정기 우편선이 있는 싱가포르로 항로를 결정하였다. 이 항로는 청국 해안을 향해 가는 직선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팔라다호는 1853년 5월 21일 시속 3마일까지 빨라지는 해류를 만났고, 5월 25일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였다.²⁶⁾

곤차로프는 싱가포르의 도착한 선원의 기쁨과 싱가포르의 자연을 생생히 묘사하였다.

“늘 전함에 감돌던 긴장과 그 지역에 대한 세밀한 조사, 선원들의 부산한 움직임은 태평한 휴식으로 바뀌었다.”

2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47-53. III. Плавание в Атлантических тропиках

22)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53-55. IV. На мысе Доброй Надежды

23)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10. Спб. 1856. С.11.

24)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55-59 V. От мыса Доброй Надежды до острова Явы

25)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10. Спб. 1856. С.12.

2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XIV. No.10. Спб. 1856. С.13-14.

“여기의 하늘은 아무리 읽어도 지겹지 않는 책과 같다. 이곳의 하늘은 마치 땅과 더 가까운 듯이 더 열려있고 더 선명하다. 밤마다 밝게 빛나는 새벽, 특히 불꽃처럼 빛을 내며 가끔씩 온갖 방향으로 하늘에 지나간 자국을 내는 혜성들을 감상하였다. 나는 대위 프리드네르(Лейтенант Н. Криднер)와 오랫동안 당직용 긴의자 위에 함께 서있었다.”²⁷⁾

뿌짜핀은 싱가포르에서 부따꼬프 대위가 영국의 우편선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이유는 부따꼬프 대위를 통해서 본국 정부에 보고서를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팔라다호는 보급품을 보충한 후 1853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출항했습니다. 팔라다호는 12일 동안의 순항 끝에 홍콩에 입항해서, 하루 반 전에 도착한 보스톡호를 만났다.²⁸⁾

곤차로프는 팔라다호가 홍콩에 도착한 이후 단상을 적었다.

“해는 천정(天頂)에 걸려있었고, 햇빛은 직선으로 내리쬐었다.”

“영국이 홍콩에 돌을 다듬어 벽을 쌓고 흉벽(胸壁)을 만들어서 대포를 설치하였다.”²⁹⁾

뿌짜핀은 페리(M.C. Perry) 제독이 미국 함대를 이끌고 류큐제도에서 일본 해안을 향해 출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홍콩에서의 출발을 서둘렀다.³⁰⁾ 팔라다호는 1853년 6월 26일 홍콩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역동풍(逆東風)을 만나 7월 5일까지 겨우 300마일 정도만 항해하였다. 곤차로프는 홍콩에서 서태평양 보닌(Bonin Is.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총 1600마일이고 순풍을 만나면 7-8일 정도 걸린다고 기록하였다.

팔라다호는 1853년 7월 7일 인도네시아 바탄(Bataan) 섬으로 접근하였다. 곤차로프에 따르면 팔라다호는 영국 해군장교 벨처(Edward Belcher)의 표시처럼 닻을 내릴 장소가 있어야 했지만 거대한 절벽과 사방에서 해안을 때리는 물결의 하얀 테두리만 보았다.

팔라다호는 태평양으로 출발하였다. 곤차로프는 태평양의 바람과 파도 때문에 항해가 지체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저녁 무렵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나는 글을 써보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잉크병도, 촛불도 탁자에 서있질 못했고, 종이는 손아래에서 미끄러 떨어졌다. 몇 자 쓴다고 해도, 뒤로 자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손을 뒤로 뻗쳐 벽에 기대야하였다.”

“바람은 울부짖고 있었다. 파도는 꼭대기 부분을 편평하게 만들고, 그 파도를 마치 채를 통해 뿌리듯이 대양에 뿌리고 있었다. 파도 위에는 물 분말이 구름을 이루었다. 광란에 싸여 서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사자와 호랑이 등의 야생 동물 같았다.”

곤차로프는 1853년 7월 16일 보닌(오가사와라) 제도까지 여전히 500마일 정도 남았다고 항해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일주일 내내 70마일 정도만 갔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무풍이 왔다. 이게 무슨 농담이란 말인가? 태

2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59-61. VI. Сингапур

28)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15.

29)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61-63. VII. Гон-Конг

30)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17.

평양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우롱하였다. 이제 태평양은 그가 정말로 태평하다는 걸 증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거대한 구름 덩어리들이 움직이면서 수평선을 보여주었지만, 우리에게 속도를 붙여주지는 않았다. 무더웠고, 대기에 움직임은 없었다.”³¹⁾

팔라다호는 30일을 넘는 항해 끝에 1853년 7월 26일 보닌(오가사와라) 제도 로이드 항구(Port Lloyd)에 정박하였다. 팔라다호는 보닌제도에서 올리부차호, 홍콩에서 하루 전날 출항한 보스톡호, 그리고 전령을 태워 하와이 제도를 경유한 공작 멘쉬꼬프호를 만났다. 크라운(Кроун) 대위와 보디스코(Бодиско) 비서는 공작 멘쉬꼬프호를 타고 왔으며, 일본에서 지켜야 할 추가 명령서를 가져왔다. 공작 멘쉬꼬프호는 팔라다호에 공급할 양식을 실어왔다. 팔라다호는 8월 4일 3척의 함정과 함께 나가사키로 출항하였다.³²⁾ 곤차로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보닌 제도는 청국어나 일본어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섬들’이다. 여러 국가의 포경선들이 끊임없이 출몰한다. 그중 제일 많은 것은 미국 포경선이다.”³³⁾

추가 명령서를 전달 받은 뿌짜핀은 일본과의 협상 원칙을 정하였다. 뿌짜핀은 일본과의 교류에서 친절과 우정을 우선시하고, 러시아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의 법규와 풍습을 최대한 수용하며, 침착한 자세로 러일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³⁴⁾

팔라다호는 10개월의 항해 끝에 1853년 8월 9-10일 사이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였다.(일본 1차 방문) 뿌짜핀은 신비한 미지의 땅인 일본의 해안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뿌짜핀에 따르면 일본의 관료는 나가사키에 입항하기 전에 항구에서 수 마일 밖으로 마중 나와 국적을 확인했고, 항구 입구에 정박할 것을 요구하였다.³⁵⁾

뿌짜핀은 나가사키 정박 이후의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작 멘쉬꼬브호를 상하이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사할린섬과 아무르강 인근에서 러시아의 소식을 입수할 목적으로 보스톡호를 타타르 해협으로 보냈다.³⁶⁾

곤차로프는 일본의 첫 인상을 기록하였다.

“바로 여기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굳게 닫혀있는 보석함이다. 이제껏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 보람 없는 노력을 들인 그 나라. 황금이나 또는 무력으로 또는 간교한 정치로 서로의 만남을 이끌어 내려는 나라다.”

팔라다호는 한 달 간의 협상 끝에 1853년 9월 9일 나가사키 영주를 접견하였다. 팔라다호는 일본의 협상 지연 때문에 1853년 11월 5일 식료품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떠날 것을 결정하고 11월 11일 출발하였다.³⁷⁾

3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63-71. VIII. Острова Бонин-Сима

3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IV. No.10. Спб. 1856. С.19.

3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63-71. VIII. Острова Бонин-Сима

34) 그 후 뿌짜핀은 일본정부와 장기적이고 두터운 관계를 구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IV. No.10. Спб. 1856. С.21.)

35)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IV. No.10. Спб. 1856. С.20. 곤차로프는 나가사키에 8월 10일 도착, 뿌짜핀은 8월 9일 도착이라고 기록하였다.

3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ХХIV. No.10. Спб. 1856. С.22.

3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IX.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사실 1853년 9월 14일 공작 멘쉬코프호는 터키, 프랑스, 영국과의 관계 단절에 관한 소식을 입수하였다.³⁸⁾ 그럼에도 공작 멘쉬코프호는 아직 상하이 항구 입항이 위험하지 않으며, 상하이에 주둔한 적군의 군사력이 러시아의 선단보다 우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팔라다호는 상하이에서 신용장을 현금화하고 석탄, 항해물품, 양식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³⁹⁾

곤차로프는 상하이로 출발하는 순간 또다시 항해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물에 떠다니는 삶, 또다시 바람의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바람의 자비에 따라 평온해지겠지. 지금 바람은 얼마나 울부짖고 또 얼마나 차가운지! 나는 석 달 동안 바다가 낯설었다.”

팔라다호는 1853년 11월 14일 450마일 가량을 항해해서 상하이 인근 새들 군도(Saddle Islands)에 정박하였다. 뿌짜핀은 보스톡호의 손상된 부분(잠수 부위 도장 등)을 정비시키고, 유럽과 청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항해 준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뿌짜핀은 새들 군도에서 동인도 우편으로 보내온 해군부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 통지서는 디아나호(Диана)가 팔라다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1853년 10월 크론쉬파트에서 출항했고, 미국을 경유하여 하와이 제도로 항해했다는 내용이였다.⁴⁰⁾

팔라다호는 1853년 11월 23일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를 만났던 순간을 기록하였다.

“보스톡호는 상하이에서 야채, 살아 있는 황소들, 닭, 오리들, 말 그대로 신선한 식료품과 새로운 소식들.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즉 지금은 11월인데 8월자 소식들을 가지고 왔다.”

팔라다호는 상하이 근처 새들 군도(Saddle Islands)를 출발하여 4일 동안 항해한 이후 1853년 12월 24일 나가사키에 정박하였다.(일본 2차 방문) 곤차로프는 다시 도착한 나가사키를 묘사하였다.

“그런 날을 잇기는 힘들다. 하늘과 바다는 하나의 푸른 덩어리가 되었다. 공기는 따뜻했고 움직임이 없었다. 나가사키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햇볕을 듬뿍 받은 무언가 훌륭해 보였다. 갈색의 언덕들 사이 어딘가에서 쌀, 밀, 채소가 새롭게 파종되고 새싹이 올라와서 선명한 파란 색을 띄고 있다. 바다를 쳐다보면 그것은 끝없이 펼쳐진 감청색 휘장이었다.”⁴¹⁾

뿌짜핀은 1853년 12월 초 크라운(Кроун) 대위를 전령으로 홍콩과 동인도를 거쳐 보고서를 본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뿌짜핀은 탐사 관련 자료와 지도, 사할린 섬의 석탄매장지발견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였고, 청국 물품 등을 견본으로 보냈다.⁴²⁾

곤차로프는 1854년 1월 1일 나가사키에 도착한 일본 전권대표를 만났다. 이 특별한 날의 감정을 곤차로프는 기록하였다.

“1월 1일입니다. 항상 그렇듯 모여서 늘 했던 대로 춤을 추고 떠들고 카드놀이를 하고 자정에 싸움을 기다리면서 여러 번 하품을 하고 결국 고대했던 순간을 맞이해서 잔을 잡았겠죠. 생애 처음으로 나는 지

38)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 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29.

3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 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31.

40)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 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31-32.

4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X. Шанхай

42) 뿌짜핀은 12월 17일 네 척의 함정을 이끌고 나가사키로 출발하였다.(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35.)

난해의 마지막 날을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다. 나는 이 날 일본 귀족 집에서 식사를 하였다.”⁴³⁾

이날 곤차로프와 함께 소령 운콥스끼(И.С. Унковский)와 나지모프(Н.Н. Назимов), 대위 꼬르사코프(В.А.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와 크리드네르(Н. Криднер), 소령 푸루겔름(И.В. Фуругельм), 청국어 통역관 고쉬케비치(О.А. Гошкевич) 등이 참석하였다.⁴⁴⁾

일본 전권대표는 1854년 1월 4일 답방으로 팔라다호를 방문하였다.⁴⁵⁾

뿌짜핀은 1854년 1월 말 나가사키와 팔라다호에서 일본 전권대표와 함께 고별 오찬 및 우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뿌짜핀은 봄에 사할린 섬 남단 아니바(Анива) 해협에서 러일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하였다.⁴⁶⁾

팔라다호는 러시아와 일본의 수교 협상이 지연되자 1854년 2월 15일 마닐라 만에 도착하였다. 곤차로프는 마닐라에 도착한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우리는 향로로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며 바람은 잠잠하였다. 밤이 왔다. 당신은 빛이 없이도 밝고 따뜻하며 짙고 고요한 열대의 밤을 모를 것이다. 바람 한 점, 소리 하나 없이 별들이 떨고 있다. 나는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았다. 주의의 모든 것은 저녁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나의 머릿속에서 호기심이란 즐거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가톨릭을 믿는 남쪽의 그림과 형상들이 망각의 잔해들에서 떠올랐다.”⁴⁷⁾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하였다.(한국 1차 방문) 곤차로프는 거문도의 첫 인상을 기록하였다.

“여기저기 조선인의 농가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보이는 것은 초가지붕뿐이었고, 드물게 주민이 보였다. 모두들 마치 수의를 입은 것처럼 흰옷을 입고 있었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했고, 필담으로 조선 주민과 대화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9일 나가사키에 정박했고, 곤차로프는 그 순간을 기록하였다.(일본 3차 방문)

“나가사키까지의 이동은 마치 강에서 배를 향해하듯 훌륭했고 정숙하였다. 일본인은 우리가 그렇게 빨리 도착한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⁴⁸⁾

제독 뿌짜핀은 일본 전권대표와 면담을 요청하는 문서를 나가사키 영주에게 전달한 다음 조선 동해안의 조사를 결정하였다.⁴⁹⁾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18일 쓰시마 섬을 통과하였다.⁵⁰⁾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동해안 조사를 시작하였다.(한국 2차 방문)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5일 위도 39도의 조선 동해안을 측량했고, 5월 5일 위도 41도의 동해안을 측량하

4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66-210. XI. 1854 год

44) “И.С. Унковский, капитан-лейтенант Римский-Корсаков, Назимов и Фуругельм, лейтенант барон Криднер, переводчик с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О.А. Гошкевич.”(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401. XI. Русские в Японии)

45)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66-210. XI. 1854 год.

4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39.

47)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210-230. XII. Манилла.

48)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1

49)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3

50)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9일 두만강에서 6마일 거리에 정박하였다. 팔라다호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2일간 초산만(울산만)에서 북위 42도 31분(두만강하구) 지점에 이르는 동해안 전역을 실측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17일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를 만났다.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는 유럽의 소식과 편지를 가져왔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는 비공식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18일 시베리아와 사할린 섬을 가르는 타타르 해협(Tatar Strait)에 들어섰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20일 만주 해안에 배를 정박하였다. 곤차로프는 시베리아 퉁구스 족을 만났고 길랴크(Gilyak, Nivkh) 족에 대해 기록하였다.

“길랴크 족은 바람에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 무더기 아래서 영하 36도에도 살아간다고 한다.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 몸을 녹이고 싶으면 모닥불을 피우고, 송어와 곰 마늘(마늘의 한 종류)을 먹는다.”⁵¹⁾

팔라다호는 북위 42도 34분 포시에트(Посыет)만까지 탐사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5월 22일 시베리아 동해안에서 공작 멘쉬코프호를 만났다. 뿌짜핀은 데카스트리해협(залив де-Кастри)에 주둔시키고, 동시베리아 총독 무라비요프(Муравьев)의 지시를 받으라는 러시아황제의 명령을 받았다. 총독 무라비요프(Муравьев)는 1854년 6월 22일 팔라다호의 정박지에 도착하여, 팔라다호가 임무를 마쳤기 때문에 타타르 해협(Tatar Strait)을 경유하여 북쪽으로 항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뿌짜핀은 북쪽에 가서 팔라다호를 아무르 강으로 끌어 들여 빙하와 적군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작전을 세웠다. 팔라다호는 아무르강의 하구에서 40마일 떨어진 라자레프 곳까지 이동하였다. 결국 팔라다호는 1854년 8월 시베리아 연안에 닻을 내렸다.⁵²⁾

곤차로프는 바다에서 육지로 내려야하는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사람은 참으로 이상하다. 육지에 가고 싶지만, 전함을 떠나는 것도 아쉽다! 하지만 이 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내가 억지로 팔라다호를 떠난다는 것에 놀라지 않으실 것이다.”⁵³⁾

팔라다호의 장교와 수병은 1854년 9월 니콜라예프 검문소로 파견되었다. 팔라다호는 1854년 9월 26일 정박하여 전함의 무장 해체를 진행하였다. 제독 뿌짜핀은 1854년 10월 3일 러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함 디아나호(Диан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출항하였다.⁵⁴⁾

그 후 전함 디아나호는 1854년 12월 나가사키에서 지진의 여파로 난파당하였다. 디아나호의 난파에도 불구하고 뿌짜핀은 1855년 1월 26일 일본정부와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條約)⁵⁵⁾을 체결하

51)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539. XIV.Обратный путь через Сибирь

52)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47-48.

53)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СС. 505-539. XIII. От Маниллы до берегов Сибири.

54)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50.

55)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Japan and Russian(日露和親條約).

였다. 뿌짜진은 1855년 4월 26일 가벼운 남서풍이 불자 새로 건조한 범선 헤다호(Хеда)를 타고 일본 시즈오카 건너편 헤다 항구를 출발하였다. 헤다호는 뽀시에트 중령과 로세브 중령, 뽀슈로브 준위, 꼴로꼴쵸브 대위, 세묘노브 준위, 사관생도 2명과 수병 40명 등이 승선하였다. 뿌짜진은 1855년 6월 5일 아무르 석호로 들어가서 라자레프 곶에 도착하였다.⁵⁶⁾

한편, 곤차로프는 오호츠크 연안 아얀(Аян)에 상륙했고, 야쿠츠크(Якутск)와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를 거쳐 1855년 2월 13일 뽀제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에 돌아왔다.

제독 뿌짜진은 팔라다호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에 따른 실행 등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다만 뿌짜진은 1854년 3월 발발한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호츠크해 해안을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기록하였다.⁵⁷⁾ 그런데 작가 곤차로프는 항해과정에서 도착한 국가에 대한 자연과 풍경 및 인간과 민족에 대한 특징을 포착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넘나들며 인간의 삶과 죽음의 공존을 생생히 기록하였다. 그는 대양에 있는 단단한 범선보다 도시의 소란스러운 거리가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 러시아함대의 울릉도 · 독도 발견

서양에서 울릉도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1787년 5월 27일 프랑스의 장-프랑소아 갈로 라페루즈(Jean-Francois de Galaup Laperouse, 1741-1788) 탐험대에 의해서이다. 울릉도를 가장 먼저 목격한 천문학자 다줄레(Dagelet)의 명칭을 사용해서 ‘다줄레’라고 명명하였다. 당시 함대는 새로 건조한 두척의 호위함인 부솔(Boussole)과 아스트롤라브(Astrolabe)로 구성되었다.⁵⁸⁾

러시아함대도 동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며 기록하였다.

뿌짜진 제독은 1854년 4월 타타르 해협에서 빙하와 안개를 만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한국의 동해안 탐사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팔라다호는 “한반도 동해안 남동쪽부터 만주와 국경을 접하는 두만강까지, 그리고 만주연안을 따라 몇 십 마일 더 먼 곳에 이르기까지 등의 동해안 지역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기록하였다. 팔라다호는 라자레프만(송전만) 등을 측량했고, 날씨가 좋은 날 잠수 도구를 이용하여 수중 지형까지 조사하였다.⁵⁹⁾

팔라다호의 소속 함정 중 올리부차호는 1854년 4월 6일 대한해협을 지나 북쪽의 타타르(Татарский)

56)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71, 75, 77.

57)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1855 гг.//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XXIV. No.10. Спб. 1856. С.84.

58)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7, 32쪽.

59) РГАВМФ. Ф.296. Оп.1. Д.75. ЛЛ.219-223. 1854.5.25/6.6

해협으로 향해하던 도중 독도를 발견하고,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하였다.

“아침에 발견한 2개의 높은 바위는 만나질 동안 시야에 있었으며, 이제 명확해졌다. 2개의 제법 높고 예각의 발가벗은 바위는 약 300사젠(642미터) 떨어져 있었다. 이들 중 서쪽 섬은 북위 37-13도, 동경 131-55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 더 높은 서쪽 섬을 ‘올리부차’라 명명하였다. 동쪽 섬을 현재는 발틱 함대 그 후에 캄차트카 전단으로 소속되기 전에 1846년까지 흑해함대 소속이었을 때 함정의 최초 이름을 기념하여 ‘메넬라이’라고 불렀다. ‘올리부차’에서 북서쪽으로 2마일 가량 물위에 나타난 암초였다. 올리부차 및 메넬라이 섬을 청명한 일기상태의 30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다. 1854년 4월 6일(양력4.18) 우리 함정은 올리부차 서쪽 4마일 해상에서 만나질 동안 머물렀다.”⁶⁰⁾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한국 동해안의 북위 35-30도 지역에서부터 북위 42-30도, 동경 131-10도 지역까지 약 600마일의 해안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러시아 해군지 1855년 1월호에 게재하였다.

“다젤레트(Дажелет)는 보스톡호가 북위 37-22도, 동경 130-56도에서 관측했는데, 둘레 20마일 크기의 원형 모양이고, 해안은 협소하며, 거의 접근할 수가 없었다. ‘다젤레트’최고봉의 높이는 2,100피트이다.

아르고나트섬은 존재하고 있었는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 섬은 보이지가 않는다.

해조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으며,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섬은 올리부차 호가 북위 37-14도, 동경 131-57도에서 발견했으며, 메넬라이 및 올리부차 도라 불렀다. 이 섬의 발견은 항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이들 섬은 근접한 섬들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있어서 동해 북방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다.”⁶¹⁾

그 후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1857년 ‘조선 동해안 지도’를 발간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현재까지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의 ‘조선 동해안 지도’는 1857년 판본, 1868년 판본, 1882년 판본이 국내에 알려졌다. 1857년 판본은 1854년 올리부차호가 메넬라이와 올리부차를 처음 발견했다고 소개되었다. 그런데 1860년 러시아 해군 항해부대 소속 지휘관 세르게예프 중령(Подполковник Сергеев)은 독도에 대한 지형의 측량을 실행하였다. 1868년 판본은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지도에 소개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 그림을 포함시켰다. 1882년 판본은 1861년부터 1880년까지의 러시아 조사에 기초하여,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 및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동일하게 수록하였다.⁶²⁾ 이것은 팔라다호 함대 소속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이 러시아해군부 수로국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지도에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19세기 후반 러시아해군부 수로국의 지속적인 지도 발간을 통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 후 러시아 함대는 울릉도를 경유하면서 기록으로 남겼다.

60) РГАВМФ. Ф.870. Оп.1. Д.7208. ЛЛ.87-88. Шханечный Журнал Корвета Олибуца(1854년 올리부차호의 항해일지)

61) Опис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Морской Сборник(해양선집), Т.14. N.1, 1855, С.С.34-35

62) Карта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сост. с описи, произвед. офицерами на фрегате Паллада. Грав. В. Поляков. Вырез. слова Д. Комов. [СПб.] Гидрогр. Деп. Мор. М-ва. 1857.

1886년 8월 포함 시부치(Сивуч)호는 진해(Bate Crichton 북위 34.2, 동경 128.18) 군도를 탐사하면 군사적 방어시설 및 저탄소의 기능을 관찰하였다.⁶³⁾ 그 후 시부치(Сивуч)호는 1887년 4-5월 사이 두만강을 정밀하게 측량하였다. 시부치호는 1887년 4월 나가사키-히케-타케-울릉도 등을 경유하여 두만강에 도착하였다.

“4월 7일 오전 8시 3개의 증기기관을 보유한 시부치호는 나가사키 정박지에서 닻을 올렸다. 이오시마(Иво-Сима) 등대를 벗어나면서 나침반으로 항로를 결정했으며, 그 후 북서쪽 65도 방향으로 항로를 잡고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오전 11시 30분 히케(остров Хике, 이키 壱岐) 섬 옆을 지나면서 항로를 북서쪽 29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정오가 지나면서 초속 3-4미터 북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오후 3시 10분 타케(камень Таке, 타케시마) 암초를 지나면서 북서쪽 15도 방향으로 나아갔다. 오후 8시 동쪽의 조선해협(Восточный Корейский пролив, 대한해협)에 도달하여 항로를 북쪽 27도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4월 8일 오전 6시에는 북쪽 11도 방향으로 항로를 설정하였다. 이 항로는 다젤레트(остров Дажелет) 섬 서쪽 6마일을 지나는 것이었다. 그곳으로부터 북서쪽 15도 방향으로 항로를 변경하여 볼틴(Болтин) 곶 방향으로 향하였다.”⁶⁴⁾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타케’(камень Таке, 타케암초)라는 명칭이다. 히케는 이키(壱岐)로 대한해협과 나가사키 중간에 위치하였다. 시부치(Сивуч)호의 항해 기록에 나오는 ‘타케’는 독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타케’를 거쳐 한국해협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시부치호 함장은 울릉도 ‘다젤레트’를 항로로 이용하면서 동해를 탐사하였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Е.И. Алексеев)는 1896년 1월 한국의 주요 항구를 조사하면서 전략적 가치에 관한 탐사 보고서를 러시아 해군부에 제출하였다. 알렉세예프는 거제도(거제도)를 기점으로 한국의 주요 항구 중 제물포-부산-원산-울릉도까지의 거리를 표시하였다. 알렉세예프는 동해안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⁶⁵⁾

태평양함대 사령관 길테브란트(Я.А. Гильдебрандт)는 1899년 11월 20일 블라디보스톡 소속 러시아 호, 류리호, 파마티 아조프호, 아드미랄 꼬르닐로프호 등의 순서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였다. 태평양함대는 울릉도(Остров Дажелет) 서쪽으로 5마일 지점부터 시작되는 나가사키로 항로를 잡았다.⁶⁶⁾

결국 러시아함대도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며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관찰하면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하였다.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실행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63)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6. ЛЛ.64а-64б. 1886.8.29

64) РГАВМФ. Ф.417. Оп.1. Д.257. ЛЛ.57-79. 1887.5.23.

65)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1896.1.21.

66)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22-72о6. 1900.7.9.

5. 맺음말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쨌진(Е.В. Путятин)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했고,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다.

제독 뿌쨌진은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 캄차카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корвет Олибуца),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шкуны Восток), 수송선 공작 멘쉬코프호(транспорт Князь Меншиков)으로 함대를 구성하였다. 뿌쨌진은 소령 꼬르사코프(Корсаков)를 추천하여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함장 소령 운콥스키(Унковский)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보스톡호에 승선할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르 넵스끼 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 아바꿈(Аввакум) 신부는 중국어통역을 맡았다.

작가 곤차로프는 1852년 10월 7일 항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독 뿌쨌진의 비서로 전함 팔라다호를 타고 함께 출발하였다. 곤차로프는 항해과정에서 도착한 국가에 대한 자연과 풍경 및 인간과 민족에 대한 특징을 포착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넘나들며 인간의 삶과 죽음의 공존을 생생히 기록하였다. 그는 발의 청결과 절의 풍습에 관한 동양 문화를 설명하였고, 속담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도 인정하였다. 그만큼 곤차로프는 동양을 이해하는 학습과 노력이 남달랐다. 곤차로프는 공식적으로 항해 기록을 위한 비서 신분이었지만 개인적인 목표도 있었다. 그는 지식인으로 사회적 의무와 작가적 능력을 고민하면서 팔라다호에 승선하면서, 모든 장소들에 애정을 확장하는 강인한 사람을 꿈꾸었다. 그는 대양에 있는 단단한 범선보다 도시의 소란스러운 거리가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⁶⁷⁾ 그것은 국가의 목표와는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인간성 회복을 꿈꾸는 개인의 표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뿌쨌진은 1855년 1월 26일 일본정부와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条約)을 체결하였다. 팔라다호는 일본과의 외교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에 따른 실행 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1854년 3월 발발한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토츠크해 해안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1854년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5월 11일까지 동해안 조사를 시작하였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양 최초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명명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발견하면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하였다.

67) 먼 여행을 돌아온 곤차로프는 전함 팔라다호에 자신이 깨달은 진실들을 쏟아 부었다. 예를 들면, 그는 절대 악의 비판과 처벌에 관한 이중성을 꼬집었다. “천개의 돌을 던져보아 소용없던 악에 또 하나의 작은 돌을 쓸데없이 던져야 할까? 일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 비난 받는 쪽은 죄를 인정하면서 침묵한다. 재판은 선고를 내렸지만 선고를 이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СС. 149-166. X. Шанхай)

그 후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은 1857년 ‘조선 동해안 지도’를 발간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현재까지 러시아 해군부 수로국의 ‘조선 동해안 지도’는 1857년 판본, 1868년 판본, 1882년 판본이 국내에 알려졌다. 1857년 판본은 1854년 올리부차호가 메넬라이와 올리부차를 처음 발견했다고 소개되었다. 그런데 1860년 러시아 해군 항해부대 소속 지휘관 세르게예프 중령(Подполковник Сергеев)은 독도에 대한 지형의 측량을 실행하였다. 1868년 판본은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지도에 소개하면서,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 그림을 포함시켰다. 1882년 판본은 1861년부터 1880년까지의 러시아 조사에 기초하여,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 및 세르게예프의 독도 측량을 동일하게 수록하였다. 이것은 팔라다호 함대 소속 올리부차호의 독도 발견이 러시아해군부 수로국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의 공식 지도에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19세기 후반 러시아해군부 수로국의 지속적인 지도 발간을 통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 후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실행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국문초록]

기존 연구는 팔라다호 소속 장교의 인명, 팔라다호의 출발과 도착의 항해과정, 곤차로프의 출발 이유 등에 대해서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가 대체로 조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곤차로프 및 팔라다호의 이동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탐사 과정을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발견 과정을 추적하였다.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쨌핀(Е.В. Путятин)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를 출항했고,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다.

제독 뿌쨌핀은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 캄차카 함대 소속 코르벳함(군함) 올리부차호(корвет Олибуца),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шкуны Восток), 수송선 공작 멘쉬코프호(транспорт Князь Меньшиков)으로 함대를 구성하였다. 뿌쨌핀은 소령 꼬르사코프(Корсаков)를 추천하여 스쿠너 범선 보스톡호의 함장으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함장 소령 운콥스키(Унковский)를 비롯하여 장교 22명과 승무원 43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보스톡호에 승선할 장교 6명과 수병 37명도 포함되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Alexander Nevsky Lavra) 아바꿈(Аввакум) 신부는 중국어통역을 맡았다.

뿌쨌핀은 1855년 1월 26일 일본정부와 시모다조약(Treaty of Shimoda, 下田條約)을 체결하였다. 팔라다호는 일본과의 외교 수립, 해군부의 탐사 지시에 따른 실행 등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팔라다호는 1854년 3월 발발한 크림전쟁의 여파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미국에 있는 러시아 식민지를 방문하지 못했고, 오후츠크해 해안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1854년 4월 20일 조선 연안에 도착해서 5월 11일까지 동해안 조사를 시작하였다. 곤차로프는 거문도를 직접 답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양 최초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명명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올리부차호는 독도를 발견하면서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라고 명명하면서, 실측에 기초하여 최초로 정확하게 좌표에 기입하였다.

그 후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동해에서 울릉도를 경유하며 해상훈련을 실시하였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세예프는 동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울릉도를 주목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1896년 9월 두만강·압록강·울릉도의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여 한국에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실행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주제어 : 팔라다호, 곤차로프, 뿌쨌핀, 태평양함대, 독도

[Abstract]

Russia's maritime exploration and the discovery of Dokdo and Ulleungdo in the Age of Modern

Kim Young-Soo

Ivan Alexandrovich Goncharov(1812–1891) was a Russian novelist best known for his novels *A Common Story* (1847), *Oblomov* (1859), and *The Precipice* (1869). He also served in many official capacities, including the position of censor.

Goncharov was born in Simbirsk into the family of a wealthy merchant; as a reward for his grandfather's military service, they were elevated to gentry status. He was educated at a boarding school, then the Moscow College of Commerce, and finally at Moscow State University. After graduating, he served for a short time in the office of the Governor of Simbirsk, before moving to Saint Petersburg where he worked as government translator and private tutor, while publishing poetry and fiction in private almanacs. Goncharov's first novel, *A Common Story*, was published in *Sovremennik* in 1847. Goncharov's second and best-known novel *Oblomov* was published in 1859 in *Otechestvennye zapiski*. His third and final novel *The Precipice* was published in *Vestnik Evropy* in 1869. He also worked as a literary and theatre critic.

Frigate 'Pallada' is a book by Ivan Goncharov, written in 1854-1857 and based on a diary that he kept as a secretary for Admiral Yevfimiy Putyatin during his 1852-1854 around-the world expedition on board *Frigate Pallada*.

In the autumn of 1852 Goncharov received an invitation to take part in the Admiral Putyatin-led around the world expedition through England, Africa, Japan, and back to Russia. The flotilla, led by *Frigate Pallada* under the command of Admiral Ivan Unkovsky, included also corvette *Olivutsa*, schooner *Vostok* and *Knyaz Menshikov*, a small merchant vessel. The mission's objective was to establish trade relations with Japan, then a closed and, as far as Russia was concerned, mysterious country. As it was successfully completed, *Pallada*, unable to enter the Amur River because of her draft, had to overwinter in *Imperatorskaya Gavan*. Goncharov returned to Saint Petersburg on 25 February 1855, after traveling through Siberia and the Urals, this continental leg of the journey lasting six months.

Key words : *Frigate Pallada*, Goncharov, Putyatin, *Olivutsa*, Dokdo

[참고문헌]

- 김영수,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독도와 한일관계』, 2009.
- 박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2010.
-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전략과 수교 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100년사』, 1984.
- 석영중, 「오블로모프의 맛있는 음식」, 『러시아문학연구논집』 35, 2010.
- 이영은, 「근대전환기 러시아인의 조선인식」, 성균관대학교박사논문, 2011.
-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1998.
- 이희수, 「교류 초기 러시아인의 한국인식」, 『대동문화연구』 61집, 2008.
- 정하미, 「미국 표류민 학대 문제와 맥도널드의 경험 : 미일화친조약의 전야」, 『일본연구』 17, 2012.
- 최명복, 「독도와 러시아」, 『해양전략』 102, 1999.
- 최윤락, 「곤차로프와 그의 장편소설 오블로모프」, 『오블로모프』, 2권, 문학과 지성사, 2002.
- Han Cheol-Ho, The Japanese Hydrographic offices publication, revision, and Chart of East Coast of Korea and Recognition of Dokdo, Korea Journal, Vol,57-1,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
- Тюнькин. К. Примечание//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И.А. Гончарова в 6 Томах. М. 1956. Т. 3.
- Знгельгардт Б.М. Фрегат Паллада//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Спб. 1995.
-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57.
- Гончаров И.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 1940.
- Путятин Е.В.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отчет о плавании отряда военных наших судов в Японию и Китай, за 1852 - 1855 гг.// Морскойсборник. Т. X X IV. No.10. Спб. 1856.
- Опис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Морской Сборник(해양선집), Т.14. N.1, 1855.
- Карта восточного берега полуострова Кореи сост. с описи, произвед. офицерами на фрегате Паллада. Грав. В.Поляков. Вырез. слова Д. Комов. [СПб.] Гидрогр. Деп. Мор. М-ва. 1857.(РНБ КЗ-ВАЗ/4-51)
- РГАВМФ. Ф.296. Оп.1. Д.75. ЛЛ.219-223.
- РГАВМФ. Ф.870. Оп.1. Д.7208. ЛЛ.87-88.
-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6. ЛЛ.64a-646.
- РГАВМФ. Ф.417. Оп.1. Д.257. ЛЛ.57-79.
- РГАВМФ. Ф.417. Оп.1. Д.1340. ЛЛ.375-392.
-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22-72об.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극동에서의 Map Trade와 독도의 발견

이 상 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극동에서의 Map Trade와 독도의 발견

이 상 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울릉도와 독도는 오래전부터 한민족의 영역에 속해 있었으며, 한민족의 생활공간이었다. 반면, 일본 측에서는 로컬 수준에서 소수의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울릉도에 도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일본의 책임있는 행정 당국에서는 이 두 섬이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는 등 독도 도발의 수위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지도 제작은 주로 정부 기관이나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지도제작 당국에서는 한반도의 동해상에 있는 울릉도나 독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륙이나 외부 세력의 움직임 등 지정학적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19세기 동안에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다거나, 이 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정황이 포착된다면, 지금처럼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는 도발 행태를 오래 지속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도영유권 이슈는 한일 양자 간에만 국한되는 문제인가? 그리고 독도 영유권 논쟁은 동아시아 또는 극동에만 한정되는 특수한 테마인가? 외부세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 본고에서는 19세기 동안에 일본이 독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을 세계지도 제작과 Map trade의 역사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2. 극동에서의 Map Trade와 주요 행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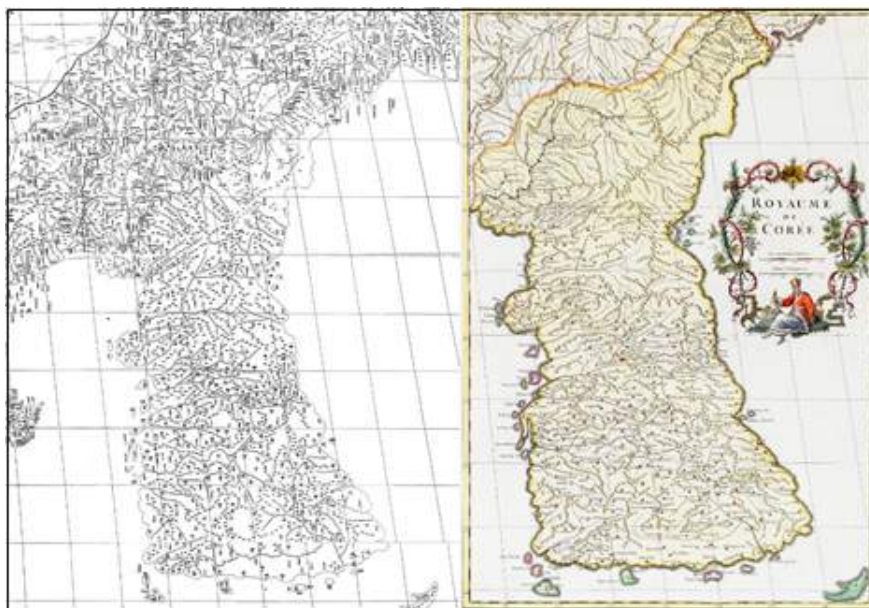
독도영유권을 논함에 있어, 19세기 극동에서의 Map Trade는 어떤 의미가 있나? 19세기는 동서양의 만남과 교류가 극대화되던 시기로서 탐험과 항해를 통한 지도제작이 완성되던 시기이다. 또한 19세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와 가장 가까운 과거이며, 전통 사회와 현대사회, 그리고 서구 세계와 동아시아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용돌이치던 19세기의 극동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해상 공간은 일찍이 서구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항로상의 이정표로서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과 가치는 점점 더 부각되었고, 세계지도 제작에도 비중 있게 반영되었다.

한반도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정보는 1717년에 청나라에서 제작된 「황여전람도」에 반영되어 프랑스로 전해졌으며, 20년 후인 1735년에는 프랑스 왕실에서 이 지도의 프랑스어 버전이 제작되었고, 곧이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과 전 세계 지도제작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통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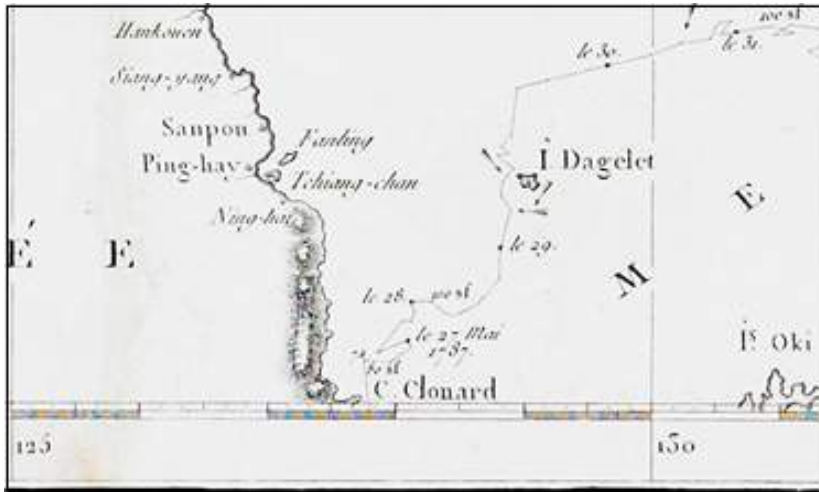
18세기 후반, 영국과 프랑스 등 해양 강국들은 중국을 통해 입수한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를 근거로 본격적인 극동 탐사에 나섰다. 기존 지도에 미처 수록되지 않았던 지리정보는 탐사 후 지도에 새로 추가되었고, 지도상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들에 대해서는 지도에서 삭제되는 등 19세기를 지나는 동안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는 점점 더 완결도가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미국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는 활발하게 유통되었으며, 탐험가들의 증언은 곧바로 지도제작에 반영되었다.

〈그림 1〉 중국-프랑스의 Map Trade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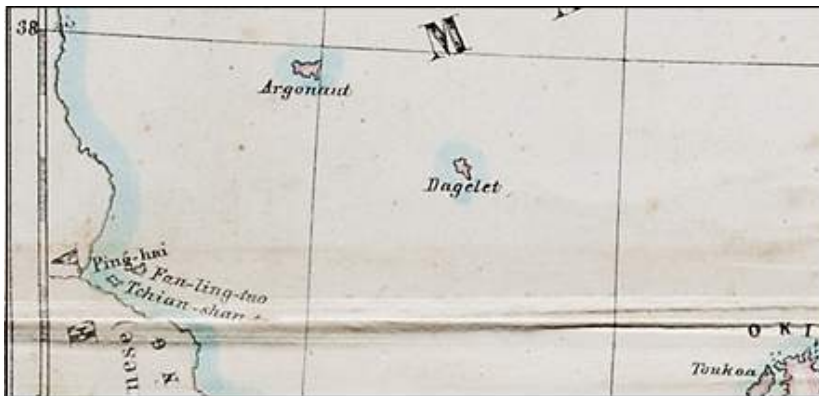
출처: (좌) 황여전람도 한반도 부분(汪前進 외, 2007); (우) 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1735, Royaumes de Corée.

〈그림 2〉 라페루즈의 항해경로와 울릉도 발견



출처: La Pérouse, 1787, 「Carte des découvertes faites en 1787 dans les mers de Chine et de Tartarie」, 한반도 동해안 부분도, France.

〈그림 3〉 신규 지리정보의 혼재기



출처: John Arrowsmith, 1847, 「Impero Del Giappone」, 한반도 동해상 부분도, Italy.

〈그림 4〉 Argonaut와 Dagelet 중심의 새로운 지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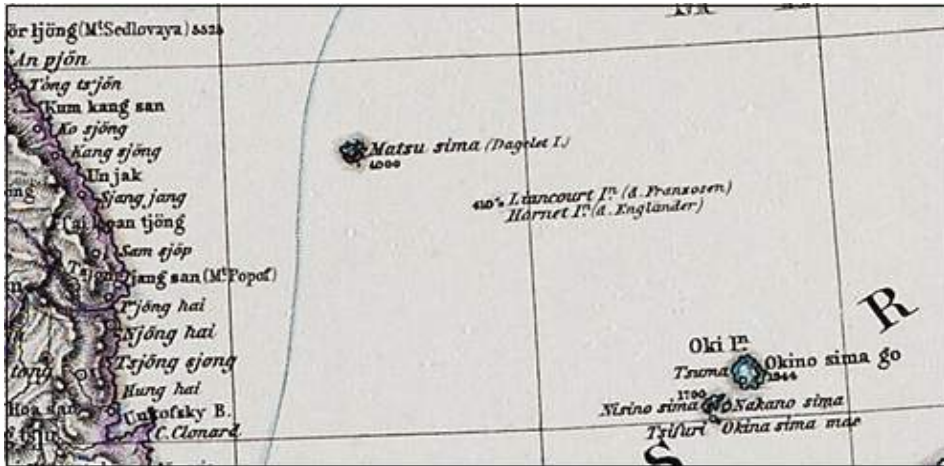
출처: James Wyld, 1827, 「Asia」, 한반도 부분도, England.

〈그림 5〉 독도의 등장과 Argonaut 섬의 존재에 대한 의심단계



출처: 해군 수로부, 1857, 조선동해안도, 한반도 동해상 부분도, 러시아.

〈그림 6〉 울릉도 · 독도 지도의 완성



출처: Augustus Herman Petermann, 1886, 『China, Korea und Japan』, 한반도 동해상 부분도, Germany.

여기서는 극동에 관한 Map Trade, 특히 울릉도 · 독도의 지리정보 교류에 기여한 탐험가 및 지도제작 관련자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19세기 동안에, 울릉도나 독도를 보았거나 이들 섬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지리정보를 다른 국가나 지도제작 관계자들에게 유통시킨 인물들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라페루즈(Jean Francois de Galaup, comte de La Perouse, 1741-1788 실종), 제임스 콜넷(James Colnett, 1753-1806), 윌리엄 브로튼(William Robert Broughton, 1762-1821), 클라프로트(Julius Klapproth, 1783-1835),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 1785-1829), 시볼트(Philipp Franz Jonkheer Balthasar van Siebold, 1796-1866), 푸치아친(Yevfimy Vasilyevich Putyatin, 1803-1883), 호끄모헬(Louis Francois Gaston Marie Auguste de Roquemaurel, 1804-1878), 제임스 와일드(James Wyld, 1812-1887), 가쓰 가이슈(勝海舟, 1823-1899), 크루젠스테른(Adam Johann von Krusenstern, 1770-1846) 등의 행적과 증언 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탐험가 라페루즈는 1787년 5월 29일,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한반도 동해상을 북상하면서 울릉도를 발견하고, 이 섬을 다즐레(Dagelet)라 명명하였다. 그 후, 각국에서 제작되는 세계지도에는 울릉도가 오랫동안 다즐레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었다.

제임스 콜넷은 영국 왕실의 해군 장교로서 쿡 선장의 두 번째 해외 탐험에 동승했던 이력이 있으며, 해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영국의 탐사선 아르고노트 호를 이끌고 대한해협을 통과한 콜넷 일행은 1791년 8월 26일, 울릉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항해 이후, 세계지도에는 아르고노트 라는 섬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그 배의 항해일지에는 “배의 방향타에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섬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짧은 기록만 있을 뿐, 이 섬의 규모나 모양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세계지도 제작 과정에서 영국 등 서구의 지도제작 전통과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컨대, 영국의 탐사선 아르고노트 호의 극동탐사 이후, 지도상에 잘 못 표현되었던 의문의 섬 아르고노트를 일본에서 그대로 모사함으로써 다케시마(울릉도)는 아르고노트 섬에 비정하고, 마쓰시마(독도)는 다즐레(울릉도)에 비정하는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9세기 일본의 지도제작 과정에서는 독도를 누락시키는 등 일대 혼란이 일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1905년까지 이어졌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영국의 윌리엄 브로튼 선장은 1794년부터 1798년까지 프로비던스(Providence) 호를 타고 북태평양과 동아시아 일대를 항해하였으며, 1796년에는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동쪽 해안의 해도를 제작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즉, 청진과 원산 앞바다를 거쳐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출항전에 가지고 온 지도에 표현되어 있던 두 섬, Fan ling tao와 Tchiang chan tao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1717년에 제작된 중국의 「황여전람도」로부터 1735년에 프랑스 왕실에서 제작된 「조선왕국도」에 표현되었던 울릉도(Fan ling tao)와 우산도(Tchiang chan tao)는 브로튼 선장의 항해 이후 세계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독일인 동양학자 클라프로트는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제작한 「삼국접양지도」를 47년이 지난 183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불어판으로 발간하였다. 클라프로트의 「Carte Trois Royaume」(삼국접양지도)는 『San kokf Tsou Ran To Sits』(삼국통람도설)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유럽 세계에 소개되었다.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일본을 대표하는 지리학자이자 천문학자로서 조선의 김정호(1804-1866)에 비견되는 인물이다. 안타깝게도,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독일인 의사 시볼트 사건에 연루되어 옥사하였다.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학문적 호기심이 많았던 인물로,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독일인 의사 시볼트가 다카하시 가게야스에게 러시아 탐험가 크루젠슈테른(1770-1846)의 『세계일주』 책을 주는 대신, 다카하시는 시볼트에게 「대일본연해여지전도」의 축소판을 선물한 것이 발각됨으로써 사단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의 천재적인 지리학자는 생을 마감했지만, 학자들 간의 학문적 호기심과 국경을 넘나드는 지리정보의 교류 장면을 확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독일인 의사이자 박물학자인 시볼트는 독일에서 1832년과 1840년에 각각 「일본변계약도」와 「일본전

도를 발간하였다. 시볼트의 지도에 울릉도·독도의 위치나 명칭에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과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를 유럽 세계에 전파한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페리(Matthew C. Perry, 1794-1858) 제독이 일본을 개항하러 갈 때, 페리 제독의 손에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시볼트의 지도와 일본 관련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독일인 시볼트는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를 유럽을 경유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 해군 제독 푸치아친은 1854년 4월, 팔라다(Pallada) 호를 이끌고 한반도 동해안과 일본열도 서해안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하고, 이 섬의 이름을 각각 올리부차(Olivoutza)와 메넬라이(Menelai)로 명명하였다. 푸치아친의 측량 이후, 러시아에서는 1857년에 「조선동해안도」가 제작되었는데, 1862년에 일본이 러시아의 「조선동해안도」를 모사하였으며, 러시아 측에서 독도를 표현한 방식 그대로 독도를 조선의 동해상에 표현한 것이 흥미롭다.

프랑스의 호끄로헬 대령은 태평양 탐사를 목적으로 1850년 2월 21일, 프랑스의 군함 카프리스외즈(Capricieuse) 호를 이끌고 프랑스를 출발하였다. 호끄모헬 대령은 라페루즈의 탐험 이후에 제작된 지리정보의 결함을 보완하고자 한반도의 동해상과 울릉도 근해 수역을 심도있게 탐사하였다. 1852년 7월 25일, 호끄모헬 대령은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로 북상하면서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던 아르고노트 섬 부근을 두 번이나 지나갔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호끄모헬 대령의 탐사 결과는 1854년에 제작된 해도에 반영되어 울릉도는 다즐레로, 독도는 리앙쿠르로 표현된 반면, 아르고노트 섬은 점선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제임스 와일드는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판매업자로서 19세기 Map Trade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아르고노트 섬이 표현된 지도의 제작 및 유통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19세기 중반, 일본은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대외 진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 무렵, 일본은 본격적으로 세계지도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해군성에서는 영국의 해도를 모사하였다. 예컨대, 1867년에 제작된 가쓰 가이슈의 「대일본연해약도」는 1863년에 영국의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된 「한국·일본 지도(Japan-Nipon, Kiusiu & Sikok and part of Korea)」를 거의 그대로 따라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지도에는 의문의 섬 아르고노트가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울릉도(다즐레)와 독도(리앙쿠르)는 명확하게 자리잡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영국의 지도를 모사하면서 아르고노트는 다케시마로, 다즐레(울릉도)는 마쓰시마로, 그리고 독도는 랑코도로 표기함으로써 독도를 부르던 기존의 명칭과는 전혀 다른 명칭이 통용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일본이 세계지도를 제작하면서 지리정보의 오류를 범했던 상황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해군 제독이었던 크루젠스테른은 1827년에 펴낸 『태평양 해도집(Atlas de L'Océan Pacifique)』을 통해 제삼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는 아르고노트와 같고, 마쓰시마는 다즐레와 같은 섬일 것.” 크루젠스테른은 일본에 수개월간 체류하면서 일본 근해를 측량하기도 하고, 그 시기에 일본의 지도제작 전문가들과 교류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크루젠스테른은 영국과 일본간의 Map Trade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삼자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지도 제작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아르고노트와 다즐레 등 2도 체제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등 2도 체제가 기계적으로 대응되도록 하는데 일부라도 일조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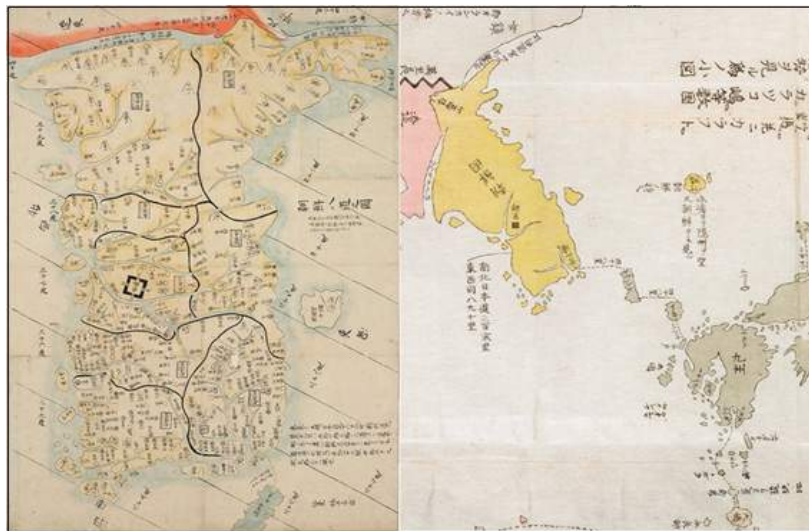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18-19세기 동안에 한반도 동해상을 사례로 전개되었던 Map Trade의 정황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국적의 탐험가, 지도제작자, 지도판매상 등의 행위자들이 새로운 지리 정보를 교류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세계지도상에 정확하게 자리잡는 과정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3. 19세기 일본의 지도제작에 반영된 독도 인식

세 번째 장에서는 19세기 일본의 지도제작 변천사를 검토함으로써 앞에서 다룬 Map Trade의 흔적과 각각의 지도에 반영된 울릉도·독도 인식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지도제작을 시작하였는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지도를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18세기 후반의 하야시 시헤이 지도로부터 출발하여 19세기 중반의 상황까지 분석하고자 한다.¹⁾

하야시 시헤이(林子平)는 1785년에 「조선팔도지도」와 「삼국점양지도」를 제작하였다(그림 7). 「조선팔도지도」를 보면, 울릉도가 실제보다 크고, 그 위치도 육지에 가깝게 표현되었다. 울릉도는 우산국이라는 명칭과 병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리정보는 조선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도는 그 이후에 일본에서 제작되는 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조선-일본의 Map Trade 사례



출처: (좌) 하야시 시헤이, 1785, 「조선팔도지도」; (우) 하야시 시헤이, 1785, 「삼국점양지도」.

1)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 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는 근대적 지도제작의 기법과 수준에서 일본 지도의 시초라 할 수 있는데, 이 지도는 일본열도를 주 대상으로 표현하였으며, 울릉도와 독도는 명확히 외국의 영토로 표현되었으므로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밝혀둔다.

같은 해에 제작된 「삼국접양지도」는 『삼국통람도설』이라는 책에 수록되었다. 삼국접양지도가 제작되기 이전에는 일본지도나 조선국지도 등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도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삼국접양지도」를 시작으로 주변국과 세계지도 제작으로 그 스케일이 확대되었다.

「삼국접양지도」에는 울릉도가 두 번 그려진 오류가 발견된다.²⁾ 즉, 조선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있던 울릉도(우산국)와 일본인들이 알고 있던 다케시마(울릉도)가 동일한 지도에 모두 표현된 사례로서 당시 하야시는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동일한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의 삼국접양지도는 앞에서 살펴본 「조선팔도지도」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하야시의 「삼국접양지도」가 지도학적인 완성도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32년에 독일인 동양학자인 클라프로트에 의해 프랑스 파리에서 불어판으로 발간됨으로써 Map Trade의 관점에서는 의미있는 지도라 사료된다.

일본의 천재적인 지리학자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1809년에 「일본변계약도」를 제작하였는데, 이 지도는 「삼국접양지도」보다 스케일이 약간 더 확대된 것으로, 지도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해상 경계를 나타내는 지도라 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일본의 경계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상은 조선해 명칭이 한반도 동쪽 연안에 가깝게 표시하는 선에서 지도제작의 목적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극동에 관한 지도이지만, 한반도의 동해상에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다케시마(울릉도)나 마쓰시마(독도)는 표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한만 연안에는 조선에서 인식하고 있던 울릉도와 우산도가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도는 울릉도와 부속 도서가 조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이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지도나 중국측 지리정보를 참조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게 해 볼 수 있다.

〈그림 8〉 조선-일본의 Map Trade 사례



출처: 다카하시 가게야스, 1809, 「일본변계약도」, 한반도 부분도.

2) Map Trade의 초기단계에서는 동일한 대상이 두 번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한편,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에 머물고 있던 독일인 의사 시볼트는 1832년에 독일에서 「일본변계약도」를 독일어 버전으로 발간하였는데, 이 지도는 1809년에 일본인 지리학자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제작한 「일본변계약도」를 거의 그대로 다시 그린 것이다.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와 극동에 관한 지리 정보가 23년 만에 유럽의 한복판인 독일에서 소개된 것은 Map Trade 관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변계약도(1809)」와 비교해 보면, 시볼트의 지도에는 일본열도 서쪽 연안에 Japansche Zee(일본해) 명칭을 표기함으로써 일본 중심으로 지도를 제작한 듯 한 인상이 강하게 든다. 또한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측 해상 영역 내에 표현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섬은 마쓰시마이고, 아래쪽에 있는 섬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다카하시 가게야스 지도에는 없던 일본식 명칭과 섬의 표현인데, 사실, 시볼트가 일본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또한 영국인이 발견했다는 아르코노트 섬이 일본에서 알고 있던 다케시마로 오인되기 시작했던 시점과도 차이가 있다. 사실상, 일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05년이므로 시볼트의 울릉도·독도 명칭 표기는 잘못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본의 지도를 독일에서 다시 발간했다는 점과 이 지도의 원작자인 다카하시 가게야스의 지도에 없던 동해상의 섬들에 관한 지리정보를 추가했다는 점은 지도제작의 발달사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³⁾

〈그림 9〉 일본-독일의 Map Trade 사례



출처: Philipp Franz von Siebold, 1832, 「일본변계약도」, 한반도 부분도.

3) 1840년에 발간된 시볼트의 「일본전도」에는 아르코노트가 다케시마로, 다즐레는 마쓰시마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에 유행하던 최신의 세계지도를 참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 년 후,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신정만국전도」를 제작하였는데, 이 지도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세계지도로서 서반구와 동반구가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한반도와 동해상 부분만 보면, 표면적으로는 1809년에 제작된 「일본변계약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큰 변화가 목격된다. 즉, 1809년 지도의 동한만 연안에 표현되어 있던 울릉도와 우산도 명칭은 1810년 지도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1810년 지도의 한반도 부분에는 일 년 전의 지도에 비해 지리정보가 훨씬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명의 밀도를 고려하여 동한만 연안에 섬들의 형상만 남겨두고, 지명은 생략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1810년의 지도는 그 이전의 지도에 비해 울릉도·독도에 대한 인식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

〈그림 10〉 세계지도에 반영된 일본의 영역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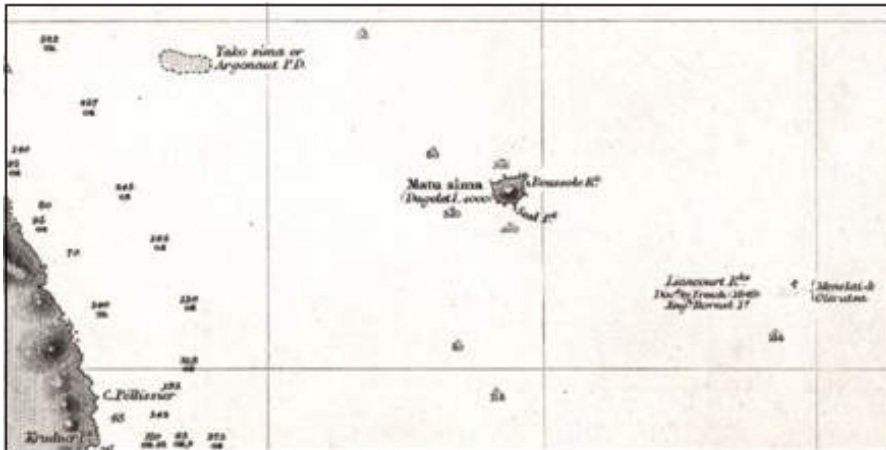


출처: 다카하시 가게야스, 1810, 「신정만국전도」, 한반도 부분도.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9세기 중엽, 일본의 해군장교였던 가쓰 가이슈(勝海舟)는 「대일본연해약도(1867)」를 제작하였는데, 이 지도는 4년 전에 영국의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된 해도를 거의 그대로 모사한 것이다. 영국의 지도에 의문의 섬 아르그노트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울릉도는 다즐레와 마쓰시마가 병기되어 있고, 독도는 리앙쿠르 암 등 당시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명명했던 이름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그림 11).

4) 다카하시 가게야스의 지도에서 한반도와 만주일대에 관한 정보는 중국측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근거로는 장백산과 토문강이라는 중국식 용어 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우산도 등 섬의 위치가 지나칠 정도로 육지에 가깝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중국측 지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한편, 1810년 지도의 경우,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해상에는 '조선해' 명칭만 표기된 반면, 일본열도 동남 연안에는 '대일본해'라는 명칭을 새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본의 대외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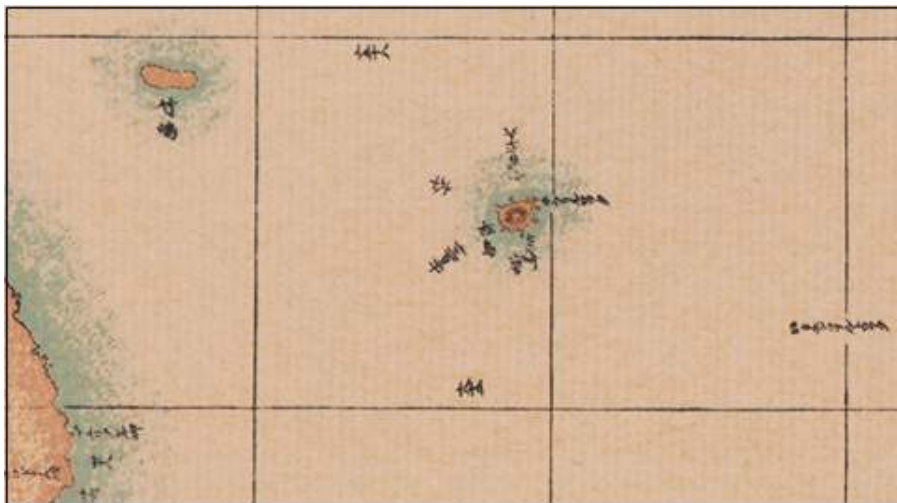
〈그림 11〉 동해상의 섬들이 표현된 영국의 해도



출처: British Navy hydrographic chart, 1863, Japan-Nipon & Sikok and part of Korea, 한반도 동해상 부분도.

영국의 지도를 모사한 일본의 「대일본연해약도」를 보면, 아르고노트 섬은 과거에 일본에서 울릉도를 지칭하던 다케시마(竹島)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고, 울릉도에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독도를 지칭하던 마쓰시마(松島)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홍미롭게도, 독도는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명명한 프랑스식 이름 리앙쿠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랑코도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12).

〈그림 12〉 영국-일본의 Map Trade 사례



출처: 가쓰 가이슈(勝海舟), 1867, 대일본연해약도, 한반도 동해상 부분도.

19세기 중반에 일본에서 영국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지도제작의 기술적인 오류 뿐만 아니라 독도 인식의 퇴보라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예컨대, 그 당시 서양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에는 의문의 섬 아르고노트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독도는 지도상에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아르고노트의 실체에 관해서는 개념조차 없었으며,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

고 있던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등 2도 체제를 서구에서 제작된 지도의 2도(아르고노트와 다즐레) 프레임에 기계적으로 매치시켰던 것이다. 결국,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다케시마(울릉도) 명칭은 의문의 섬 아르고노트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고, 마쓰시마(독도) 명칭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1867년에 영국 지도를 모사하는 과정에서는 정작 진짜 독도가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지칭했던 그들만의 명칭(松島)은 다른 섬(울릉도)에 붙어 버린 상태이고, 독도 명칭은 프랑스식 발음을 일본식으로 차용한 랑코도가 되었던 것이다.

4. 맺음말

19세기는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가 완성되던 시기로서, 극동에 관한 Map Trade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해상공간은 다양한 국적의 지리학자, 탐험가, 지도제작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도제작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19세기 일본의 지도제작에서 또한 서구 세계와의 지리정보 교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Map Trade의 관점에서 일본의 지도제작과 독도인식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방법이라 사료된다.

18세기 후반,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의 해양 강국들은 중국을 통해 입수한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인 극동 탐사에 나섰다. 기존 지도에 미처 수록되지 않았던 지리정보는 탐험을 통해 지도에 새로 추가되었고, 지도상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들은 지도에서 삭제하는 등 19세기를 지나는 동안 극동에 관한 지리정보는 점점 더 완결도가 높아졌다.

일본은 세계지도 제작 과정에서 영국 등 서구의 지도제작 전통과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누락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예컨대, 영국의 탐사선 아르고노트 호의 극동 탐사 이후, 지도상에 잘 못 표현되었던 의문의 섬 아르고노트를 일본에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과정에서 다케시마(울릉도)를 아르고노트 섬에 비정하고, 마쓰시마(독도)를 다즐레(울릉도)에 비정하는 실수를 범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19세기 동안에 독도를 지도에서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1905년까지 지속되었다. 오늘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을 내세우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주의를 청산하려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침략적 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남영우 · 김부성, 2009, “독일 지도학자 Siebold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지,”9(1), 1-12.
- 汪前進 · 劉若芳, 2007, 清廷三大實測全圖集, 外門出版社.
- 이명희, 2011, “청 강희 시기(1662-1722) 전국지도 제작에 대한 고찰,”문화역사지리, 23(3), 104-118.
- 이상균, 2015, 세계지도 제작에 반영된 19세기 일본의 울릉도 · 독도인식, 문화역사지리, 27(1), 15-32.
- 이상균, 2016,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Bookstar.
- 정영미, 2015,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 한국학술정보.
- 정인철, 2014, “프랑스 왕실 과학원이 18세기 유럽의 중국지도제작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49(4), 585-600.
- Li, Jin-Mieung, 2010, Dokdo : a Korean island rediscovered,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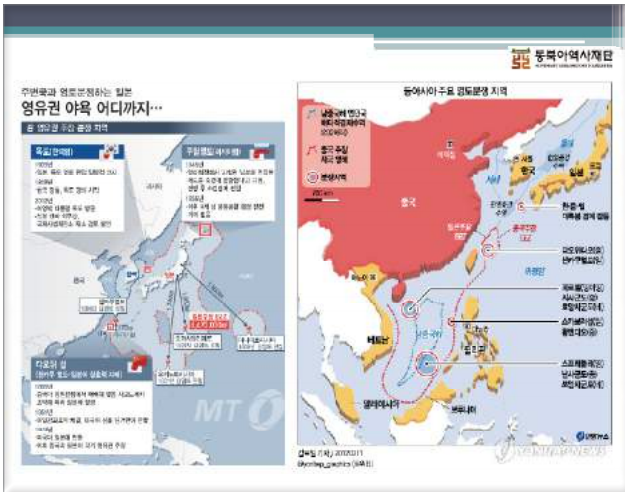
동북아 영토갈등과 일본

이 명 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강의 내용 목차

- (1)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제도(조어도) 문제
- (2)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영토문제
- (3) 동아시아를 둘러싼 남사군도 문제
- (4)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



글1. 2010년 9월 7일 중국어선 일본 순시선에 충돌

- (1) 영유권을 둘러싼 움직임
 - 간 정권은 센카쿠제도에 영유권문제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국내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발표.
- (2) 중일 간에는 센카쿠영유권문제를 '보류'하는 것에 암묵의 합의가 있었음
 - 간 정권은 "보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음
- (3) 일본은 일중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않고 국내법으로 처리
 - 분쟁을 피하기 위해 중일 쌍방은 센카쿠제도 주변을 포함한 어업현경을 체결: 불의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중국배가 위반조업을 하면 일본 측은 조업 중지를 요구하고, 그 지역으로부터 중국 배를 퇴거시키며, 위반 처리는 중국측에 동지하여, 중국측에 처리를 요구한다"
 - 센카쿠제도 영유를 주장하는 중국이 "국내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길을 열어 주었음

글2. 2010년 9월 센카쿠제도 주변 충돌 사건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의 주장

- 센카쿠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기본자세가 등소평의 유혹을 지키고, 센카쿠제도에 대해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었다면 민주당정권은 최초로 치명적인 착각을 한 것이 된다. '국내법으로 조용하게 처리한다.'고 한 순간 센카쿠에 관한 일중 양국의 암묵의 양해는 날아갔기 때문이다.
-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전후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2010년 9월 7일 일본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헌법9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일본을 지켜온 시대가 끝났다. 외교의 끝에 무력충돌이 가능한 시대가 시작되었다.

글3. 2012년 9월 11일 센카쿠제도 국유화

- (1) 국유화 압력 요인
 - 이시하라 동경도지사의 센카쿠제도 구매 의사 발표 후, 동경 도에 기부금이 10억 엔에 임박하자 '절박함'이 압박을 가함
 - "이시하라가 사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메시지가 북경 으로부터 전달됨
- (2) 국유화에 대한 일본 내부의 경고
 - "일중관계는 중대한 위험에 빠진다"는 단바(丹羽) 주중대사의 경고
 - 야마구치 쯔요시(山口) 일본 외무부대신의 경고
- (3) 9월 9일 APEC수뇌회의에서 후진타오의 요구를 무시
 - 중국의 국가주석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10일 국유화를 발표하고, 11일 각의 결정
 - 일본정부의 낙관적인 관측과 대중외교의 미숙함이 위기를 자초

중·일 센카쿠제도 국유화 갈등



글4. 우라노(浦野起央) 교수인터뷰

- 센카쿠제도문제가 중일간 외교 분쟁으로 확대된 것은 민주당의 미숙한 대응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
- 센카쿠제도를 국유화 한 것은 대단한 실책이라고 언급
- 2010년 9월의 중국 어선의 일본경비정 충돌사건은 중국정부가 민주당의 대응을 시험한 것이라고 언급, 그 근거로서 공안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인 제자가 자신에게 귀뜸해 주었다고 하였음
- 일본 민주당 정부를 중국공산당의 '2중대'로 인식하는 중국정부가 민주당의 대응을 시험했다는 것임

글5. 전후 질서하의 일본의 입장

-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센카쿠는 오키나와 본도와 함께 미국의 시정하에 놓여지고, 72년에 일본에게 시정권이 반환되었다(시정권의 반환)
- (2) 오키나와 시정권 반환 후 일본의 실효지배
 - 영해 내에서 불법조업을 행한 외국어선의 단속
 - 센카쿠 소유자의 고정자산세의 납부
 - 정부와 오키나와 현에 의한 조사 실시
- (3) 70년대까지 중국, 대만의 이의 신청이 없었음
 - 중국, 대만이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센카쿠가 미국의 시정하에 놓여진 사실에 대해 70년대에 이르기 까지 아무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명백함

글6. 전후 질서하의 중국의 입장

- (1) 미국이 불법 점거, 멋대로 일본에 양도
 -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중국영토인 조어도도를 불법으로 점령, 일본에게 멋대로 양도
- (2) 포츠담선언 수락한 일본은 중국에게 돌려줘야 함
 - 일본은 모든 중국영토를 방기하도록 요구한 포츠담선언을 수락
 - 이 영토에는 대만에 소속한 도서인 조어도도를 포함함
- (3) 미국의 불법
 -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조어도 등의 시정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불법
 - 중국은 조약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며 무효임

글7. 센카쿠의 역사를 둘러싼 양국의 엇갈림

- (1) 제1의 논점은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영유를 주장하였는가?
 - '청국 관여의 실태'에 관한 것으로 역사상 문서의 검토 결과로서 청국의 지배가 센카쿠제도에 미치고 있었는가 여부이다.
 - 센카쿠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지 아닌지"는 역사적으로 센카쿠제도가 대만에 속해있었는지 오키나와에 속해 있었는지 이다.
 - 중국 측은 센카쿠제도를 자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본 측은 중국 측이 말하는 인식은 어느 것도 영유권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 문헌은 압도적으로 중국에 속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진1. 오키나와 슈리성(류큐왕국)



글8. 센카쿠의 역사를 둘러싼 양국의 엇갈림

- (2) 제2의 논점은 '선점의 법리'를 둘러싼 국제법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 일본 측의 논거는 설혹 중국 측에게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법상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사실이 필요하고, 그 것이 없으면 '무주지'로서 제3국이 영유해도 상관없다는 것.
 - 이러한 선점의 법리는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대에 편리한 법리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 19세기 이전에는 막연하긴 하지만 중국의 관할권 내에 들어와 있던 센카쿠제도에 대해 "이 행위는 '무주지'를 영유하는 '선점'에 해당한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글9. 센카쿠의 역사를 둘러싼 양국의 엇갈림

- (3) 1885년부터 1895년에 걸쳐 일본정부가 행했던 '조사의 성격'에 대한 비판
 - 1885년 고가 다츠시로(古賀辰四郎)가 센카쿠제도에서의 활동을 허락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메이지 정부의 내무성은 영유해도 좋을지에 대한 조사를 의무성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이 섬들은 중국 국경과 가깝고 청국에서는 섬 이름도 지어놓고 있다. 청국의 신문 등에도 일본이 대만 가까이 청국 섬을 점령하려 한다는 풍설을 흘리며 일본을 의심하고 있는 곳도 있다." 라고 말하고, 이 섬들에 대한 영유는 '훗날을 기약하며' 지금은 허락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결국 영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비판은 주로 井上清에 의해 제기되었다.)
 -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 1894년 12월 27일 내무성으로부터 "그 당시와 오늘은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영유를 허락해도 좋은지 다시 재조사가 의무성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외무성도 1895년 1월 11일 "본성에 있어서 별다른 이의 없음"이라고 회답하여, 1월 14일 내무성 청의 안대로 표항을 세우는 것이 결정되었다.

글10. 센카쿠의 역사를 둘러싼 양국의 엇갈림

- (4) 센카쿠제도도 제2차대전 후 오키나와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는가 아니면 대만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는가?
 - 일본: "센카쿠제도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3조에 의해 남서제도의 일부로서 미국의 시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 1972년 5월 15일에 센카쿠제도를 포함한 오키나와의 시정권이 반환될 때까지 일본이 센카쿠제도에 대해 직접 지배력 미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센카쿠제도가 일본의 영토였으며, 어떤 제3국도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동제도의 법적 지위는 류큐영도 미국민정부와 류큐정부에 의한 유효한 지배를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 중국: 일관되게 센카쿠제도도 대만에 속한다는 입장.
 - 미국: "오키나와를 반환할 때 미국은 시정권을 일본측에 반환했지만 미국은 시정권과 주권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권문제에 대한 엇갈림이 생길 경우 당사국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라고 해석

글11. '판단보류' 에 대한 양국의 엇갈림

- 2010년 9월 어선 충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 나오토 정권은 센카쿠제도에 영유권문제는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판단보류'(棚上げ) 합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국내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그러나 중국은 1972년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당해 도서에 대한 대화를 보류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중·일 간에는 72년 국교정상화, 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시, 센카쿠영유권문제를 '판단보류'하는 것에 암묵의 합의가 있었다. 먼저 1972년의 중·일국교 회복시에는 주은래가 "센카쿠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글12. 중일 갈등의 경제적 요인

- 중·일간 센카쿠 문제는 1968년 진행된 '아시아근해지역 광물 자원 공동탐사조직위원회(CCOP)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갈등이 촉발.
- 1968년에 UN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도서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분쟁의 시작과 격화의 배경에는 석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센카쿠제도 분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변 해저의 막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을 둘러싼 '해양자원 확보'경쟁인 것.
- 일본에 따르면 이것이 중국이 센카쿠제도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주된 이유임.
- 가스 오일 등 자원의 존재가 증명되면 영유권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호 이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타협의 유일한 가능성이랄 수 있음.

글13. 중일 갈등의 정치적 요인

(1) 리더십 요인

- 2010년 9월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중-일간 외교문제가 증폭하게 된 경우에는 당시 국토교통성 장관이었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의 친미반중적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작용한 것
-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일간 인적 네트워크는 끊겼고 구멍이 났다. 중국과의 관계는 늘 두 가지 차원의 발전을 요구한다. 하나는 공식적인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 차원이다. 항상 공식적 비공식적 측면 양쪽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최근 10~15년간은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 중-일간에 아무런 좋은 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비즈니스 차원의 관계발전도 중단됐다.
- 중일 관계에서 이러한 뒷 무대의 역할을 담당한 마지막 인물은 오부치 게이조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낸 노나카 히로무(野中広務), 장쩌민의 오른팔이던 쑹칭훙(曾慶紅)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 아무도 없다.
- 그 결과, 2010년 센카쿠제도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국과 일본 어느 쪽에서도 양국의 감정을 염두에 두고 관계개선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글14. 중일 갈등의 정치적 요인

(2-1) 일본의 국내정치적 요인

- 2009년 8월 30일에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다수석 확보로 집권함에 따라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추진하려고 했다.
- 1997~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해 동아시아라는 용어가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배경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었고, 미국이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 2007년 무렵부터 중국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대국주의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지역 국가들의 위협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이러한 흐름에 반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미국을 배제하고자 하여 미일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이에 위기의식을 가졌던 마에하라 등 친미세력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센카쿠제도 사건을 '중국위협론'을 조장하기 위해 이용한 측면이 있었던 것

글15. 중일 갈등의 정치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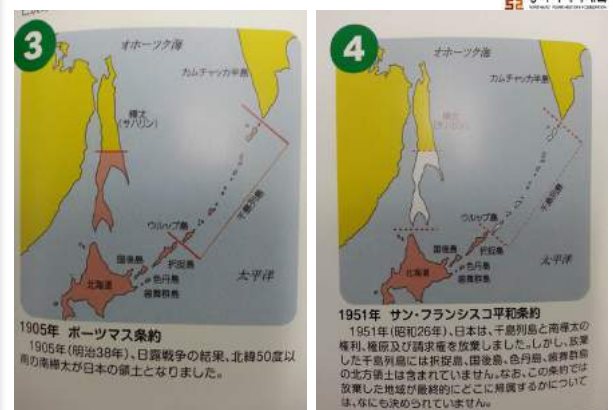
(2-2) 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 센카쿠제도 인근에서 일어난 중국어선 충돌사건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사건 자체는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는 곧바로 권력투쟁에 이용됐다. 즉 후진타오를 공격하는 데 이용된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것이 장쩌민 그룹과 군부 강경파였다.
- 이러한 전개는 중국이 국가로서 가진 통제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당국가의 결정중추에 덩샤오핑이나 장쩌민 같은 압도적인 실력자가 없어진 탓이다.
- 양국 정부는 타협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일체의 타협이 정치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내의 상황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 중일관계 정상화의 진정한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과 일본의 양자관계가 붕괴의 위기에 봉착했다.

글16. 중일 갈등의 정치적 요인

(3) 국제정치적 요인

- 지난 10년간 중-일 양국은 커다란 파워시프트(power shift) 속에 있었는데, 센카쿠제도 문제도 기본적으로 파워시프트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다.
- 2010년에 중국은 일본을 능가하여 세계 2위, 아시아 제1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지른 것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아시아의 패권국의 지위를 일본에게 넘겨준 이래 한 세기여 만에 이루어진 성취로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중국인에게 내재된 소위 100년의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중화 부흥'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 중국은 이번 분쟁에서 일본정부가 선장의 구급 등 전혀 없이 강경하게 나온 배경에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일본이 최근 일련의 미-중간 갈등을 이용하여 중일간 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고자 한 것이고 미국 역시 이 분쟁을 동아시아로의 미국의 복귀를 실현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RESEARCH CENTER

北方領土の元居住者

ちとちと暮らしていた人たちはどうしたの?

北方領土には、終戦時3,124世帯、17,291人の日本人が住んでいました。(平成20年3月千島群島は島住民の高齢化に伴い、ここに計れる元島民の人数は、昭和20年9月15日終戦以来はじめて北方地域に居住していた者の数であり、終戦まで日本領に居住していた島民及び戦時後移住してきた者の数は含まれていません。)

島民の前半数は、ソ連軍の新しい監視の目をくくって放棄の島々を脱出しました。それ以外の島民はそのまま残りましたが、昭和22年から23年にかけて激しい飢饉の理由で引き揚げを強要されました。現在では、日本の領土でありながら日本人は一人も住んでいません。

終戦時の北方領土居住者数

国後島	7,364人
択捉島	3,608人
色丹島	1,038人
島根島群	5,281人
合計	17,281人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RESEARCH CENTER

미국 구축함,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근해 진입

남중국해 연안국 해역권 관할구역(200해리)

중국 주권 영유권

미국 구축함

중국 인공섬 (중수리도, 황이안도, 크로스 아일랜드)

미국 라센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RESEARCH CENTER

南シナ海における中国の戦略三角形

海南島・三亚

西沙諸島 (パラセル諸島)

9段線

710km

650km

900km

700km

ウディー島

スカロロー島

フィリピン

ファイアリー・クロス島

南沙諸島 (스pratly-諸島)

ブルネ

말레이시아

nippon.com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RESEARCH CENTER

Dredging pump

Sediment opening

Sediment discharge

Sediment opening

Harbour area under construction

Extent structure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RESEARCH CENTER

남중국해 미·중 갈등 주요 일지 (일련 중국명)

4월9일	중, 분쟁해역에 인공섬 추가 건설
15일	중, 남중국해 분쟁도서인 파라셀 군도 부근에도 두개의 섬 확장 공사
5월16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서 충돌
22일	미, 인공섬 인근 해상에서 군사적전 카드로 경고 → 중, 강제반발
6월30일	중, 일부 인공섬 개발 작업 완료
8월5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서 재차 충돌
9월25일	미·중 정상회담서 남중국해 문제 입장서 재확인
10월14일	미, 인공섬 주변에 항공 진입 경고 → 중, 군사시찰을 강화로 맞대응
27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인공섬 12해리 내 진입 → 중, 군함으로 미 구축함 추적하여 맞대응
11월5일	예수탄 카터 미 국방장관, 핵 중공포함 하고 남중국해 순시
11월8, 9일	미, B-52 전략폭격기 2대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상공 비행

동북아역사재단
DONGBUK ASIAN RESEARCH CENTER

글17. 미국의 항행 자유 원칙 유지를 위한 작전

- 미 해군 구축함이 수빅초 연안 12해리 내 수역을 항행했다.
- 구축함에 초계기도 동행하여 상공에서의 정찰 감시활동도 실시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 FONOP의 목적은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원칙 침해에 대한 경고를 발하는 시위행위이다. 중국에 의한 남사제도 인공도의 영유권 그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군사적 위협이 목적이 아니다.
 - 중국은 "미국 해군의 이번 활동은 중국 영해 내에서의 '군사적 위협'이며, 국제해양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다"라고 비난했다. 미 해군에 의한 FONOP을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개입'으로 받아들인다.
 - 미국 일본의 주장: "군함이 연해 12해리 내 수역을 '그냥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국가의 영유권 내든 아니든 국제해양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
- 미국·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에 중국이 이를 역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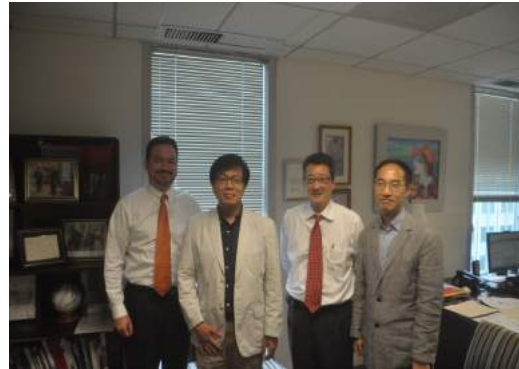
나가시마 의원과 인터뷰



글18. 나가시마 의원과 인터뷰 내용

- 아미티지 전 미국무부 부장관이 "독도는 한국, 센카쿠제도 및 북방영토는 일본이 영유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였다고 함
- 아미티지의 독도관련 발언이 세계가 바라보는 독도에 대한 인식으로 사료되며, 자신도 그 견해에 동의한다고 언급

마이클 그린(CSIS)과 인터뷰



마이클 그린과 인터뷰 내용

- 일본 보수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가개념이 희박
- 영토문제에 취약하다고 비판함
- 보수당의 영토문제 강경화는 일본의 우경화가 배경
- 일본의 침체에 따른 열등감의 표출
- 한일 양국의 주입식 교육이 영토문제를 약화시킴
- 센카쿠 제도 수호를 위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

에드가드 케이건(Edgard D. Kagan) 인터뷰



에드가드 케이건 인터뷰 내용

- 영토분쟁에 미국은 원칙적으로 중립
- 센카쿠 제도 에 대한 입장
- 독도에 대한 입장
- ➔ 당사국간 해결을 원칙으로 함

사진 1. 모리모토 전방위성장관과 인터뷰



글19. 모리모토 사토시 인터뷰 내용

- 최근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진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에 대한 역사반성 언급을 지적했음.
- 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그 기원은 일본 측에 있음을 설명하였음
 -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 여론을 악화시킨 것은 먼저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교과서 감정 결과 나타난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들이 더욱 악화시켰음을 상기 시켰음
- 다소 의외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표정으로 많은 부분을 수긍하는 모습이었음.

글20. 일본 오피니언 리더들의 독도 인식

- “누가 보더라도 동아시아에 일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우호국은 한국이다. 일본이 다케시마를 정말로 탈환하려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무력밖에 방법이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지할 일본인은 거의없다 해도 좋을 것이다. ICJ는 해결안이지만 한국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주장이지만 한국에 대해 평화와 우호를 위해 다케시마의 주권을 포기하고 경제 이권을 확보하는 협정 안을 맺으면 어떨까?”
(호사카 마사야스 保坂正康)



감사합니다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독도와 한일관계 :
전후를 중심으로**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독도와 한일관계 : 전후를 중심으로¹⁾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서론

전후 한국의 독도정책은 일관되게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유영토임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²⁾ 그러나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일본입장에서 보면 지난 반세기 가까이 상호이해관계증진을 목표로 했던 한일관계를 회상했을 때 ‘미해결의 해결’³⁾이란 원칙이 깨지고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지난 역대 정부들을 보았을 때, 이승만에서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 될 때도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들 중 어느 누구도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2008년 7월 말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 언론에서는 다음 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예상했고 시기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이후 일본 언론은 대통령독도방문을 크게 세 가지관점에서 보았다. 첫째, 임기 6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권위가 추락한 정부가 독도방문을 통해 레임덕을 극복해 보려는 국내 정치이용목적에 불과하다는 폄하논리와 둘째, 그간 한국 내에서 친일정부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보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며, 그리고 셋째, 같은 해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영향력행사를 노린 행동이다 는 것이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압적인 외교정책역시 쓰러져가는 일본민주당을 재건해보려는 노다(野田佳彦)정부의 마지막 정치적 수사였다 하겠다.

반면 전후 일본이 독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도 아니다. 일본의회는 독도관련 최초 발언은 제10회 통상국회(1950.12.10~1951.6.5)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1951년 2월 6일 시마네현(島根県)출신 의원인 야마모토(山本利寿)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인 평화선(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은 당시 전쟁 중이어서 정부차원의 대책은 미미했지만 일본의회

1) 이 글은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2013년 5월호(제95집)를 加筆했음을 밝혀둔다.

2)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외무성의 對韓 口上書발표이래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3)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회담이 난관에 봉착하자 양국이 독도에 대해 ‘미해결상태에서 해결’로 간주하고 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하기로 한 한일고위급대화를 일컫는 말이다.

에서는 독도가 자주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본 회담이 시작되면서 일본의회에서 독도관련 질의응답의 빈도가 높아졌다.⁴⁾ 이후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일본에 대응하기위해 일본의 영해침입항의(1953.9.26)를 시작으로, 대한산악회 독도학술조사(1953.10.18), 영토 표식대 설치 및 암석에 韓國領조각(1954.5.13), 독도무인등대 첫 점등(1954.8.10), 독도등대설치 일본에 통고(1954.9.15), 독도우표발행(1954.9.15),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도 국제사법재판소재소(ICJ) 회부제의 일축(1954.10.28), 신 무인등대설치(1955.7.8)일본에 통고(1955.8.8), 일본의 두 번째 독도ICJ회부제안 일축(1962.3), 1966년 일본외교청서 독도기술 항의(1966.8), 독도어민숙소건립(1968.5), 1953~2011년 사이 일본의 한국영해침범관련 60회이상항의, 1971~2012년 사이 일본의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기술관련 38회 항의를 했다.

그간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이 일본의 도전에 대해 부단히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학계나 여론은 역대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이수형에 의하면, “한국의 역대정부의 독도정책은 근시안적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자기 주관적 해석과 만족에 사로잡혀 일본의 집요한 분쟁전략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이에 대처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한다.⁵⁾ 그리고 다수의 언론역시 그간 한국의 독도정책에 불만이다.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한국이 독도소유권자인 주인으로써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자신하고 관리해왔기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정책이 공격적이라면 한국은 방어적이었다.⁶⁾

이승만에서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독도정책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와 경고를 통한 조용한 영토주권수호였다.⁷⁾ 하지만 일본의회 독도관련 속기록에 나타난 한국의 역대정부의 독도정책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⁸⁾

2. 이승만과 독도

이승만은 개인적으로도 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도 對日정책이 완고했다. 그의 對日관은 청년 시절 항일운동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고초와 이후 한국이 일제식민지로 있는 동안 해외망명생활과 독립운동 경험에서 반일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를 대변하는 대일정책으로는 1952년 1월

4) 이하는 한국의 각 행정부에 대해 일본의회(중참양원)에서의 다케시마(독도)발언 횟수이다.

이승만 정부(1948.7~1960.4), 1,427번, 윤보선(장면내각) 정부(1960.8~1962.3), 28번, 박정희 정부(1963.11~1979.10), 3,393번, 최규하 정부(1979.12~1980.8), 121번, 전두환 정부(1980.9~1988.2), 483번, 노태우 정부(1988.2~1993.2), 245번, 김영삼 정부(1993.2~1998.2), 604번, 김대중 정부(1998.2~2003.2), 221번, 노무현 정부(2003.2~2008.2), 713번, 등장한다. 상기 독도발언 횟수는 일본의회질의회와 답변사이에 등장하는 독도명칭빈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5) 이수형(2010.9) 『국가정책』국가안보전략연구소, p. 133.

6) 한국의 역대정부의 독도정책 비판에 대해 모두 부정하지는 않지만 독도영토주권행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영토정책은 사뭇 다를 수도 있다.

7) 獨島關係資料集(1-往復外交文書(1952~76)).

8) 색인 4번 참조, 예를 들면, 이승만정부(1948.7~1960.4), 1,427번, 박정희정부(1963.11~1979.10), 3,393번, 노무현정부(2003.2~2008.2) 713번 등장한다.

18일 ‘인접해양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일명 평화선)’을 들 수 있다. 평화선 선포의 배경을 보면 ① 한일 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였고 ②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하였으며 ③ 세계 각국의 영해확장 및 주권적 專管화 추세가 일고 있음에 대처하였고 ④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경계선을 선포하자 가장 강력하게 반대반응을 보인 나라가 일본이었으며, 그 밖의 미국·영국·자유중국(현 타이완) 등의 우방국들도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한일 양국의 평화유지에 목적이 있다”⁹⁾고 명분을 밝힘으로써 이때부터 ‘평화선’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평화선에 대해 일본정부는 크게 세 가지를 들어 비판한다. 첫째, “일본영토로 인정된 다케시마(독도)를 ‘이승만라인’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침해이다. 둘째, 일본어선을 포함한 기타 외국어선의 출어를 절대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언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셋째, 이 선언문을 보면 ‘이 경계선은 장래 규명될 새로운 발견, 연구 또는 신 정세에 맞추어 수정 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한일어업회담을 앞둔 일종의 흥정이 아닌 가”하고 지적하고 있다.¹⁰⁾ 평화선이 선포되고 당장 일본어선이 나포된 것은 아니다. 이유는 한국에서의 국내법적용절차와 더 나아가서는 일본 어선들의 한국해역에서의 어로활동 등에 대한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어선들은 여전히 평화선 내에서 어업을 했고 이후 1952년 10월 13일 과 같은 해 12월 30일 평화선 선언 1년이 다 되어서 일본어선 「七福丸, 나나후쿠마루」와 「日進丸, 닛신마루」가 한국해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그리고 1년 뒤인 1953년에는 일본어선 48척이 평화선침범관련으로 나포된다. 1년 사이에 일본어선 나포가 늘어나자 일본 수산업계 대표 일행이 이승만대통령 특별면담을 통해 평화선을 언제쯤 철폐할 것인가를 묻자 이승만은 “그야 당신들이 우리를 넘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없앨 수 있지 않소”¹¹⁾라고 평화선철폐여부는 일본 측 태도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당시 이승만의 평화선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하나의 어업보호 영역을 넘어서 일종의 ‘국토방위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952년 10월 4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 12호’에서 알 수 있다. 이승만은 동년 9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평화선을 침범한 외국선박에 대해서 나포는 물론 전쟁에 소요되는 군수물자를 싣고 온 일본선박까지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근거로 동년 10월 4일에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 12호에 의한 포획심판령과 대통령 제 707호에 의한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가 개설되었다.¹²⁾

이승만 정부가 평화선을 ‘국토방위선’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화선 선포 얼마 후 맥아더의 뒤를 이은 UN연합사령관 클라크장군(General Clark)이 공산군의 잠입을 막고 전시 밀수출품의 해상침투봉쇄 목적으로 「해상방위수역」(일명 클라크라인)을 평화선과 유사하게 수역설정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 의해 평화선이 선포되자 일본의회에서는 평화선 자체문제보다는 평화선 안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한 발언수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맥아더라인이나 평화선 그리고 심지어는 클라크라인도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로 소멸단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³⁾

9) 다카사키 소우지著, 김영진역, 「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1998년 8월), p. 34.

10) 요미우리신문(1952.1.25) “한국해양주권선언 어업교섭에 先手 치다”중에서.

11) 지철근, 「수산 부국의 야망」(서울 : 한국수산신보사, 1992), p. 128.

12) 전게서, 179.

13) 전게서, 176.

이승만정부에의해 발표된 평화선(日名 이승만 라인)



그 실 예로, 1952년 1월 30일 일본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사사키(佐々木盛)는 한국의 평화선에 대해 “...생략, 지리적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시마네현(島根県)의 죽도(독도)부터, 서쪽은 황해(黄海)의 중앙, 남쪽으로는 맥아더 라인보다 한층 일본에 가까운 수역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경계선을 만들어...생략”¹⁴⁾ 그리고 야마모토 의원은 “...생략, 특히 방금 전에 언급된 일본해(동해)의 죽도(독도) 영유권 문제 와도 관련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제가 국회의 양(兩) 조약의 특별위원회에서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니시무라(西村) 조약국장으로부터 죽도(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생략.”¹⁵⁾ 또한 참의원에서 죽도(독도)관련 발언역시 중의원에서처럼 유사내용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평화선 선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2년 4월 25일 참의원 수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평화선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의 영토주권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질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지다(千田正)의원의 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생략, 최근 일어나고 있는 특히 중요한 문제로는 일본과 한국 간에 위치한 죽도(독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수산청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일본해(동해)와 조선 사이의 수역 한가운데 있는 죽도(독도) 문제가 일본과 한국 간의 중요한 경계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생략.”¹⁶⁾ 이처럼 이승만정부에 의한 평화선선언은 일본의회에서는 한국의 독도정책으로 연계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당시 이승만정부에 의한 독도관련 성명이나 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회의 독도대응이 민감하게 작용했던 이유는 일본역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로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952년 05월 2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의 야마모토의원의 외무성에 대한 질의를 보면, “...생략, 죽도(독도)는 에도시대 초기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더욱이 일본 영토로서 선언된 것은 1905년(明治 38년) 2월의 일이므로 일한병합(1910년)보다 이전의 일로, 바로 이점 때문에 죽도(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은 조금도 의

14)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동북아역사재단. p.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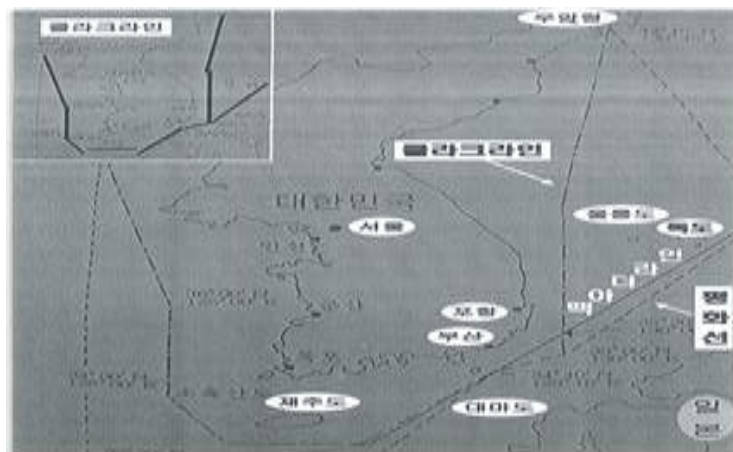
15) 전게서. p. 45.

16) 전게서. p. 46.

심할 여지가 없습니다...생략”¹⁷⁾ 이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島根県) 고시를 통한 영토편입을 염두 해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시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개념을 넘어서 방위수역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52년 12월 22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 단(團伊能)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카자키(岡崎勝男)외무대신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데, 단 의원, “저도 분명히 아는 것은 아님니다만 이 방위수역(防衛水域)에 대해서 신문 등의 발표에 따르면, 울릉도(鬱陵島)의 남쪽에 위치한 일본영토인 죽도(독도)가, 종래의 맥아더 라인에서는 일본영역 내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선이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방위수역 안에 들어간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¹⁸⁾ 답변에 나선 오카자키, “제가 볼 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자세히 지도를 확인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¹⁹⁾

이후 독도에 대해 답변을 들은 단 의원은 오카자키외무대신에게 러일전쟁당시에도 독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독도에 대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주권행사강화를 요구한다. 단 이노, “...생략, 일러 전쟁 당시에는, 이곳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군이 머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주 협소한 일본의 영토를 생각할 때, 하나의 어업 기지로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주변은 어찌되었든 방위수역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생각되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죽도(독도)가 방위수역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일본 영토의 일부가 이미 국제연합군의 방위수역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권 행사라는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²⁰⁾ 단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어선과 어선지도경비선이 평화선 안에 들어갔을 경우 한국과의 마찰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평화선이 선포된 지 8개월 후인 1952년 9월 당시 연합군사령관 클라크는 북한의 잠입을 막고, 전시(戰時) 밀수출입품의 해상침투를 봉쇄할 목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해상방위수역을 설정하였다. ‘클라크라인’으로 불린 이 수역이 평화선과 거의 비슷한 수역이었으므로, 평화선 선포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맥아더라인, 클라크라인, 평화선의 비교²¹⁾



17) 전개서, p. 47.
 18) 전개서, p. 51.
 19) 전개서, p. 51.
 20) 전개서, p. 51.
 21) 김종식(2010) 『날날이 파헤친 독도사 제4권』(보학당), p. 97.

3. 박정희와 독도

박정희는 전임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는 달리 일본의 협력자였다.²²⁾ 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는 군사 정부라는 명예를 벗고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정부정통성유지를 위해서라도 경제발전이 필요로 했다.²³⁾ 이는 그가 1962년에 쓴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이라는 책속에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협력은 克日로 표현된다.²⁴⁾ 과거 일제에 협력했던 박정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애국심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 같은 행동만으로 과거 그의 행적을 모두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독도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그의 전임자였던 이승만보다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의 독도관련 에피소드는 이하 내용과 같다.

1962.8.10 독도 경비대원들에 라디오 전달(조선일보 1962.8.10)

1965.4.13 미 외교문서

(남해안을 돌아보던 중 배 위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독도문제의 정치적인 해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독도는 국토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답(연합뉴스 2004.6.20)□

1965.5.27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국무부 (기밀) 대화 비망록’(러스크 미 국무장관)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irritating problems)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 (등대 공동관리 제안에 대해) “한·일 공동 등대 설치 방안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President Park commented that a joint light house with Korea and Japan just would not work).(연합뉴스 2004.6.20)

1965.6.21 한국 대표단 : 독도 문제를 한·일 회담 의제 외로 해야 한다. 만약에 한국 측이 수락할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일 회담을 중지할 생각.

상기 내용만으로는 박정희의 독도정책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일본의회 속기록에 나타난 한국의 독도정책은 평화선을 유지하면서 한일국교정상화를 성사시키려고 했다면 일본은 평화선 철폐를 통해 독도영유권획득을 기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재건을 통해 국정장악을 고려했던 박정희는 1961년 11월 11일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池田勇人)수상과 고급정치회담을 하는 등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한국의 의지도 강했다.²⁵⁾ 한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일본의회역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유는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양국관계가 호전되면 독도를 국제재판소(ICJ)에 재

22) 박정희의 전임자는 윤보선(장면내각)정부(1960.8~1962.3)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이승만을 박정희의 전임정부로 표기한다.

23) 박정희는 그의 저서『우리민족의 나아갈 길』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자본, 독일자본, 영국자본, 심지어는 일본자본도 받아드릴 수 입장을 피력한다. 박정희(1962)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동아출판사).

24) 전개서, 박정희(1962)

25) 다카사키 소우지, 김영진역, 『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1998년 8월), p. 143.

소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이 양국관계를 고려해 일본의 재소에 대해 응소하리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었다. 특히 박정희 방일 이후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정책이 기존의 평화선철회를 통한 독도영유권확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평화선자동철회와 독도ICJ제소로 선회한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1961년 12월 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후쿠다(福田篤)의원의 질의에 대한 고사카(小坂善太郎)²⁶⁾당시 외무대신의 답변에서 알 수 있다. 후쿠다 의원, “...생략, 일한교섭, 국교정상화의 대화과정에 죽도(독도)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외무성의 조사내용을 봐도 1952년 이래 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으로부터 24회, 한국으로부터 18회, 합계 42회의 구상서를 포함한 다양한 논쟁이 지나간 시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생략...이런 일한교섭이라는 중대한 과정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아픈 것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일한교섭의 과정에서 일본의 주장을 분명히 관철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²⁷⁾ 답변에 나선 고사카, “죽도(독도)가 시마네현의 일부인 것은 명명백백한 일로, 이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심도 없습니다. 단지 공해상에 배타적인 이승만라인이라는 것을 그어놓고 이선 안에 있으므로 죽도(독도)는 자신의 것이라고 한국 측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2회나 구상서가 오고 간 문제를 지금 또 여기서 교섭해 봐도, 동일한 결과가 될 뿐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한관계가 개선되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3국, 즉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다루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에 있어서도, 일한관계를 개선해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제3국이 재판한다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마 제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²⁸⁾ 이후 일본의회에서는 중참의원 모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평화선철폐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 장관과 수상은 한일간에 국교가 정상화되면 평화선철폐는 당연한 것이고 이후 양국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독도는 ICJ에 제소한다는 일본의 독도 관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962년 3월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시다(牛田寬) 의원의 질의에 고사카 외무대신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데, 우시다, “...생략, 이전 외무장관이 발언한 죽도(독도)에 대한 것입니다. 죽도(독도)문제의 해결 기미를 찾아내는 것이 회담 타결조건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죽도(독도)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영토로, 죽도(독도)가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일한간의 하나의 큰 장벽, 암세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고사카, “일한회담은 아까 말씀 드린 세 가지 의제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도(독도)문제는 저희도 우시다 의원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회담 자체가 아니어도, 즉 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직접 이야기하여 상대가 일본의 것임에 동의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국인 공정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상대도 이에 응소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적당하

26) 1960년 7월 19일~1961년 7월 18일(일본외무대신역임)

27)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동북아역사재단. p. 575.

28) 전게서. p. 575.

다고 생각합니다...생략.”²⁹⁾

그러나 박정희는 대통령선거 10여 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대표단일행의 독도관련 질의에 대해 독도문제는 한일회담과 별개임을 밝힘으로써 일본의회와의 의중이 달랐는데 이는 1963년 2월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노하라(野原)의원의 질의에서 알 수 있다. 노하라 의원, “작년 말이었습니다만, 오노(大野伴睦)³⁰⁾씨가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오노씨와 동행한 기자단이 박 의장에게 죽도(독도)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장은, 죽도(독도)문제는 일한회담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일한회담이 성립되고 국교가 정상화된 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박 의장이 작년 말에 밝힌 견해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모든 현안의 일괄 해결이 없으면, 즉 죽도(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박 의장은 죽도(독도)문제는 뒤로 미루고 국교정상화가 끝나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서로 양해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 차이는 대체 무엇입니까, 외무장관?”³¹⁾ 박정희의 “죽도(독도)문제는 일한회담과는 별개”라는 한국의 입장이 알려지자 일본의회에서는 독도문제와 국교정상화를 연계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된다. 더 나아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본의회 내에서 대두되면서 한국의 독도정책은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경제재건을 계획했던 박정희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되면서 평화선은 자동폐기의 길을 걷게 된다. 이에 대한 증거는 1965년 4월 8일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시이나(椎名悦三朗)³²⁾외무대신의 의회보고에서 알 수 있다.

시이나 외무대신, “일한협정의 최근 진척상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략... 먼저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납득이 가는 선에서 어업에 관한 수역,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잠정적 어업규제조치 및 어업협력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 그 결과 일한 간 어업문제에 관한 합의사항이 가시명되었습니다. 어업에 관한 수역에 대해서는 제주도 부근의 일부 수역을 제외하고 최근의 국제적 경향에 따라 연안 기선에서 측정하여 12마일까지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공동규제수역에서의 출어척수 및 어획량에 대해서도 일본의 어업실적을 거의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은 저희로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측은 공해 자유 원칙 및 공해상의 단속과 재판관할권의 기국주의 원칙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과거 십여 년에 걸쳐 끊임없이 요구해 온 이승만 라인 철폐와 일본어선의안전조업 등이 확보됨으로써 실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³³⁾ 당시 일본의회는 평화선철폐가 독도영토주권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어업협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일본에 양보함으로써 일본에 독도영유권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29)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동북아역사재단, p. 634.

30) 당시 오노 자민당 부총재 일행방한.

31)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동북아역사재단, p. 709.

32) 1964년 7월 18일~66년 12월 3일(일본외무대신역임)

33)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동북아역사재단, p. 872.

4. 노무현과 독도

노무현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해방이후 태어났다. 그래서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를 겪지 않고 자랐으며 동시에 교육과정도 반일·반공 민족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일본의 과거사미해결에 대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일본에게 과거사문재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일관계는 양국정상간 셔틀외교를 통한 한일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노무현정부의 주장과 한류열풍 등으로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교과서에 독도기술관련 검정문제가 야기되고 한국의 독도우표발행과 맞물려 독도문제가 한일 간에 현안이 되면서 양국정상 간의 셔틀외교도 중단되고 일본의회에서는 독도관련 질의응답의 빈도가 높아진다.

특히 2004년 10월 2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는 독도 시마네현 편입 100년을 기해서 이른바‘죽도의 날(다케시마노 히)³⁴⁾에 대한 논의가 의회차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회에서 이른바‘죽도의 날’제정을 요구하는 질의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87년 8월 19일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시바시(石橋大)의원에 의해 제기 되었다가 2004년 10월 2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마츠바라(松原仁)의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1990년 이후 경기불황을 겪고 있던 일본사회의 우경화현상이 주요한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마쓰바라 의원의 질의에서 알 수 있는데, 마쓰바라 의원, “생략... 죽도(독도) 문제에 대해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영토의연(領土議連)의 사무국장으로 시마네현을 방문해 지사와 죽도(독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가운데 죽도의 날을 만들자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젠가 죽도의 날을 제정하자고 시마네현 지사가 내각을 방문해서 호소다(細田博之)관방장관을 만나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죽도(독도)가 1954년 이후 계속 한국에 의해 실효 지배되는 상황에서 죽도의 날 제정에 대해 꼭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상징이 없는 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일본의 영토로서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³⁵⁾ 답변에 나선 정부 측의 아이자와(逢沢一郎)관방 부장관은, “생략... 죽도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일한관계 전체를 신중히 고려하면서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³⁶⁾로 간략하게 답한다. 하지만 이후 4개월 뒤인 20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의회는 이른바 ‘죽도의 날’제정을 가결한다.³⁷⁾ 한일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른바‘죽도의 날’이 처음 논의된 뒤 17년의 공백을 두고 갑자기 제정되게 된 이유를 여기서 모두 얘기 할 수 없지만 일본의 우경화 현상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한일관계를 경색일로에 빠트리게 되는데 이후 노무현정부의 독도관련 대일정책은 단호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이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4)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노 히(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른바‘죽도의 날’또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이른바 ‘죽도의 날’로 부르기로 한다.

35)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II』 동북아역사재단, p. 1324.

36) 전게서, p. 1324.

37) 2005년 1월 14일, 시마네 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 이른바 ‘죽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했다.

- 2005.3.23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이상 더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100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 날을 시마네현이 이른바‘죽도의 날’로 선포한 것은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 2005.11.18 한일정상회담
 일본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라든지 역사교육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어떤 일본의 입장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2006.4.18 여야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회동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일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묵인 또는 동조 아래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과서 등재 행위 등으로 일본이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조용한 대응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대응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결정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2006. 4.25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 일본이 독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는 어떤 희생과 비용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
- 2007.3.1 3·1절 기념사
 아직도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는 러일전쟁 당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아가서는 역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일을 부추기고 있다.

상기 내용 중 2005년 3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의 이른바‘죽도의 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 이틀 후인 3월 25일 일본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진다. 사토(佐藤茂)의원, “...생략, 3월 23일에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이 홈페이지에 담화형태로 발표하셨습니다.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담화를 대통령 본인이 발표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대일 비판을 이런 형태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화로 발표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정부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며 대응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답변에 나선 마치무라(町村信孝)외무대신, “23일에 노무현대통령의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만 그전에 17일에는 일본에 한국 정부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상임위원회 성명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성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17일의 이 상임위원회 성명에 대해 바로 그날 외무장관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는 한국 측 성명에 있었던 한국 국민의 과거 역사에 대한 심정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라야마 담화³⁸⁾ 등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할 점은 반성하며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는 강한 결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생략.”³⁹⁾ 위의 의회속기록을 보면 독도관련 한일 간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일본비판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에 반해 마치 무라의 답변은 이를 역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보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관련 발언을 무시 또는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을 무시하거나 달리 해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논리와 한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역대정부의 독도정책이 일본을 곤혹스럽게 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일본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 부정하고 또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강조하기위해 사용하는 수사는 1954년과 1962년 두 번에 걸쳐 일본의 독도ICJ제소에 대해 한국이 거부했다는 논리이다. 또한 한일양국은 독도관련 양국정부의 정책이나 영유권주장에 대해 국내 정치와 관련된 국내문제로 치부한다든지 또는 대통령이나 일본수상의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현상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당시 민주당 와타나베(渡辺周)의원의 질의와 마치무라 외무대신의 답변에서 알 수 있다. 와타나베, “...생략, 이번 이 성명을 낸 직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들은 바에 의하면 30% 정도였던 지지율이 40% 정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성명을 낸 보람이 있었다고 할지 주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움직임과 영향은 이 선거가 끝나고 자칫하면 8월 일본에서 말하는 종전기념일, 한국에서는 광복절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일본이 1954년에 이 문제를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론짓도록 제소하자고 했을 때 한국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생략.”⁴⁰⁾ 마치무라역시 와타나베의 질의응답과정에서 일본의 독도ICJ제소를 이용한 답변으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야당의원으로부터의 질문공세를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무현정부에서도 일본의회에서도 독도영유권주장이 몇 번이고 논의 되었지만 일본의회는 과거 한국에 의해 적법하게 거부되었던 ICJ제소관련 내용을 반복사용하면서 마치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독도를 일본의 과거침략전쟁의 유산으로 해석해 일본에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독도영유권논리개발이 일본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38) 일본의 전후50주년의 종전기념일(1995년 8월 15일) 당시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가 발표했던 담화다. 발표자인 무라야마 총리의 이름을 따 ‘무라야마 담화’라고 한다. 내용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 한다”이다. 이는 외교적으로 일본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39) 동북아역사재단(2009)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 II』 동북아역사재단, p. 1365.

40) 전게서, p. 1369.

5. 결론

일본의 이른바‘죽도의 날’제정으로 매년 2월이 되면 이 문제가 한일양국 간에 현안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이른바‘죽도의 날’제정을 통해 한일관계는 손상되었지만 많은 일본인들에게 독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만족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 시마네현의 이른바‘죽도의 날’제정이전에 일본인들의 독도인식이 50%미만이었는데 이른바‘죽도의 날’제정 8년이 지난 2012년 여론조사에서 일본인들의 독도인식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기존의 역사중심에서 국제법을 통한 ICJ제소 중심으로 이동하는데 성공한 반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고유영토론을 고수하면서 국제법적인 독도영유권 권원주장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이는 독도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자신감에서 이겼지만 노무현정부의 독도정책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의 일부였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일본의 독도 정책은 2005년 2월 일본의 이른바‘죽도의 날’제정에서 보듯이 현대사의 일부인 것이다.

이 논문은 지난 60여년에 걸친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을 일본의 의회속기록을 통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노무현정부의 독도정책을 분석했다. 이승만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강제 병합되기 이전부터 독립운동과 투옥을 반복하면서 일본의 탄압을 몸소 체험했고 미국에서 국제관계와 국제법을 공부한 반일 민족주의자였다. 반면 박정희는 일본식민지시기에 태어나 일본식교육을 받았고 일본제국주의의 협력자로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克日을 꿈꾸는 군인 정치가였다. 그리고 노무현은 해방이후 태어나 반일과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람으로써 민족주의가 강한 대통령 이미지이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시대와 교육환경의 영향 탓인지는 몰라도 이승만의 독도정책은 평화선이란 국제사회의 제도적 잣대를 이용한 정책시도로 일본을 압도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계속되는 비판과 미국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준전시상태에서의 독도영토주권수호정책이었다. 박정희는 이승만과는 반대로 과거 일본제국의 협력자로서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평화선 철폐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미해결의 해결’이란 미묘한 해결방식을 통해 일본과 국교정상화에 성공한다.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자 일본은 평화선철폐를 환영함과 동시에 독도영유권확보를 위해 ICJ에 제소를 주장하는 등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해보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기술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하자 한국은 독도우표를 발행하고 독도방문을 자유화하는 등 독도정책을 일본의 미해결의 과거사로 정리한다. 이에 대해 일본의회는 한국의 독도우표발행과 독도방문자유화에 대해 한국의 독도정책을 비판하고 시마네현이 이른바‘죽도의 날’을 선언함으로써 일본은 독도를 ICJ제소에 장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국내외 홍보에 열중하게 되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간 한국의 역대정부의 독도정책은 국내홍보와 역사중심의 영토주권주장이 주를 이룬 반면 일본은 ICJ제소를 통한 국제사회에 홍보가 주요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한일협정의 경과와 독도이슈

도 시 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협정의 경과와 독도이슈

도 시 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서론

한일협정이란 6차에 걸쳐 개최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1951년~1965년)을 통해 1965년 6월 22일 체결되고, 12월 18일 성립·발효된 양국간의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와 관련된 이슈는 한일회담의 주제는 아니었으나, 회담에서 빈번히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담의 최종 타결시점에서도 양국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회담 과정 초기단계에서 일본은 독도를 분쟁이슈화하여 정식 주제로 채택하고자 한 반면, 한국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에 입각함으로써 양국은 참여하게 대립하였다. 본고에서는 한일협정의 경과와 독도이슈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까지의 독도영유권 문제를 개략적으로 고찰한 다음, 한일회담에서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제1기: 제5차 한일회담까지의 독도이슈(1952~1960년), 제2기: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제기(1961~1962년), 제3기: 청구권협정 타결 직후 제3국 조정안(1962~1963년), 제4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과 독도영유권(1964~1965년)의 4개의 시기¹⁾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한일회담에서의 독도이슈와 관련하여, 제1단계(1952~1960): ICJ 방식의 확립 과정, 제2단계(1961~1964년): 제3국 조정안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제3단계(1965년):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작성 시도의 3단계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이원덕, "일본측 한일회담(1945~1965) 외교문서 중 독도 관련 문서의 검토", 『영토해양연구』제3호, 2012, 214~233쪽.

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전의 독도영유권 문제

1951년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근대적 의미에서의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1900년(고종 37)에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까지 연대기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하면, 울릉도는 독립된 군(郡)으로 격상되어 울릉도·죽도·석도(石島)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울릉도 도감(島監)은 울릉군 군수(郡守)로 격상되었으며, 울도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裵季周)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가 비밀공문인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으로 요청하여 개최된 각의에서, 총리대신 가쓰라 타로(桂太郎)는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일본영토로 발표하였다.²⁾ 일본의 독도편입이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한반도 식민화정책 추구하고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사의 출발로 인식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일본 정부의 독도편입은 국제법상 독도영유권 분쟁의 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³⁾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독도영유권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초기 정책은 1945년 9월 일본의 어로활동을 일본 본토 주변의 일정 해역에 한정하는 이른바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의 선포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46년 1월에 발표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호 ‘일부 주변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과정에도 이어져 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켰으나, 6차 초안부터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영토 포기 조항에 독도를 삽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의 로비,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부 정치고문 시볼드(William J. Sebald)의 개입, 군사전략상의 고려에 의한 것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냉전의 격화에 따른 강화조약의 성격이 징벌적 조약에서 반공조약으로 변질됨으로써 일본의 전쟁책임, 영토할양, 배상 등이 배제된 데 기인하고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리앙쿠르암(독도)이 일본주권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다른 연합국의 인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한일간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식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한 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의한 해결을 주장했다.⁴⁾

2) 결정문 요지는 첫째, 오키시마(隠岐島) 서북에 위치한 다케시마(竹島)는 타국이 점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1903년 이래 일본인이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따라서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것이다.

3) 최희식, “한일회담에서의 독도영유권 문제”, 『국가전략』 제15권 4호, 2009년, 118쪽.

4) 정병준,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과 미국의 역할”, 『역사와 현실』 제60호, 2006, 4~10쪽.

3. 한일회담에서의 독도영유권 문제의 추이

1) 제5차 한일회담까지의 독도이슈(1952~1960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에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 선언, 이른바 ‘평화선(Lee Line)’을 선포하였다. 평화선은 독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맥아더라인보다 일본 쪽으로 더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나포하는 등 독도 이슈가 격화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왕복문서의 형태를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논리를 상호 전개하는 등 독도영유권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일본은 1954년 9월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그 판단에 양국이 반드시 따를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한국 영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했다. 이와 같이, 독도영유권 논쟁, 평화선과 일본어선 나포를 둘러싼 갈등,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둘러싼 공방은 이승만 정권시 한일회담 교섭과정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제5차 한일회담까지의 교섭과정에서 평화선 등 독도이슈가 제기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드(William J. Sebald)의 중개로 1951년 10월 21일부터 열린 예비회담을 거쳐, 제1차 회담이 1952년 2월 15일부터 당시의 이승만정부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정부 사이에 시작되었으나, 쌍방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4월 21일 중단되었다.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에 열렸으나, 평화선문제·재일교포의 강제퇴거문제 등으로 7월 23일 다시 결렬되었다. 제3차 회담은 1953년 10월 6일부터 재개되었으나,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강이치로(久保田貴一郎)의 “일본의 36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으로 10월 21일 또다시 결렬되었고, 그 후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제4차 회담은 1957년 말부터 열린 예비회담을 거쳐 1958년 4월 15일에 시작되어 재일교포의 복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년 4월 혁명에 의한 자유당 정권의 붕괴로 다시 중단되었다. 그 후 민주당정부는 한일회담 재개를 추진하여, 같은 해 10월 25일 제5차 회담이 열렸으나 5·16군사쿠데타로 다시 중단되었다.

제5차 한일회담까지 독도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정책은 매우 소극적이지 모순적이었다. 항일 독립운동가 출신인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 ‘반일’즉 식민주의의 청산은 시대적 과업이었다. 반면 반공의 전사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반공을 국가이성으로 설정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일 국교정상화는 반공망의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견제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한국 외교가 일본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일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정권에 있어 한일 국교정상화는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반면, 독도영유권 문제가 식민주의의 청산과 한국 어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⁵⁾ 따라서 이승만 정권 당시

5) 박진희, 『한일회담: 제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 29~47쪽.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독도영유권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⁶⁾

2)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제기(1961~1962년)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국가이념으로 반공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대북 봉쇄망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위해 발전국가 노선을 탐색하며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 했던 박정희 정권의 외교전략에 기인한 것이었다.⁷⁾ 그것은 미국의 원조가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대규모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했던 군사정부에 있어서 일본자본의 유치라는 경제적 필요성에 더하여 일본을 동맹세력으로 하여 한반도의 안정화를 모색하고 중공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및 일본자본의 해외진출 욕구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⁸⁾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이 재개되었는데, 일본은 1962년 본격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정책과 인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1962년 9월 3일에 개최된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4차 회담에서의 논쟁이다.⁹⁾ 1963년 1월 11일의 회의에서 스기 미찌스게(衫道助) 수석대표는 “사실 독도 문제는 국교 정상 후에 천천히 토의해도 될 문제이나, 사회당이 떠돌고 있어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의 국회 비준을 받기가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⁰⁾

위의 논의에서 독도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기본자세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주로 국회비준이라는 국회대책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넌년 안보투쟁¹¹⁾을 겪으며 ‘저자세, 관용과 타협’을 내세우며 등장한 이케다 내각(池田内閣)에 있어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혁신세력의 움직임은 ‘제2의 안보투쟁’을 유발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자아냈던 것이다. 당시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세력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미국의 냉전논리에 편승하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수립을 통해 대공산권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이를 반대하였다. 특히 이승만 라인에 기초한 한국 정부의 일본 어선 나포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혁신세력은 독도영유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회 대책을 위해서라도 독도영유권 문제가 타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1963년 1월 11일에 개최된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22차 회의에서 우시로구 토라오(後宮虎郎) 아시아국장이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말이 난다는

6) 최희식, 앞의 글, 121쪽.

7) 高崎宗司, 『檢證 日韓會談』, 岩波書店, 1996, 116~126쪽.

8) 이현진, “한일회담의 청구권 문제의 해결방식-경제협력 방식으로의 전환과정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22호, 2008, 73쪽.

9) 한국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V.2 (4-21차)』, 1962, 25쪽.

10) 한국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V.3 (22-32차)』, 1963, 24쪽.

11) ‘안보투쟁’이란 1960년 일본에서 미국 주도의 냉전에 가담하는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시민주도의 대규모 평화 운동을 말한다.

확증을 얻는 것이 문제다”고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¹²⁾

둘째, 일본 정계 및 교섭 담당자가 독도에 대해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종필이 1962년 7월 13일 딘 러스크(David Dean Rusk)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독도 폭파를 언급했다는 미국 외교문서가 존재한다. 김종필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독도 폭파를 언급한 것은 이세키 유지로(伊關佑二郎) 아시아국장이 독도 폭파를 언급한 10일 후인 9월 13일 하네다 공항 귀빈실 기자간담회에서였다. 이와 같이 교섭 당사자인 이세키 아시아국장의 발언은 일본 측이 독도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동년 8월 2일 배의환 주일대사와의 면담에서 요시다(吉田茂) 전 총리 또한 “고사카 외상이 독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몰상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하면, 목표를 멀리 두고 대담하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¹³⁾ 이후에는 오노(大野伴睦) 자민당 부총재가 독도공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¹⁴⁾

“섬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세키 국장의 발언은 독도에 대해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국내대책을 위해 독도영유권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했던 일본의 속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국 또한 독도에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으며, 한일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종필의 독도 폭파발언이나 배의환 대사의 언급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독도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배의환 대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독도영유권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제가 아니며 국교정상화 후에 시간을 두고 토의한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직접 주장하며 일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독도영유권 문제가 한일회담 교섭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를 억제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고착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¹⁵⁾

3) 청구권협정 타결 직후 제3국 조정안(1962~1963년)

독도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일회담 교섭 과정에 대두한 것은 1962년 제1·차 김·오히라 회담 때였다. 김종필은 10월 20일에 있었던 1차 김·오히라 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 협상테마가 아니며, 국교정상화 후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며 박정희 정권의 기본 입장을 성실히 대변하였다. 반면,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차 회담에 대해서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훈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11월 12일에 있을 2차 김·오히라 회담을 앞두고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측에서 독도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동 문제가 한일회담의 현안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민에게 일본의 對韓 침략의 경과를 상기시킴으로써 회담의 분위기를 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1월 8일자 훈령을 내렸다.¹⁶⁾

12) 한국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V.3 (22-32차)』, 1963, 25쪽.

13) 한국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V.1(1-3차)』, 1962, 8쪽.

14) 한국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V.1(1-3차)』, 1962, 23쪽.

15) 최희식, 앞의 글, 124쪽.

16) 한국외교문서,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 10-11』, 1962, 154쪽.

그러나 김종필은 당시 훈령을 초월한 제3국 조정안을 제시한다. 12일 김·오히라 2차 회담에서 김종필은 박정희의 훈령에 근거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강변하는 오히라 외상과 대립했다. 오히라 외상이 집요하게 추궁하며 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지를 타진하자, 김종필은 훈령을 초월하여 제3국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에 오히라 외상은 제3국으로써 미국을 지적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다.¹⁷⁾ 제3국 조정안은 일본 측에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청구권 협상에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술적 판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⁸⁾

일본 정부는 1962년 12월 중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기존입장에서 일부 후퇴하여 “구속력이 있는 제3국 조정”을 새로운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963년 1월 11일에 개최된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제22차 회의에서 우시로구 토라오 아시아국장도 제3국 조정안과 관련하여, 독도 문제에 최종적인 결말, 혹은 제3국에 의한 조정방법을 통한 해결의 지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말이 난다는 확증을 얻고자 하였다.¹⁹⁾

그러나 한국은 국교정상화 후에 제3국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제3국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때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되므로, 강제력이 없는 조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²⁰⁾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 협상테마가 아니며, 국교정상화 후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제3국 조정안을 양립시킬 수 있었다.²¹⁾

1963년 7월 9일 개최된 일본 외무차관 등과의 회합에서 일본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우시로구 국장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 하에, 1907년에 체결된 ‘The Hague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에 의한 조정(arbitration), 혹은 영유권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공동 이용할 것(joint usage)을 제안하며 “한국 정부의 견해를 조속히 알려주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규하 대사는 한국이 이러한 조정 혹은 공동 이용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며 우시로구 국장의 제안을 실질적으로 거절하였다.²²⁾

4)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과 독도영유권(1964~1965년)

한일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한일 현안일괄 타결 시에 반드시 독도처리에 관하여도 명백한 처리방안에 합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회하였고, 1965년 6월부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관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은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타결을 앞둔 5개월 전 밀약이 합

17) 한국외교문서,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 10-11』, 1962, 165~166쪽.

18) 최희식, 앞의 글, 125쪽.

19) 한국외교문서, 『제6차 한일회담 제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V.3 (22-32차)』, 1963, 25쪽.

20) 위의 문서.

21) 이와 관련하여 독도영유권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둠으로써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고착화하겠다는 전략에 제3국 조정안을 일치시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희식, 앞의 글, 126쪽.

22) 한국외교문서, 『속개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교섭 및 본 회의』, 1963, 44~45쪽.

의되었다는 언급이 2006년 6월 나카소네 총리의 인터뷰에서 전해지고 있다. 김종필의 형인 김종락과 고노 이치로의 측근 시마모토 겐로의 중개역할로 성사된 이 밀약에는 “해결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조약에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4개 항목²³⁾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다.²⁴⁾ 일본 정부는 독도밀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타결’혹은 ‘잠정적 타결’을 추구하여 한일 국교정상화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이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교섭으로 연결되었으리라는 분석은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⁵⁾

구체적인 교환공문 교섭 과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환공문 교섭 과정²⁶⁾

월일	일본 측	한국 측
6.17	「의정시안」 제출 - 양국 분쟁에 독도를 명기 - 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	「교환공문안」 제출 - 독도 非 명기 - 합의하는 제3국 조정
6.18	「교환공문안」 제출 - 양국 간 분쟁 - 중재위원회에 의한 해결	
6.21 (외무장관 회담)	「교환공문안」 제출 - 양국 간 모든 분쟁 - 합의하는 중재에 맡김	
6.21 밤	「교환공문안」 제출 - 양국 간 분쟁 - 합의하는 조정 또는 중재	「교환공문안」 제출 - 양국 간에 생길 분쟁 - 합의하는 절차로 조정
6.22 (외무장관 회담)	- ‘양국 간 분쟁’을 사용하면 ‘중재’대신 ‘조정’사용 가능	- 양국 간에 생길 분쟁, 중재라는 단어 수용 불가
6.22 (이동원-사토 회담)	- ‘양국 간 분쟁’, ‘조정’으로 타협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 정부가 1965년 6월 17일에 제시한 1차 시안은 분쟁해결에 관한 의정서의 이름으로 5조 10개항에 이르는 장문의 문서였다. 그 특징은 양국 간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그 분쟁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상대국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면 60일 이내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탁하며,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양국 정부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 분쟁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²⁷⁾

23) 1. 독도는 금후 한일 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며, 동시에 그것에 반론하는 것에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선을 확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은 유지한다. 다만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 및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킨다.

24) 노 대니얼, “한일협정 5개월 전 독도 밀약 있었다”, 『월간중앙』 4월호, 107~108쪽.

25) 이원덕, 앞의 글, 227쪽.

26) 이원덕, 앞의 글, 228쪽.

27) 양 체약국간의 모든 분쟁은 금일 서명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의 해석 또는 사실에 관한 분쟁 및 독도에 대한 주권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로 한다.

그러나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전해들은 일본은 18일 2차 시안을 제시하는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동시에 독도 문구가 삭제되었다. 그 외에는 분쟁처리 절차에 시간적 구속과 법적 구속 및 상대국의 중재요구에 대한 의무적 승낙을 명시하는 등 1차 시안과 거의 같았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18일 ‘본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시안을 제시하며 일본에 대항하였다. 양국 정부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으로써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제3국 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한국 측 시안의 특징은 양국 간 분쟁에 독도 문제를 제외하고, 법적 구속력을 명기하지 않은 채 양국 정부의 합의를 전제로 한 제3국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합의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교환 공문은 다음과 같다.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 대표단이 작성한 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이동원 장관이 방일하는 6월 20일까지 교섭을 중단시켰다. 즉 이동원 장관의 진두지휘 하에 교환 공문 교섭을 타결하려 했던 것이다. 이 교섭은 한국 측 시안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 측 시안과 최종안이 거의 유사하다는 면에서도 일본측 시안은 이미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 측 시안을 거의 수용하는 대신, 양국 간 분쟁에 독도를 명기하고자 하였다. 오재희 전 대사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은 “다케시마를 포함한 양국 간의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고수하여 독도를 명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강경입장에 밀려 일본은 독도를 명기하는 것을 포기하였다.²⁸⁾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분쟁과 그 처리에 관련된 표현이었다. 한국 정부가 “양국 간에 일어날 분쟁”이라는 표현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위 표현이 독도 문제를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양국 간 분쟁”이라는 표현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한국은 강제성이 없는 “조정”에만 한정할 것을 주장했던 반면, 일본은 “조정 또는 중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교섭은 교착상태를 맞이하며, 22일 예정이었던 언론발표 예정시간까지 타협을 이룰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결국 최종 판단은 이동원 장관과 사토 수상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측 요구인 “양국 간 분쟁” 한국측 요구인 “조정” 문구를 수락하는 형태로 타협을 이루었으며, 동시에 일본 정부는 교환 공문에서 말하는 양국 간의 분쟁에 독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고 장래에 있을 분쟁만을 의미하며 “우리 정부가 장래의 문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사토총리로부터 보장받았다.²⁹⁾

최종 확정안이 5조에 이르는 장문의 일본 시안이 아닌 한국 시안과 거의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한국측 주장이 거의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한국 대표단이 교환 공문 교섭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한다는 사실은

28) 오재희 인터뷰, 『일본공간』 제4호, 2008, 160~161쪽; 최희식, 앞의 글, 130쪽.

29) 한국의외교문서, 『이동원 외무부 장관 일본 방문 1965』, 1965, 401쪽.

교환 공문 교섭이 타결되고 기본조약이 조인된 당일(6월 22일) 주일대사가 본국에 보낸 긴급전보를 통해 알 수 있다.³⁰⁾

“이상과 같이 양해사항을 한 것은 일본이 종래에 주장한 독도란 문구 삭제를 통해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당초 일본이 요구하였던 절차상 합의에 대한 시간적 구속, 법적 구속, (상대국 제소) 결정에 대한 (아측의) 복종의무 등을 완전히 해소시킨 것임. 따라서 아국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수속은 물론 조정수속도 밟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독도 문제의 해결은 실질적으로 아측의 합의 없이는 영원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임.”

위의 한국 대표단의 평가처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으로 한국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영원히 미해결의 문제로”남게 할 수 있었다.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라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교환 공문에 의해 원천 봉쇄된 것이다. 먼저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며”라는 조항에 의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군사적 행동에 의해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는 조항에 의해, 한국 측 합의 없이는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정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포함된다는 것은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³¹⁾

반면, 일본으로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독도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 시이나 외상은 1965년 10월 29일 ‘중의원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중략) 日韓 간에 매우 중요한 분쟁문제입니다. 이번의 분쟁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에 있어 다케시마는 이 분쟁에서 제외되었다고 명기되어있지 않기에 당연히 양국의 분쟁문제가 됩니다. 한국 측이 어떠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략) (교환공문에서) 조정에 맡긴다고 말한 이상, 어떠한 조정도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약위반입니다. 따라서 이 日韓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적당한 기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에 절충을 하고자 합니다.”

4. 한일회담에서의 독도영유권 교섭에 대한 평가

일본 정부의 한일회담 문서의 비공개로 인한 제한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문서를 통해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교섭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먼저 일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했다. 첫째,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등 표면상 독도 문

30) 한국외교문서, 『제7차 한일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 회담』, 1965, 390쪽.

31) 호사가 유지,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의사록 속의 독도문제 분석」, 『일본문화연구』제40집, 2011, 716쪽; 최희식, 앞의 글, 131쪽.

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높은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국내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독도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김종필의 독단적 행위에 의해 제3국 조정안이 제안된 이후 일본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정책도 흔들리는 측면을 보였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은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독도 문제 타결을 위한 실마리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의 실효적 지배라는 ‘현상 유지’를 더욱 고착화시켰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에 대한 분석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독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 정책은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 협상테마가 아니며, 국교정상화 후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독도 문제를 영원히 미해결 상태로 두어 한국의 실효적 지배라는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김종필의 독단적 행위로 제3국 조정안이 제시되었고, 일본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형태로 타협을 하였던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의도와는 달리 현상유지를 타개할 어떠한 방법도 봉쇄해버렸다는 점에서 한일회담 내 독도영유권 교섭에서 한국은 독도 문제에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²⁾

그러나 당시 한국 신문의 논조를 고찰하면,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모든 협정의 내용과 조인식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는 이번에 조인된 조약 협정에서 제외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³³⁾는 전제에서 “독도 문제에 극히 흐리멍덩한 합의”³⁴⁾이자, “한일 양국은 앞으로 국제관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다시 말썽을 일으킬 여지를 남겨 놓았다”³⁵⁾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교환공문으로 결착 한일외상, 독도 문제 처리에 합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³⁶⁾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직접 언급하면서 “독도란 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 분쟁해결 방법에 의한 교환공문으로 할 것에 합의, 사실상 독도 문제 해결에 일단 끝장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독도 문제의 처리는 교환공문이란 타이틀로 일단 끝장을 맺었다”라며 독도 문제와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한국 신문들의 논조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 언론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일단 보류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것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이 결국 독도 문제의 분쟁해결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의도로 보인다.³⁷⁾

32) 잠정적 타결을 통한 독도 방식은 근대적 의미의 영토분쟁을 상호의존의 탈근대성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해결 모델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희식, 앞의 글, 132쪽.

33) 한국일보, 1965. 6. 23.

34) 동아일보, 1965. 6. 23.

35) 경향신문, 1965. 6. 23.

36) 조선일보, 1965. 6. 30.

37) 황재원, “독도와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영토해양연구』제9호, 2015, 117~118쪽.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UN국제해양법 협약과 독도

유 하 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UN국제해양법 협약과 독도

유 하 영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법과 역사 그리고 독도

1)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

독도현안의 본질 및 성격과 관련하여 크게 독도의 영유권과 섬으로서의 해양경계 획정의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영유권 분쟁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타협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¹⁾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는 신라지증왕 13년(512년)이래 계속하여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²⁾이 행사되었다. 조선조 울릉도 수토(쇄환)정책은 “국가의 정책”이므로 이 또한 실효적인 지배이다. 다시 말해 이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포기”가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 관할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가 영토에 대한 “실효지배”는 국가관할권의 행사로써 입증되는 것이다. 실제로 독도현안에서의 국가관할권 행사의 역사적 법적 실제와 사실들은 한일간 역사와 독도현안에서 주요한 입증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도현안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54년 9월 25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의에 대해 변영태 외무부장은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일본이 독도의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할 것이다.(1954년 10월 28일, 대한민국 변영태 외무부장관)”라고 표명했다. 이러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2005년 발표된 “대통령선언”(소위 대일독트린)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표명된다.³⁾

1) 독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 (http://www.dokdohistory.com/03_inform/issue_view.asp?i_ident=2878) 참조

2) 한 국가가 사람·물건·사건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국가 관할권이라 한다(김대순, “국가관할권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5권, 연세대학교, 206쪽)

3) 유하영, “독도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논리,” 찾아가는 독도수호교육, 경기도 교육청, p. 35) 참조.

2) 법과 독도

○ 법이란

법의 여신, 法 : 水 + 鹿 + 去

Recht, nomos

○ 규범으로서의 법과 국가영토

국가는 법이다, 국적, 국가의 구성요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cf. 대한국의 강토는 구 한국의 판도로 한다.

3) 법과 역사

○ 연혁

1876년 조일수호조규, 대한제국 칙령, 시마네현 고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항복문서, 평화선
선언, 대일평화조약, 한일기본조약, 신한일어업협정

○ 역사적 사실(확정)과 법의 해석과 적용

○ 쟁점별 분석과 해석

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법과 정의

(1) 전쟁과 평화의 세계역사

600여 외침,

Hugo Grotius,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

분쟁(dispute)과 사태(situation)

국내사안과 국제사안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2) 국제사법기관 개요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
- 특별협정 체결, 사전 조약상의 규정, 선택조항 수락, 응소관할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언제든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을 인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1. 조약의 해석
 2. 국제법상의 문제
 3. 국제의무 위반 사실 존재 여부
 4. 국제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의 범위

ICJ, PCA, ITLOS, ICC



2. 국제해양법의 개요

1) 성립(체결)과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은 제3차 해양법에 관한 유엔회의(UNCLOS-III, 1973년~1982년)의 결과 1982년 4월 30일에 채택된(130대 4, 기권 17) 국제협약이다. 바다와 그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나라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연안국 및 기타 해양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협약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반 기구 설립을 상정하고 있다.⁴⁾ 이외 9개 부속서를 포함한다. 세계 각국 해양법의 기준이 되는 협약이기에 흔히 국제해양법이라고도 불린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은 1958년 해양법관련 4개 협약이 합쳐진 그야말로 바다의 헌장이다.⁵⁾ 이 협약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개최된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의 오랜 협상과정을 거쳐 자메이카의 몬테고 베이(Montego Bay)에서 1982년 12월 10일에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하였다. 2009년 10월 현재 159개국 이 당사국으로 비준했다.

1970년의 국제연합총회는 1973년부터 제3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를 개최하여 해양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으로 심해져 제도뿐만 아니라 공해, 대륙붕, 영해와 접속수역, 어업과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 과학적 조사 등 광범위한 해양제도를 재검토하여 널리 수락 가능한 단일의 해양법조약을 채택할 것을 결의하였다(총회결의 2750C). 제3차 해양법회의는 1973년의 조직 회기 후에 국제법사상 이례적인 11회기 9년에 걸친 장기협상을 거쳐 1982년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채택에 성공하였다.

2017년 현재 UNCLOS를 비준한 나라, 즉 정식 회원국은 166개국 이고, 대한민국은 1983년 3월 14일 정부의 서명 이후 국회에서 1996년 1월 29일 이를 비준함으로써 84번째 회원국(2월 28일 발효)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2년 12월 10일 정부 서명 이후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비회원국은 미국이다.

2) 협약의 구성

조약의 구성은 제1부 서론(1조)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2~33조)

제3부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34 ~ 45조)

4) 우리나라는 1983년 3월 14일 서명했고, 199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996년 1월 29일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1996년 2월 28일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해양법협약 가입에 따른 새로운 해양법협약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5) 여기에는 4개 협약이외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서명의 선택의정서가 있다.

- 제4부 근도국가(46 ~ 54조)
-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55~75조)
- 제6부 대륙붕(76~85조)
- 제7부 공해(86~120조)
- 제8부 섬의 제도(121조)
- 제9부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122~113조)
- 제10부 내륙국의 바다에 대한 출입의 권리와 통과와 자유(124~132조)
- 제11부 심해저 (133~191조)
-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192~237조)
- 제13부 해양의 과학적 조사(238~265조)
- 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 및 이전(266~278조)
- 제15부 분쟁의 해결(279~299조)
- 제16부 일반규정(300~304조)
- 제17부 최종규정(305~320조)으로 구성된 320조의 대부분(大部)의 조약이다.

기타 부속서

- I 고도 회유성 어종,
- II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위원회
- III 개사(概査), 탐사 및 개발의 기본적 조건(22개조)
- IV 엔터프라이즈규정(13조)
- V 조정(14조)
- VI 국해양법재판소규정(41조)
- VII 중재 (13개조)
- VIII 특별중재(5개조)
- IX 국제 기관에 의한 참가(7개조)의 9개 부속서가 첨부되어 있다.

협약 체결과정에서 당시 선진국은 제11부의 심해저에 관한 규정이 국제정세의 실정에 맞지 않는 이유로 그 수정을 요구하고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채택으로부터 11년에 걸쳐 겨우 발효 요건이 갖추어졌지만 비준국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 보편적인 해양법 질서를 수립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발언권으로 1990년부터 제11부의 수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의향이 받아들여져 심해저 조항의 일부 수정이 합의되어 1994년 7월 28일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부속하는 협정으로서 ‘해양법협약 제11부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4년 11월 16일의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동시에 이 실시협정도 잠정적으로 적용되어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해양법협약으로의 참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조약의 규정에는 1958년의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영해, 공해, 대륙붕의 제 조약의 규정이 많이 채용되었으며 또한 새롭게 합의된 규정과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널리 도입되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의 대부분이 이미 국제관습법의 규칙이 됨으로써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아도 조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가간의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 절차도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해양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주요 국가를 포함한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비준·가입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⁶⁾

3) 주요내용

전문 320조 외에 9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는 바다의 이용에 관한 평시 국제법의 집대성이다. 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4개 조약이 채택됨으로써 당시 문제되었던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영해와 어업수역의 폭에 대해서는 국가 간 날카로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0년 제네바에서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가졌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국제사회에는 두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다에 대한 연안국 권리주장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갔고 1958년의 대륙붕에 관한 협약상 대륙붕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세계의 모든 해저(海底)가 연안국에 의해 분할될 우려에 당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다에 대한 연안국 권리주장의 범위가 넓어져 간 것은 영해와 어업수역의 확대경향에서 알 수 있다. 영해의 폭에 대해서는 과거에 확립된 국제적 기준은 없었으나 강대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3해리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3해리로서는 연안국의 권리보호가 어렵게 되자 이를 12해리 또는 그 이상으로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업수역은 본래 영해의 폭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영해와는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 제도로써 형성되어 간 것도 새로운 경향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채택한 국가들도 어업수역만은 200해리에 걸친 해역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해양법 협약에서는 연안국간의 중점적인 이해관계가 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결의하였다.

(1) 영해의 폭에 대한 결정 : 전통적 해양법에서는 그것이 영해제도와 공해제도의 이원적 구조에 입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간의 한계에 대한 확정된 규칙이 없어 이것이 해양법 질서를 불안하게 하는 최대 원인이 되었다. 이 결과 제네바 회의에서는 이것이 핵심문제로서 거론되었으나 해양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국제항행용 해협에서의 통과권과 얽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 협약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영해의 폭과 분리되어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게 되었고 영해 바깥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용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모든 국

6) [네이버 지식백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 droit de la mer]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가는 기선에서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영해의 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제법의 역사상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도국가(群島國家)에 대해서도 영역이 될 수 있는 해역의 범위와 그 해역 내에서의 통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국제제도가 창설되었다.

(2)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설정 : 새 협약에서는 해양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영해 바깥의 기선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안국은 그 안에서 생물 및 비생물자원의 탐사개발과 수역의 경제적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인공도(人工島)나 해상구조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오염의 방지 및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수역 안에서는 전통적인 어업 자유가 부인되고, 연안국이 전면적으로 어업활동을 관리하게 되었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모든 국가가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도관(導管)부설의 자유, 그리고 이들 자유와 관련된 해양사용의 자유를 향유하며, 또한 수역의 제도와 상충하지 않는 한, 전통적인 공해제도가 이 수역에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새 협약은 전통적 해양법에서의 공해도 아니고 영해도 아닌 전혀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는 제3의 수역을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인정하게 되었다.

(3) 영해제도의 다원화 : 전통적 해양법에서는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이 무해통항권을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영해의 확대와 더불어 지금까지 공해로서 자유로운 통항이 가능했던 해협이 영해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국제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새 협약은 국제항행용 해협에서 군함 및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방해받지 않는 통과통항권(通過通航權)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제도와는 별도로 특정한 조건을 갖춘 국제항행용 해협에 있어서는 새로운 통항제도가 설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군도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의 외단을 연결하는 군도기선을 인정하며, 이 기선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기선 내부의 수역은 내수(內水)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가지는 군도수역으로 하고 있다. 이 수역에서는 외국선박이 영해에서와 동일한 무해통항권을 가지며, 또한 수역 내의 국제교통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항로대(航路帶)에서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국제항행용 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과 동일한 군도항로대통항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4) 심해저제도에 관한 설정 : 새 협약은 대륙붕 바깥쪽의 해저에 새로운 심해저제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연안국이 자원개발에 있어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대륙붕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므로 대륙붕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안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좇아 대륙 주변부의 외단까지 연장되어 있는 해저, 또는 그 외단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200해리까지의 해저로 한다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대륙붕 바깥쪽의 해저에 적용되는 심해저제도는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자원개발을 행하고 그 개발이익을 국제사회에 형평하게 분배한다는 국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해양법에서는 일률적으로 취급되어 온 공해의 해저에 대해 먼저 영해에 인접하는 부분에 대륙붕제도를 설정하고 대륙붕 바깥쪽의 모든 해저에 심해저제도가 설정되어 상부수역과는 다른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다.⁷⁾

7) [네이버 지식백과]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一海洋法協約] (두산백과)

3. 국제해양법과 독도

1) 국제해양법상 도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상 “섬의 정의”는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제10조 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 ① “섬이란 만조 시 수면위에 있으며, 물로 둘러 싸여 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다(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 ②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위의 규정에서 볼 때, 영해를 갖는 섬이라고 해도 모두 다 EEZ나 대륙붕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동조 제 3항에서는 EEZ 등을 가질 수 있는 섬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즉 “인간의 거주”(human habitation) 요건과 “독자적 경제생활”(economic life of their own) 요건이다. 여기서는 단지 명칭이 “섬”(island)인지 “암초”(rock)인지는 실제 중요하지 않다.

2) 최근 국제판결에서의 섬(Itu Aba, 타이핑다오)에 대한 정의



가. 섬과 암초에 대한 각국의 기본 입장

타이핑다오(太平島)는⁸⁾ 남중국해 남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에서 남서쪽으로 1천600km 떨어져 있다. 타이핑다오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 잠수함 기지로 쓰다가 종전 후 1946년 국민당군이 점령해 지배하고 있다. 타이핑다오에는 현재 민간인은 거주하지 않고, 약 100여명의 순방서(해경) 대원과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 대만은 남중국해 최대 크기의 해양지형물인 타이핑다오를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자연 섬이라고 주장하며 실효지배 해왔으나 PCA가 중국의 인공섬 7개를 포함하여 남중국해내에 있는 200여개의 지형물을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상 '암초'로 판단함에 따라 이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가지게 됐다. 대만 총통부는 12일 저녁 성명을 통해 "판결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만은 이번 중재판결의 당사국이 아니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가입국도 아니다. 그동안 대만은 타이핑다오 주변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며 베트남 등 타국 어선을 쫓아냈었다.⁹⁾

한편 PCA 재판부가 또 타이핑다오 3개 우물중 2곳은 물이 말랐고 1곳은 잔물만 나오고 있다는 필리핀측 주장을 근거로 타이핑다오를 '암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만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대만 해순서측은 타이핑다오엔 해수에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층이 있어 모두 4개 우물에서 하루 1천 500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인 3t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타이핑다오가 사람이 정주 가능한 자연 섬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¹⁰⁾ 마잉주 전 총통은 또 "섬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쌀을 외부에서 제공되지만 20가지 채소와 과일이 현지에서 재배된다"며 "섬에는 또 작은 병원 하나가 설립돼 있는데 의사와 간호인원 각각 3명, 10개 병상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¹¹⁾

한편 섬나라인 일본만큼 바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도 없다.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 협약이 1994년 발효되어, 영토의 넓이가 세계 60위인 일본이 관할하는 해양의 면적은 세계 6위로 447만km²가 되었다.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과 북태평양 사이에 울타리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는 본토의 4개 섬은 남북의 길이만 2,500km에 달하지만 열을 맞춰 늘어서 있는 작은 섬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영토 길이는 3,000km에 육박한다. 일본은 2개의 작은 산호초로 이루어진 오키노토리(沖ノ島)¹²⁾를 '섬'으로 간주하고, 이곳을 기점으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육지영토 면적 38만km²보다도 더 넓은 40만km²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곳이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며 반발한다. 일본은 이 암초가 파도에 마모되어 사라질 위험에 놓이자 1987년부터 공사를 벌여 콘크리트 인공섬

8) 타이핑다오(太平島)는 독도에 속한 여러 섬(동도, 서도, 기타 부속도)의 면적을 다 더한 것의 2.5배 정도 (0.49km² vs 0.19km²) 큰 섬이다. 재판부는 남중국해 최대 규모의 지형물인 타이핑다오는 물론 남중국해 두 번째 크기의 팍아사 섬(중예다오(中業島))과 세번째 크기의 웨스트 요크 섬(시웨다오(西月島)) 등 필리핀이 점유 중인 지형물도 섬이 아닌 암초로 판단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2/0200000000AKR20160712173751089.H.TML>)

9) 연합뉴스 2016/07/13 14:18

10) 연합뉴스 2016/07/14 17:28

11) 뉴시스 2016-07-15 15:56:52

12) 도쿄에서 1,740km 떨어져 있는 태평양의 암초로, 일본보다 중국과 필리핀에 더 가깝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초이다. 크기는 가로 4.5km, 세로 1.7km 정도이며 대부분 물에 잠겨 있고 만조 때 작은 산호초 바위 2개가 수면 위로 드러날 뿐이다. 크기로 따지면 1인용 침대 넓이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는 이 암초에 방파제를 쌓고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섬으로 만들었다.

을 만들었다.¹³⁾

당초 일본은 PCA 판결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다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열도) 문제에서 호재라고 봤다. 그동안 일본은 서태평양의 환초인 오키노토리를 섬이라 우겨왔다. 오키노토리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면적이 약 3.3㎡에 불과하다. 이번 PCA 판결 결과에 의거하면 오키노토리는 한낱 아주 작은 “산호초”일 뿐이다.¹⁴⁾

나.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 요약

중국의 소위 “구단선” 등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의한 주장과 필리핀 측의 주장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한 주장은 해양법협약의 세부적 분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수역에서 자원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협약의 발효로 협약 시스템과 일치하는 범위 이내로 해당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했다.”¹⁵⁾

중재재판소는 국제해양법협약 제121조를 해석하여 “지형의 권원은 (a) 지형의 객관적 능력, (b) 자연적인 상태 및 지속성 (c) 안정적 인간 공동체 또는, (d) 외부 자원의 종속이나 자연에서 순수하게 추출하는 것이 아닌 경제활동에 의존한다고 판정했다(the entitlements of a feature depend on (a) the objective capacity of a feature, (b) in its natural condition, to sustain either (c) a stable community of people or (d) economic activity that is neither dependent on outside resources nor purely extractive in nature).

중재재판소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상당수의 지형들이 접안시설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배치한 연안국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는 이와 같은 다수 지형은 외부의 자원과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당 지형이 담수화 시설과 같은 토양 매립, 시설 설치와 같은 방식을 통해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또한 해당 지역에 파견된 정부관계자만으로는 거주 및 경제활동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은 해당 지역의 객관적 능력에 적합하다고 고려하여 자연 상태에서의 안정적 인간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하지 못한다고 판정했다.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았을 때 남사군도는 역사적으로 소수의 중국인 어부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어부들과 1920~30년대 일본 어업, 채광 기업들에 의해 이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는 이와 같은 임시적 사용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남사군도의 해수면 위로 올라온 지형들(Itu Aba, Thitu, West York Island, Spratly Island, North-East Cay, South-West Cay를 포함)은 법적으로 “바위섬”이며,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혹은 대륙붕에 대한 독자적인 권원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정했다.

13) 바다와 섬을 확보하라, 끝없이 도전하는 일본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8.29, 휴머니스트)

14) 유하영, “독도마을 조성의 국제법상 효과와 고려할 점,” 독도최초주민 생활사진 자료전 및 독도주민 학술 세미나,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2016. 10. 24, p. 86.

15) The Tribunal found that China’s claim to historic rights to resources was incompatible with the detailed allocation of rights and maritime zones in the Convention and concluded that, to the extent China had historic rights to resources in the waters of the South China Sea, such rights were extinguished by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ey were incompatible with the Convention’s system of maritime zones.

다. 중국 궈석재판에 대한 중국의 대응 현황

한국의 인하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제기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2002년에 중국이 아시안국가와 달성한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분쟁해결의 최선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유감스럽고도 취할 수 없는 사안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남중국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2006년에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해역경계획정 등 사항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재를 포함한 강제적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배제한다고 성명한 바 있다. 중국은 해양법협약 체약국으로서 분쟁해결방식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분쟁 당사국 및 국제 법원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소(PCA)는 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중국은 중재에 참여해야 할 의무도 판결 결과를 수용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¹⁶⁾

유리 타프로프스키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Peoples' Friendship University of Russia) 교수는 “아태 재균형” 전략의 내용 및 실현과정으로부터 봤을 때 미국은 중국견제전략으로 회귀한 것이라 지적했다.¹⁷⁾

안토니우스 차나코프로스 영국 옥스퍼드대학 국제법 부교수는 필리핀은 중재재판소(PCA)가 관련 중재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분적 분쟁을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 사안과 “분리”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그러나 이런 중재사항이 본질상 주권, 해양경계획정 등 사안과 내재적으로 교차되고 PCA가 관련 주권 및 해양경계획정 사안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기 행위는 고의적 색채가 짙다”고 언급했다.¹⁸⁾

3) 기본적인 법률용어

영해 :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에 복종한다.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영해의 해저 및 그 지하에 미친다(UN해양법협약 제2조 2). 단 무해통항권 *mare de libelium*, 1977년의 ‘영해법’에서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하고, 대한해협에서만은 종전과 같이 3해리

접속수역(contiguous zone, adjacent zone) :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역.

16) 新華網, 2016-07-07 09:33:53

17) 新華網, 2016-07-12 18:29:01, 남중국해 중재: 공공이를 품은 졸렬한 연기자

18) 新華網, 2016-07-12 18:29:01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상의 개념이다.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어도

조약 :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조약법 협약 제2조 제a항)





2017년도 독도 교원 집합연수

동해표기의 역사적 경과와 현황

유 의 상 (국제표기명칭대사)

동해표기의 역사적 경과와 현황

유 의 상 (국제표기명칭대사)

1. ‘동해’명칭 · 표기문제란?

‘동해’의 명칭과 표기에 관한 문제는 동해수역, 즉 한반도 동쪽에 위치하며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4개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다의 명칭과 관련하여, 한국은 ‘동해(East Sea)’, 일본은 ‘일본해(Sea of Japan)’의 사용을 주장하면서 야기된 문제이다. 한국정부가 1992년 8월 제 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SG: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에서 ‘일본해(Sea of Japan)’가 국제적으로 단독 사용(또는 표기)되고 있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해(East Sea)’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주요 현안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확한 지명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유엔이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결의를 통해 1967년 창설한 국제회의체이며, 한국은 유엔에 가입한 이듬해인 1992년부터 이 회의에 참가해 왔다.

한국정부는 1997년 4월 개최된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제 15차 총회에서는, 이 기구가 발간한(1929년 초판, 1937년 제2판, 1953년 제3판) 해도제작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S-23)』 상에 동해수역이 ‘일본해(Japan Sea)’로 단독표기 되어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판 발간 시에는 ‘동해’가 병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제수로기구’는 해양명칭표준화와 국제수로업무 협력 증진 등을 관장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1919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수로회의의 결의에 따라 1921년 설립된 ‘국제수로국’이 모태가 되어 1970년 창설되었다. 한국은 1957년 ‘국제수로기구’의 전신인 ‘국제수로국’에 가입한 이래 이 기구의 총회에 계속해서 참가해 왔다.

한국정부가 ‘유엔지명표준화회의’와 ‘국제수로기구’총회에서 각각 문제를 제기한 이래, 바다이름이 의제로 다루어지거나 회의문서에 등장하는 모든 국제회의에서 ‘일본해’명칭의 단독사용에 대한 부당성과 ‘동해’명칭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현재 이 사안은 국제사회에서 지명과 관련한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동해'명칭의 역사성

1) 한국 역사속의 '동해'

한국인들이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사이에 놓여있는 바다를 '동해'로 부르게 된 역사적 연원은 2,000여 년 이전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문헌상에 '동해'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기원전 50년 경의 역사가 기술된『삼국사기(三國史記)』제13권 「고구려본기 제1편」시조 동명성왕 고구려 개국설화'에서이다. 동명왕이 북부여국의 위치에 고구려를 건국할 예정이니 북부여는 동해변으로 옮겨가라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있다(자료 1). 그다음 414년 건립된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자료 2), 1531년 왕명에 의해 편찬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첨부된 「팔도총도(八道總圖)」(자료 3),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첩 『여지도(輿地圖)』에 포함된 「아국총도(我國總圖)」(자료 4)와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자료 5)를 비롯하여 한국의 수많은 문헌, 고지도 등에 '동해'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해'는 '일본해'명칭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의 등장보다도 800여년이나 앞서 사용된 명칭이다. 7세기 초 일본 고대국가의 주역이었던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중국에 보낸 국서에서 자신의 나라를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고 표현하였으며, 그 의미를 본 따 한자로 표기한 것이 '일본(日本)'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BC 5세기경)

〈자료 2〉 광개토왕릉비 비문(AD 4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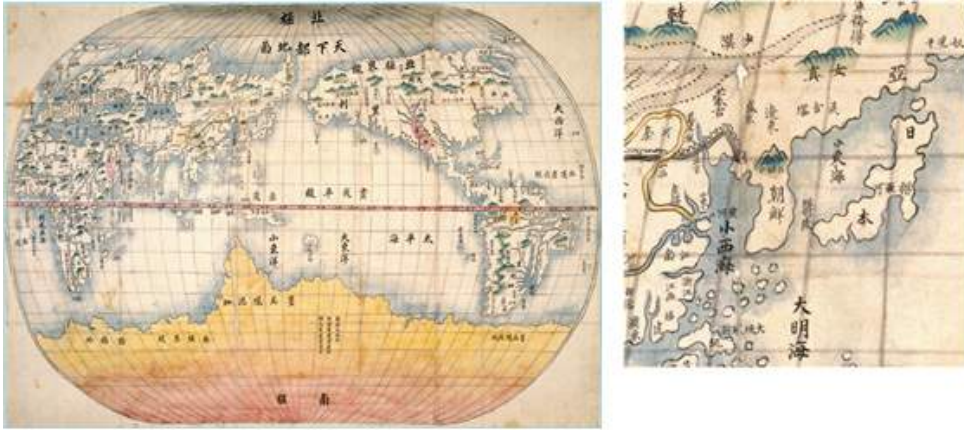
〈자료 3〉 『팔도총도』(1531년 제작자미상,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자료 4〉 『아국총도』(18세기 후반, 제작자미상, 서울대 규장각 소장)



〈자료 5〉 『천하도지도』(18세기 후반, 제작자 미상, 서울대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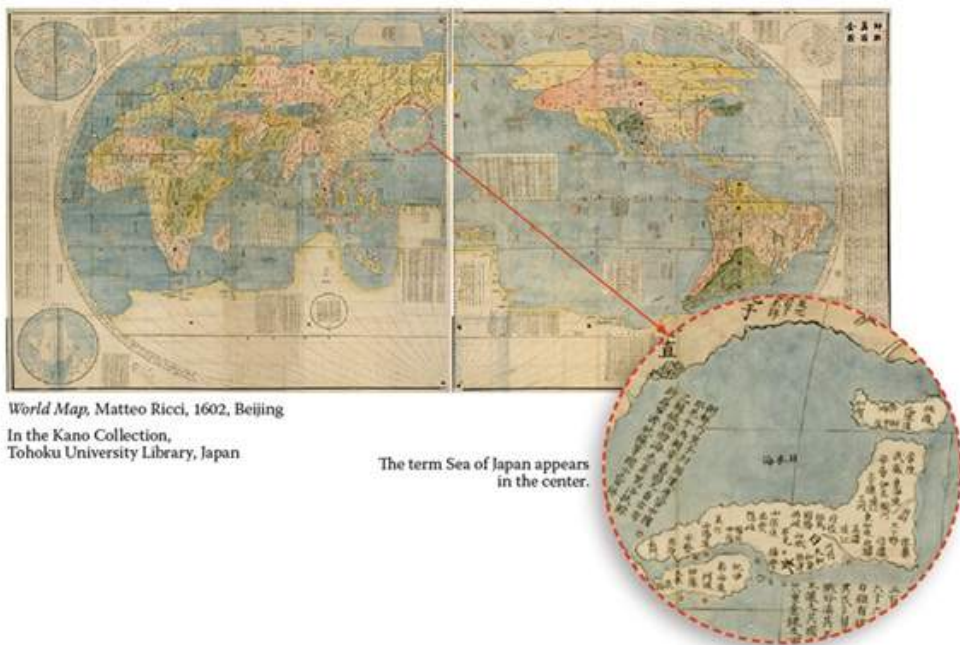


이렇듯 오랜 세월 한국인의 삶과 함께 해온 ‘동해’명칭에는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애국가의 첫 구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동해’는 한국인의 정체성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2) 서양과 일본 고지도상의 동해수역 명칭

일본은 ‘일본해’명칭의 역사적 정당성을 내세우는 근거로 1602년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베이징에서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자료 6)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동해수역이 ‘일본해(日本海)’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 지도가 동해수역의 이름을 ‘일본해’로 표기한 최초의 세계지도이며, 따라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수역의 명칭은 ‘일본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도는 조선에 도입되어 1708년 모사본이 제작되었다.

〈자료 6〉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1602년, 일본 도호쿠대학 소장)



World Map, Matteo Ricci, 1602, Beijing
In the Kano Collection,
Tohoku University Library, Japan

The term Sea of Japan appears
in the center.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 이후 유럽에서 동해수역이 표시된 세계지도가 다수 제작되는데, 이들 지도에는 동해수역의 명칭이 ‘동해(Eastern Sea)’, ‘동양해(Oriental Sea)’, ‘고려해(Sea of Corea 또는 Mer de Coree)’, ‘일본해(Sea of Japan)’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18세기에 제작된 지도에는 ‘Sea of Japan’ 보다 ‘Oriental Sea’ 또는 ‘Sea of Corea’ 등 여타 명칭이 더 자주 등장하다가, 19세기 중반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고 서구제국들과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Sea of Japan’의 표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8세기말부터 ‘일본해’가 확립된 명칭으로 통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일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721년 영국 존 세넥스
(국립베를린 도서관 소장)



1724 프랑스 기욤 드릴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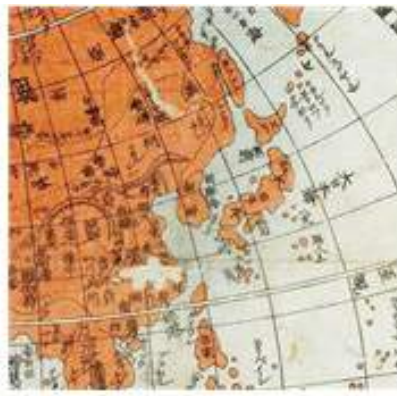


1744 독일 요한 마티아스 하스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한편, 일본에서 제작된 고지도는 19세기 중반까지 동해수역을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한 지도가 많으며, 19세기 중반이후부터는 ‘조선해’와 ‘일본해(日本海)’를 병기한 지도가 등장한다. 일본에서의 ‘일본해’ 단독 표기는 19세기 말 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910년 조선이 일제에 의해 강점된 이후 정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정만국전도」
(1810, 다카하시 가게야스)
(국토지리정보원 소장)



「동서지구만국전도」
(1846, 구리하라 노부아키)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관허대일본사신전도」
(1868, 하시모토 교쿠란사이)
(호사카 유지 소장)

19세기말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동해수역이 국제적으로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된 데에는 1929년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S-23)』 발간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수로기구는 전 세계 해양의 경계와 명칭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28년 『S-23』를 발간하였으며, 1929년 회원국들은 ‘일본해(Japan Sea)’가 단독 표기된 이 책자를 승인하였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하에 주권을 빼앗긴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 책자는 한국이 여전히 일제강점 하에 있던 1937년 제2판, 6.25전쟁 중이던 1953년 제3판을 간행하였기에 한국이 ‘Japan Sea’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3. ‘동해’명칭 · 표기 확산을 위한 노력과 결실

1) ‘동해(East Sea)’명칭 추진 배경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동해수역의 명칭 문제를 제기하고, ‘동해’가 ‘일본해’와 병기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교섭을 시작한 것은 1992년의 일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해’라는 명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의 공식문서에 ‘동해’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한국어 본에 ‘동해’로 기록),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교섭은 1991년 9월 17일 한국의 유엔 가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엔 가입 후 한국정부도 각종 유엔 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는데, 1991년 10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등이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한 문서에 동해수역이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후 수차례의 민·관 전문가 협의와 관계 부처(당시 문화부, 교육부, 공보처, 수로국 등) 회의를 거쳐 국제적으로 ‘동해’명칭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동해’의 영문 명칭은 ‘East Sea’와 함께 ‘Sea of Korea’, ‘Tong-hae’ 등이 검토되었으나, 바다이름의 역사성,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인 ‘동해’명칭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ast Sea’로 결정되었다. ‘Sea of Korea’는 한국인들이 예부터 사용하던 고유이름이 아니라 서양 항해가나 지도 제작자가 붙인 이름, 즉 외래지명(exonym)이라는 점과,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바다이름에 특정 국가의 이름을 딴 ‘Sea of Japan’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Sea of Korea’로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Tong-hae’는 바다로서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

교섭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East Sea’를 ‘Sea of Japan’과 혼용 또는 병용토록 하는 것이었으며, 장기적으로 여건이 형성되면 주변국가 간 합의를 통한 새로운 명칭 도출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Sea of Japan’을 갑자기 ‘East Sea’로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수용 가능성

이 높은 병기를 우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러한 방침이 정해진 후 정부는 1992년 8월 개최된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에서 최초로 동해수역의 ‘East Sea’표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국 정부와 주요 지도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East Sea’ 병기 추진 교섭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가 ‘동해’ 단독표기가 아닌 병기를 추진하게 된 데에는 국제지도의 제작 원칙과 관행도 일정 부분 작용하였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지도 제작의 일반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974년에 채택된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A.4.2.6는 “2개국 이상이 지형물을 공유하는 경우 단일 지명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 합의 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을 권고하고 있다. 1977년 채택된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 (1977년) 또한 “2개국 이상의 주권 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 국제사회에서의 ‘동해’병기 현황

지난 25년간 한국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역사적 근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온 결과 민간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을 비롯하여 랜드 맥널리(Rand McNally), 영국의 도링 킨더스리(Dorling Kindersley)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제작사들이 발간한 지도집(Atlas) 또는 지도에는 거의 대부분 ‘동해’, 즉 ‘East Sea’가 ‘일본해’, 즉 ‘Sea of Japan’과 병기되고 있다. 최근 대세가 되고 있는 구글맵(Google Map),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빙맵(Bing Map) 등 온라인 지도에도 ‘East Sea’가 병기되어 있다. 구글맵의 경우에는 영어판 지도를 두세 번 클릭하여 확대할 경우 ‘East Sea’가 ‘Sea of Japan’과 병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2015년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지리, 지도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한 100대 지도제작사의 지도는 50%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고 있다.

지도와 더불어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도 ‘동해’가 ‘일본해’와 병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4년 초 버지니아(Virginia)주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를 병기토록 하는 법률이 제정된 후 이 법률에 따라 최근 발간되는 모든 교과서에는 동해가 병기되고 있다. 비단 지도나 교과서뿐만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프랑스의 르몽드(Le Monde) 등 언론사들도 ‘동해’를 병기하고 있으며, CNN도 과거 ‘일본해’ 단독 사용의 입장을 바꾸어 최근에는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4. ‘동해’명칭 확산을 위한 과제

세계지도나 외국교과서상의 ‘동해’와 ‘일본해’ 병기현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명칭이 없는 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 한다는 ‘내부 관행’에 따라 여전히 동해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지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정부들도 동해수역에 대한 ‘일본해’단독 표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들이 현상변경에 소극적인 이유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정부가 ‘동해’병기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1992년부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SG)’나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총회에서도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국들은 한·일 양국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 되어야 할 ‘정치적 이슈’가 계속 회의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그간 한·일간에 동해수역 명칭의 분류로 개정판이 발간되지 못하고 있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의 개정과 관련, 2017년 4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사무국의 주도하에 이해 당사국들이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3년간 해결방안을 협의한 뒤 차기 총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모든 참가회원국들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일본이 조만간 구성될 이 비공식협의체에서 얼마나 성의를 갖고 동해수역의 명칭과 관련한 협의에 응할 것인가는 미지수이나, 그간 일본이 취해온 입장으로 미루어 그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오랜 세월 ‘일본해’명칭이 누려온 ‘지위’를 흔들며 현상을 타파하고 ‘동해’병기를 이루어 내는 일은 이렇듯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간의 교섭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벽에 부딪혀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 ‘동해’병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 첫째는, ‘동해’표기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동해수역의 명칭에 관하여 한 일 간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이루어진 미국 버지니아 주의 ‘동해’병기 입법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같은 세계적인 언론에 일본의 입법저지 로비사실 등이 보도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입법과정을 지켜봤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동해수역 명칭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수록 전 세계적으로 ‘동해’병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주 입법이 성공한 후 뉴욕 주와 뉴저지 주 의회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내 주차원에서의 입법 이외에도 ‘동해’표기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신선한 논거’를 꾸준히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25년간 반복된 한국의 ‘동해’병기 요청으로 인해 국제기구나 주요 교섭 상대국 또는 지도, 교과서 제작사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이 한국의 주장에 계속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관련 논거를 계속 강화해 나

가야 한다. 그간 학계의 노력으로 많은 연구 실적들이 축적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젊고 유망한 학자들이 참신한 시각에서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물들을 계속 생산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서 깊은 외국 지리학회 등과의 교류를 통해 실력 있고 명망 있는 외국인 학자들을 새로이 발굴하고, 이들을 한국이 개최하는 각종 학술회의에 초청함으로써 그간 한국이 구축한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에 편입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들의 도움을 통해 '동해'병기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확산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교섭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동해'표기문제가 독도사안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해'표기는 단순한 바다 명칭에 관한 문제이지만, 독도는 한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사안으로서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할 때 '동해'표기문제와 독도를 함께 다루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배경을 잘 모르는 외국학자들은 두 사안을 동일한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해/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는 지도에 '독도/타케시마'도 병기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이 한국의 동해병기 교섭 논리를 원용한 로비를 전개하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독도는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이 사용하는 '독도(Dokdo)'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도제작사들에게 보다 분명히 인식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내적으로 '동해'표기의 영문 명칭인 'East Sea'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도 기술하였지만, 정부가 1992년 동해표기의 영문 명칭을 'East Sea'로 정하기까지는 관계 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함께, 교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다. 지난 25년간의 교섭을 통해 지금은 수많은 지도상에 'East Sea'가 병기되는 등 상당한 실적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일각에서 'East Sea'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East Sea' 주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공격재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해'표기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섭의 결과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섭에 임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지켜보는 언론, 국민들 모두 인내심이 요구된다. 인내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 왜 그토록 '일본해' 단독표기에 집착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